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93-01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9.

연구수행기관	(사)한국교육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인 규 (한국교육연구소)
연 구 원	최 천 규 (한국교육연구소)
	이 종 태 (한국교육연구소)
	허 은 주 (한국교육연구소)
	최 윤 주 (한국교육연구소)
	박 미 진 (한국교육연구소)
연 구 보 조	성 낙 진 (한국교육연구소)
	이 우 창 (서울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 차

□ **요약편** ·····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추진체계 ····· 36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 37
1. 교육과 환경 ····· 37
2. 대학원생과 연구환경 ····· 39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 43
1. 인권관련 파생권리 ····· 43
2.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 4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 50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 58
1. 국내 대학원생 현황 ····· 58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 60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 62
2.2 경제적 여건 ····· 65
2.3 연구 및 학업 지원 ····· 68
2.4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0
3. 외국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 72
3.1 법제도적 여건 ····· 72
3.2 경제적 여건 ····· 76
3.3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8

제3절 대학원생 지원정책 현황 ····· 80

제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 84

제5절 해외 대학교의 권리장전 및 운영사례 ····· 86
1. 권리장전 ····· 86
2. 캐나다의 운영 사례 ····· 9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 93
1. 조사과정 ····· 93
2. 기초분석 ····· 94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5
2.2 대학원생 재학유형 ····· 97
2.3 대학원생 활동역할 ····· 100
2.4 대학원생 신분인식 ····· 103

제2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 105
1. 일반적 연구환경 ····· 106
1.1 대학원 진학의 목적 ····· 106
1.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 108
1.3 휴학 경험과 이유 ····· 109
2. 경제적 연구환경 ····· 111
2.1 등록금 수준 ····· 111
2.2 생활비(경비) 수준 ····· 112
2.3 등록금 조달 방법 ····· 114
2.4 생활비 조달 방법 ····· 115
2.5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 116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17
3.1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 117
3.2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 120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2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22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 123
4.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 유무와 변경 이유 ····· 12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4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7
4.5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0
4.6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2
4.7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5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37
5.1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 137
5.2 선후배/동료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 139

제3절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42
1. 평등권 ····· 142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2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4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5
2. 학습권의 보장 ····· 146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6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8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50
3. 복리후생권의 보장 ····· 151
4. 안전권의 보장 ····· 152
5. 연구결정권 보장 ····· 154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 155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 156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58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61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 16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64
1. 일반적 환경 ····· 16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1 재학유형 및 신분인식 ····· 164
1.2 대학원 진학목적 ····· 164
1.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 165
2. 경제적 환경 ····· 165
2.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 165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66
3.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 166
3.2 물리적 환경 ····· 167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67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67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 168
4.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 168
4.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 169
4.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 170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70
5.1 교수와의 관계 ····· 170
5.2 선후배 등과의 관계 ····· 171
6.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71
6.1 평등권 ····· 171
6.2 학습권 ····· 172
6.3 복리후생권 ····· 173
6.4 안전권 ····· 173
6.5 연구결정권 ····· 173
6.6 사생활보호권 ····· 174
6.7 연구성과 명의권 ····· 174
6.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74
6.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175
6.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17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77
1. 총론적인 정책방향 ····· 177
2. 각론적 정책방향 ····· 178

제2절 핵심정책 제언 ····· 182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182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 183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183
4. 정기적인 실태조사 ····· 184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 185

□ 부록편
1.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 189
2. 주요 통계분석표 ····· 205
3. 세미나/표적집단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 227
4. 유학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결과 ····· 248
5. 자유 응답분석 결과 ····· 24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목차

<표 1.1> 연구의 필요성 요약 ····· 23
<표 1.2> 조사방법별 사용목적 및 적용사례 ····· 29
<표 1.3>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참여자 특성 ····· 30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 ····· 31
<표 1.5> 대학원생 연구환경 5개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 ····· 41
<표 1.6> 헌법의 일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파생권리 ····· 43
<표 1.7>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 46
<표 2.1>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수 변화 추이 ····· 59
<표 2.2>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수 변화추이 ····· 60
<표 2.3>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등록금 현황 ····· 77
<표 2.4>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대학의 운영 현황 ····· 85
<표 2.5>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요약 ····· 86
<표 2.6>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학생권리책임 성명 전문 ····· 87
<표 3.1>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별 응답자 분포 ····· 94
<표 3.2>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 96
<표 3.3> 대학원 유형 및 계열에 따른 대학원 재학 유형 ····· 99
<표 3.4> 설립성격별, 유형별, 계열별 활동역할 분포 ····· 101
<표 3.5> 활동역할에 따른 자기자신에 대한 신분인식 ····· 105
<표 3.6> 대학원 과정에 따른 진학목적 ····· 107
<표 3.7>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 분포 ····· 112
<표 3.8> 대학원 과정별 한 학기 소요되는 평균 생활비 수준 ····· 114
<표 3.9>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실태 평가 ····· 117
<표 3.10>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 119
<표 3.11>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 121
<표 3.12> 학습 및 학위과정 수업환경에 대한 평가 ····· 123
<표 3.13>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 12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3.14>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기준) ····· 127
<표 3.15> 학위과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 128
<표 3.16>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 129
<표 3.17> 전공계열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 130
<표 3.18> 교수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 131
<표 3.19> 학위과정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 133
<표 3.20>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선후배 등과 공동연구 수행경험 ····· 134
<표 3.21> 전공계열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 135
<표 3.22>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 136
<표 3.23>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 138
<표 3.24> 선후배/동료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 139
<표 3.25> 설립성격에 따른 평등권 보장 수준 ····· 143
<표 3.26>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 144
<표 3.27>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 145
<표 3.28>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 146
<표 3.29>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 149
<표 3.30>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 150
<표 3.31> 복리후생권에 대한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 152
<표 3.32> 안전권 보장에 대한 평가 ····· 153
<표 3.33>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평가 ····· 154
<표 3.34>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비교 ····· 155
<표 3.34> 사생활보호권 보장에 대한 평가 ····· 156
<표 3.35>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수준 평가 ····· 157
<표 3.36>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평가 ····· 158
<표 3.37> FGI에서 제시된 주요 인격권 침해 사례 ····· 160
<표 3.38>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수준 평가 ····· 161
<표 3.39>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평가 ····· 16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목차

<그림 1.1> 연도별 대학원 수 변화 ····· 20
<그림 1.2> 연도별 대학원생 수 변화 추이 ····· 20
<그림 1.3> 연도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추이 ····· 21
<그림 1.4> 연구의 목적 ····· 26
<그림 1.5> 연구의 방법 ····· 28
<그림 1.6> 연구의 추진체계 ····· 37
<그림 1.7> 교육 조건 및 3요소와 연구환경간 영향 관계 ····· 38
<그림 1.8>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 ····· 40
<그림 1.9> 대학원생 연구환경요소별 영향관계 ····· 42
<그림 2.1>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 인권 및 인권보장 정도 인식도 ····· 71
<그림 3.1> 연구환경 실태조사 과정 ····· 93
<그림 3.2>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 97
<그림 3.3> 설립성격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 98
<그림 3.4> 대학원생들의 대학 내 활동역할 분포 ····· 100
<그림 3.5> 대학원생들의 자기신분에 대한 인식 ····· 104
<그림 3.6> 대학원 진학목적 ····· 106
<그림 3.7>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중복응답 기준) ····· 109
<그림 3.8> 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유무 ····· 110
<그림 3.9> 대학원 휴학 경험자의 휴학 이유(중복응답 기준) ····· 111
<그림 3.10> 대학원생의 한 학기 평균 생활비 수준 ····· 113
<그림 3.11>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조달 방법(중복응답 기준) ····· 115
<그림 3.12>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중복응답 기준) ····· 116
<그림 3.1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여부 ····· 126
<그림 3.14>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자의 변경희망 이유 ····· 126
<그림 3.15>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인식 ····· 143
<그림 3.16>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학습권 보장 수준 ····· 147
<그림 3.17>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안전권 보장 수준 비교 ····· 15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구결과의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대학원생은 2014년 현재 33만872명으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9만5천7백36명임.

❍ 대학원생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을 둘러싼 열악한 연구환경이나 교수에 의한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침해상황이나 포괄적인 연구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대학원생 권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첫째, 2015년 현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 둘째,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 선행연구, 사례연구 등을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을 분류 및 구조화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셋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대학원생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국내외 선행연구(문헌조사)와 사례,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 대학원생을 둘러싼 포괄적 연구환경

❍ 지리적 범위: 전국

❍ 시간적 범위: 조사일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여 과거 5년까지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심층인터뷰, 전문가조사 및 자문 등을 활용하였음.

3. 연구의 내용

❍ 조사방법별로 연구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헌조사(2차 자료조사)와 정성조사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인권위 권고 사항 등 분석,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의 사례 분석, 표적집단심층면접법(FGI), 심층인터뷰을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청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5개 영역으로 정의, 세부문항을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대학원생 연구환경 5개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

측정 영역	측정개념에 대한 정의
1. 일반적 환경	일반적인 환경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의 진학목적 등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학습과정이나 기타 준거집단에서의 행동이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 환경으로 정의함.
2.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대학원에서의 지속적인 학업권을 보장하고 대학원내에서 대인관계, 학문에 대한 몰입도, 연구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록금 및 생활비 조달방식, 조교 및 연구자로서 받는 급여수준, 기초생활 수준들을 포함함.
3.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의 각종 정책이나 지원제도 등으로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의 속성들을 측정
4.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	실질적인 학문지도와 논문지도 등 학습과 관련된 직접적인 환경과 공동연구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식의 전수과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교수와 대학원생, 선후배와 동료 등 대학원내 준거집단에서의 개인적 존중감과 저작권, 성(性)적으로 비하되거나 차별 받지 않은 권리 등의 개념으로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10가지를 정의하였음.

<적용된 헌법규정과 파생된 인권관련 권리>

적용된 헌법 조항	인권관련 파생권리
① 헌법 제10조 ② 헌법 제11조 ③ 헌법 제12조 제1항 ④ 헌법 제17조 ⑤ 헌법 제19조 ⑥ 헌법 제22조 ⑦ 헌법 제34조 제1항, 2항 ⑧ 헌법 제35조 제1항	① 평등권(차별받지 않은 권리) ② 학습권 ③ 복리후생권 ④ 안전권 ⑤ 연구결정권 ⑥ 사생활보호권 ⑦ 연구성과 명의권 ⑧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⑩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나 국내의 학술적 논의는 매우 드문 편이며,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 혹은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 각종 학위비리, 그리고 2010년 이후 발생한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5년 7월에 발생한 '인분교수 사태'는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계기로 국내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1.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 국내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외국의 유명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연구 설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이 말은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 역시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정책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2. 외국 대학원생 연구환경

❍ 수많은 외국의 대학원 제도나 대학원생 연구환경은 나라마다 또는 대학마다 교육제도는 물론 대학원의 형태나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함.

❍ 미국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학 운영을 위한 다양한 내규와 함께 학생들의 권리를 규정한 권리장전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과정

❍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됨.

❍ 실태조사 설문설계를 위한 사전검토 및 정량조사(설문조사)설계, 심층인터뷰와 세미나 등 정성조사, 인권위원회의 협조과정, 자문 및 분석과정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기초 및 일반적 환경

2.1 대학원 재학유형 및 신분

❍ 대학원 재학 유형을 보면 전체 응답자 둥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이 87.1%, 파트타임(비전업제) 대학원생이 12.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공립대학 대학원생들의 풀타임제 비율이 사립대학 대학원생들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음.

❍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신분을 학생근로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원생의 근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2.2 대학원 진학목적

❍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진학목적을 크게 3가지로 인식하고 있었음. 즉, ① 전문직 취업 ②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 ③ 대학사회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입직하는 것을 진학목적으로 삼고 있었음.

2.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제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경제적 환경

3.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 ❍ 대학원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은 석사과정은 200-300만원 미만, 박사과정은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 학기에 필요한 생활비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음.
- ❍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을 조달방법은 ① 장학금 ② 조교(TA, RA 또는 행정조교) 수입 ③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④ 프로젝트 참여 ⑤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 생활비 조달방법을 보면 ① 가족, 지인의 지원 ② 프로젝트 참여 ③ 조교로서의 수입 ④ 장학금 ⑤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4.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4.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 ❍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연구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의 공평한 운영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3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 FGI 조사결과에서는 대학원 생활을 '노예 같은 생활'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 운영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전반적으로 대학원의 장학금 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4.2 물리적 환경

❍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 대학원생 맘(mom)을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 등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환경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FGI 조사결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생리중이거나 임신, 출산을 학생들이 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5.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5.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학습 및 코스워크 학습환경에서는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와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하는 학습권 침해사례가 많았음.

❍ 또한 논문 작성이나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하고 명의를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수로부터 부당한 지시(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 학점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은 경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 교수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5.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 ❍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그러나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한 경우나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든 경우 등 공정한 논문지도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음.

5.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 ❍ 대학원생 중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경우가 340명(17.8%) 정도로 나타났음.
- ❍ 변경희망 이유는 지도교수와의 성격 차이, 적절한 논문지도가 되지 않아서, 논문주제와 지도교수 전공의 불일치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 그러나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 향후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봐 등으로 나타났음.

5.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 ❍ 대학원생 중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와 프로젝트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아울러 연구비 도용을 지시하거나 학술논문에 교수 이름 게재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혁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학위과정별로는 박사과정이 석사과정보다 2배나 많은 수행경험을 나타내고 있었음.

❍ 선후배나 동료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시 문제가 되는 것들로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도 저자로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음.

6.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6.1 교수와의 관계

❍ 교수와의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적(性的)인 차별,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었음.

❍ 이러한 것들은 비율은 낮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6.2 선후배 등과의 관계

❍ 선후배 등과의 관계에서도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7.1 평등권

❍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하는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이 요구됨.

❍ 선후배나 동료들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평등권이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미한 정도로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7.2 학습권

❍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통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수에 의해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조교 등으로 근무 시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 받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음.

❍ 선후배 등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3 복리후생권

❍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권은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7.4 안전권

❍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5 연구결정권

❍ 연구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교수들에 의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7.6 사생활보호권

❍ 대학원생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는 교수나 선후배 모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인드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특히 교수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이 더더욱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7 연구성과 명의권

- ❍ 대학원생들이 단독 혹은 연구논문이나 성과를 냈을 때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名義權)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음.
- ❍ FGI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의 도용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7.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 대학원생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대학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상이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7.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그러나 교수 개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심사를 못 받거나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교수나 선후배에 의해 부당한 일을 지시 받은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수에 의한 부당지시가 선후배나 동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 총론적인 정책방향

❍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총론적 수준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둘째, 고등교육 정책에서 대학원 교육에 관한 별도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학부 수준의 교육과 분리하여 마련되어야 함.

셋째, 정부 정책 차원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 및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轉機)가 마련되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각론적 정책방향

❍ 대학원생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다보니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대학원생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둘째,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셋째, 대학원생들이 학업이나 개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학이 연구 및 복지 시설을 확대해야 함.
넷째, 대학 안에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고 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대학원생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기회 제공이 지역간 공사립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핵심정책 제언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현재 대학원의 지위는 독립적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대학의 한 부속기관임.

❍ 종합대학이라는 체제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학원의 행정 기능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대학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대학은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대학원이 독립적인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를 제2절에서 빼내어 별도의 ‘대학원’이라는 절로 독립시킬 것을 제안함.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 현재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학사 운영이나 대학원생 복지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없거나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이것은 연구공간의 미비와 함께 대학원생들이 학교로부터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 점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전담 행정지원 기구의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한 실정임.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 의무화

❍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도제식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많은 교수들은 아직도 학생을 대등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어떤 의례적 절차와 의무가 준 강제적 형태로 부과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따라서 모든 대학(원)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쌍무적 협약식을 거행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감시기구의 운용을 제안함.

4. 정기적인 실태조사

❍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2011년 카이스트 대학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이후 대중적 주목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음.

❍ 이러한 사실은 반복된 실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구진은 이러한 효과를 영속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정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대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음.

❍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학 내 정책에서 학생 권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평가가 나름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초 및 응용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석·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고도의 학술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총 1,209개 대학원에 총 33만872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하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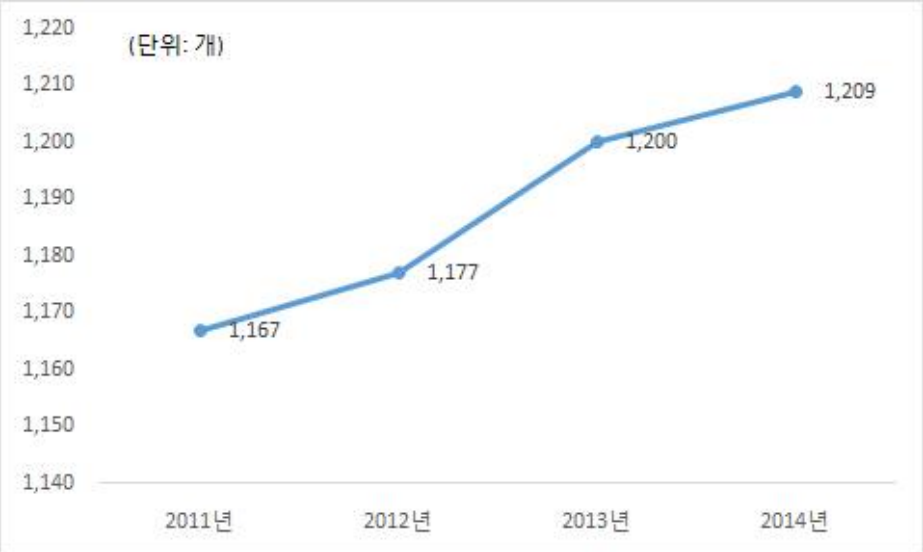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자신의 학문적 열정이나 목표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투자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학원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즉,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미래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길러내는 대학원의 국가적·사회적 특성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대학원교육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원은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만 설치 가능하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에 직업인이나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대학원이 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 설치할 수 있다.[2)]

---

1)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1] 연도별 대학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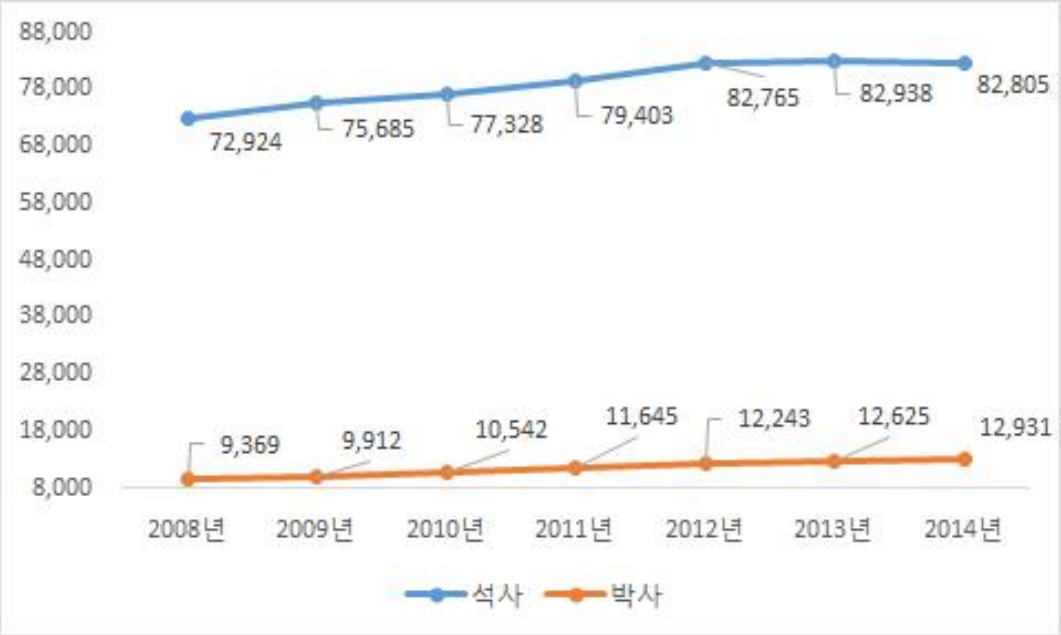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대학원생 수 변화 추이

2) 다음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99)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재편집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과정을 통해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은 2014년 현재 총 9만5천7백36명으로 이중 석사학위 취득자가 전체의 86.49%(82,80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13.51%(12,931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3] 그러나 고도의 전문화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생들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원생을 둘러싼 열악한 연구환경 및 지원, 인권문제 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문연구의 최고봉에 있는 지도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갑을관계(甲乙關係)라는 학문적 종속관계가 암묵적으로 관행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연도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추이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시스템은 1995년 전체 고등교육인구(1,518,832명)의 5.7%(86,911명)에 불과했으나 20여년이 흐른 2014년도에는 전체 고등교

3) 교육부 교육통계(http://www.moe.go.kr)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육인구(3,278,367명)의 10.1%에 달하는 33만 여명으로 4배 가까운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학원의 수와 대학원생 수 등 대학원의 양적 성장은 그에 수반되는 질적 성장, 즉 학문적 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학습권, 평등권 등 인권관련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대학원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교수 및 관련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과 사건·사고들은 고도의 학술을 연마하고 미래의 지도자적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4]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인분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5]

대학원의 지도교수나 학과교수들에 의한 대학원생에 대한 권리의 침해 -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권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연구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보호권리(헌법 제17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개인의 존엄권(헌법 제11조)」 등 - 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부당처우를 받은 경험이 40~53%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

---

4)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1,488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2012년에 1,380명에 대한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한 「2014년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수나 동료간의 관계에서 논문저작권 문제, 성희롱/성추행, 넓은 의미의 폭력, 넓은 의미의 차별, 교수개인업무 수행, 개인적 접대나 선물 부담, 연구비 유용 문제, 비자율적 노동의 지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5) 2015년 7월에 밝혀진 사건으로 경기도의 K대 J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각종 폭행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인권침해 사건.

6) 2014년 10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원생 2,354명 중 45.5%, 2014년 경희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조사·발표한 자료에서는 응답자 259명 중 43.2%, 2015년 7월에 발표된 서울대 인권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112명 중 40.7%, 2015년 9월 국회 교육문화채육관광위원회의 이상일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응답자(115명)의 52.9%가 부당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재양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학원생들에대한 인권침해 및 연구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교수나 학과교수들이 대학원생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적 노동이나 공저자 강요 등 저작권 침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대학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사례와 연구환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대학원생 권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1.1> 연구의 필요성 요약

○ 2014년 현재 33만 여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 중 일부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들의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한 학습권 침해, 사적 노동이나 공저자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해결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원생들이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대학원생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1946년에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1952년에 발효된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위종류, 수학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발전해 왔다. 33만여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원 제도는 양적(量的), 질적(質的)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원의 이러한 성장동인(成長動因)을 혹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제관계(師弟關係)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즉, 역량 있는 교수의 결단과 지도능력, 그리고 절차탁마(切磋琢磨) 하듯 학문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을 그 동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7)]

그러나 전통적 사제관계가 대학원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최근 불거진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은 오히려 대학원의 발전이나 학문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권측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8)]

대학원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성희롱·성추행, 언어적·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2014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조사결과, 같은 해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결과, 2012

---

7) 다음백과사전 '대학원'(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99))용어설명을 필자가 일부 수정·편집함.

8) 열악한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등 가혹행위, 스토킹 등 대학원 내에서 우월적 지위가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2014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조사결과, 2014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조사결과, 2015년 서울대학교인권센터 조사결과,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이상일의원 보고서 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의 40~5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학원내에서의 부당한 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년과 2014년 조사·발표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보고서, 2015년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일의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부당처우를 경험한 대학원생들의 91.6%가 부당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처우가 쉽게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9)]

대학원생이 33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나 각 대학교대학원의 총학생회, 서울대학교인권센터,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 및 인권실태에 대하여 조사·발표한 것은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이나 연구환경에 대하여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연구환경 및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대학원생 관련문제를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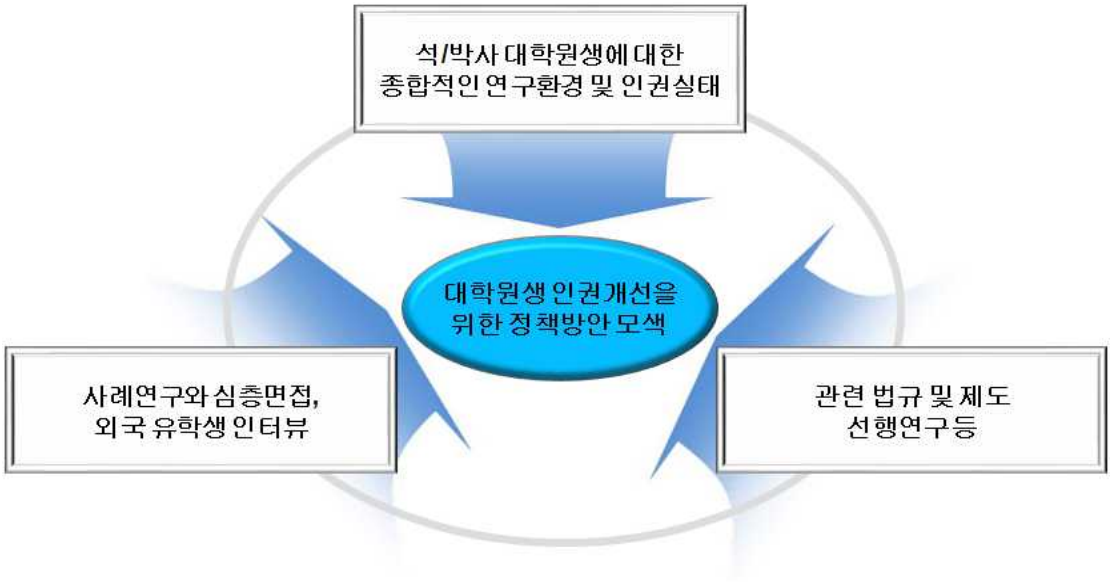
첫째, 2015년 현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 선행연구, 사례연구 등을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을 분류 및 구조화 하여

9) 보고서에 의하면 부당처우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졸업 때 지장을 받을까봐 36.6%,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31.7%, 학계에 알려져 관련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을까봐서 23.3% 등으로 나타나 대학원 내에서의 부당처우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셋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대학원생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림 1.4]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구범위는 크게 공간적 연구범위와 지리적 범위, 시간적 범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범위

공간적 연구범위로는 대학원생을 둘러싼 제반 연구환경과 인권상황, 관련 법규 및 제도,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지리적 범위

정량적 조사(quantitative research, 定量的 調査)기법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는 국내에 소재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리적 연구범위는 전국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는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현재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설문 및 자료조사기간은 2015년 3월 24일 ~ 9월 23일까지로 약 6개월간 진행하였다.

□ 설문조사의 표본의 크기와 표본오차

정량적 조사방법인 설문조사는 모집단 전체의 크기가 330,872명으로 이 중 표본으로 1,906명을 조사하였다. 이들 표본이 갖는 표본의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의 표본오차(S.E)를 가지고 있으며, 표본오차 산출공식은 유한모집단의 표본오차 산출공식을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문헌조사, 설문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과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 법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영역과 문항들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을 구조화 하였으며, 이를 활용할 설문조사방법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그리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량적 설문조사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리더를 활용하는 전문가조사와 자문, 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1.5] 연구의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본 조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별로 사용목적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조사방법별 사용목적 및 적용사례

연구방법	사용 목적	적용 사례
문헌조사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 법규검토, 사례연구 등을 통해 관련개념의 정립 및 연구체계에 대한 통찰력을 모색	- 관련 법규 검토 - 관련 논문 탐색 - 관련 사례 연구
설문조사	조사내용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일반화를 위한 목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정량조사	-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침해사례 등은 그 자체로서 민감한 사안이고 또한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 설문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FGI 통해 관련 대학원생들간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진행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시켜 심리적 저변에 있는 침해사례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실시	총 11명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
유학생 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실제 해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관련문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전문가조사 /자문	측정개념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협의회의 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 전문가협의회 구성 - 외부 인권관련전문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적집단 심층면접법(FGI)

본 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정량적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응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성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 定性的 調査)인 표적집단 심층면접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표적집단 심층면접법은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참여자 특성

구 분		1차 조사	2015. 06. 27. 13:00 ~ 15:30	2차 조사	2015. 07. 24. 9:30 ~ 12:00
		빈도(명)		빈도(명)	
성별	남	6		1	
	여	1		3	
학위	석사과정	6		1	
	석사수료			1	
	석사졸업			1	
	박사과정			1	
	박사수료	1			
전공	자연과학계열	2			
	사회과학계열	3		2	
	경상계열	1			
	공학계열	1			
	사범계열			1	
	예체능계열			1	
합계		7명		4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문헌조사, 정성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에 따라 다양안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4>에 나타나 있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크게 ① 분류정보(인구통계적 속성) ② 일반적인 환경 및 경제적 환경 ③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 환경 ④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 ⑤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의 총 5개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

1. 문헌조사(2차 자료조사)와 정성조사

구분	세부 내용
문헌조사	-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인권위 권고 사항 등 분석 -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의 사례 분석
정성조사	- 표적집단심층면접법(FGI)을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청취 - 대학원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각종 인권 침해 사례 수집 -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외국의 사례 청취 - 국제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	- 인권관련 전문가 자문 청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설문조사

구분	세부 내용
분류정보	- 성별 - 연령 - 과정 유형 및 재학 중 학기 - 대학원의 설립 유형(국/공립, 사립 여부) -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일반, 특수, 전문, 기타) - 전공계열 - 학업시간에 따른 신분(풀타임, 파트타임) - 대학원생 외 역할신분(행정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 등) - 대학원생으로서의 자기 역할 인식 - 대학원의 행정구역(위치)
일반적인 환경 및 경제적 환경	- 대학원 진학 목적 - 재학 중 겪게 되는 문제의 유형 - 휴학 경험 여부와 휴학 이유 - 휴학한 경우 휴학한 총 학기 수 - 한 학기 등록금 - 한 학기 동안의 생활비와 경비 - 등록금 조달 방법 - 생활비 조달 방법 - 조교 혹은 연구 참여자로서 받는 급여 수준(등록금 대비) - 조교 혹은 연구 참여자로서 받는 급여 수준(생활비 대비) -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5점 척도, 5개 문항) ◦등록금 마련으로 인한 기초생활의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 비용의 조달에 어려운 정도 ◦장학금, 연구비 없을 경우 학업계속 여부 정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력의 정도 ◦학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한 정도 - 기타 자유 기술문항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	- 장학 및 연구비원 제도 ◦등록금이나 수행 연구비의 적절성 정도 ◦장학금, 학비지원제도의 공평한 운영 정도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의 적절성 ◦조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수행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세부 내용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정도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 정도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정도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 필요성 정도 - 물리적 지원환경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의 충분성 정도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 유아휴게공간 등 설치 정도 ◦도서관의 학술정보, 시설 등의 충분성 정도 ◦개인 및 공동연구공간의 제공 정도 ◦강의실, 연구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의 구비 정도 ◦연구실, 실험실 등의 안전성 정도 - 기타 자유 기술문항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	-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만족하는 수준 ◦교수의 해당분야 전문성 보유 정도 ◦교수의 개인사정에 의한 수업 불성실 정도 ◦특정 수업에 대한 수강제한 등 불이익 정도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혹은 일부 수행 경험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지시를 받은 정도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제공 등을 강요 받은 정도 - 논문 지도교수 선정 여부 -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 받는 정도 ◦논문주제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선택 강요 정도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 받은 정도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 받은 정도 ◦지도교수의 바쁜 일정으로 제대로 된 논문지도 받지 못한 정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는지의 여부 - 논문 지도교수 변경 의도 여부 - 논문 지도교수 변경 의도자의 이유 - 실제로 지도교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지도교수 변경의 용이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세부 내용
	- 지도교수 변경을 못했을 경우 이유 - 공동연구수행 환경 < 1.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 ◦지도교수 혹은 전공교수와 프로젝트 공동수행 경험 여부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 받은 정도 ◦원하는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정도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은 정도 ◦연구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정도 ◦연구프로젝트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은 경우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도용을 지시 받은 정도 ◦아이디어나 논문내용을 도용 당한 경우 여부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이름 등재 강요 받은 경우 ◦원치 않는 프로젝트로 인해 본인 연구를 못한 경우 < 2.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 ◦논문이나 연구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동저자나 제1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 ◦논문이나 연구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선후배, 동료들의 따돌림에 의해 원하던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한 경우 ◦선후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도용을 지시 받은 정도 ◦아이디어나 논문내용을 도용 당한 경우 여부 ◦학술지 게재논문에 미참여 연구자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강요 받은 경우 ◦원치 않는 프로젝트로 인해 본인 연구를 못한 경우 - 기타 자유기술 문항
개인적인 존중감 등 인격권	- 교수와의 인적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교수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적으로 차별하는 언사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음담패설 사용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접대, 여행 등 동행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구분	세부 내용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 주는 행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음주 강요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비하 - 기타 자유기술 문항 - 선후배 및 동료간 인적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환경 ◦선후배,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감 ◦압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한 경우 ◦선후배, 동료들간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요청받은 일을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선후배, 동료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 ◦성적으로 차별, 희롱하거나 음담패설 사용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접대, 여행 등 동행 요구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 주는 행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음주 강요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비하 - 기타 자유기술 문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절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대학원생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환경과 인권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정량조사를 실시할 설문문항 설계 및 표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설계와 표본설계 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및 표본설계를 진행하였다.

설문설계 후에는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의 내용, 어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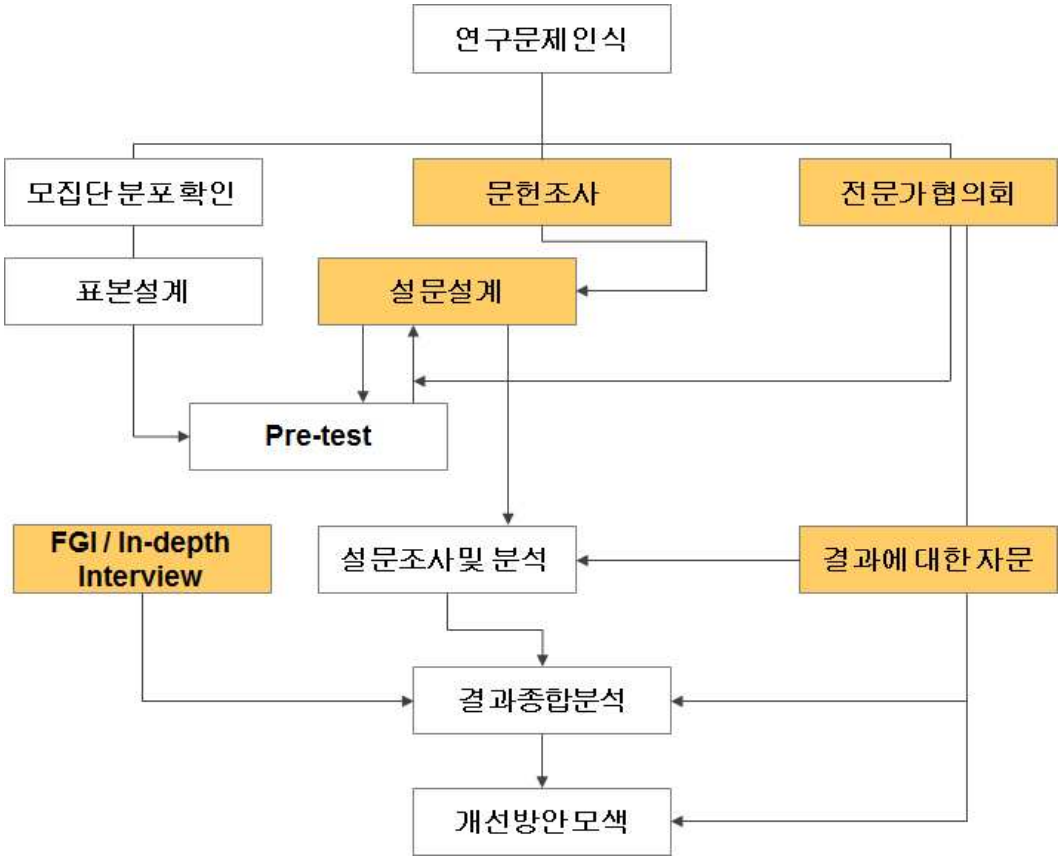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인 전국의 대학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후 각 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실시 공지를 한 후 인터넷에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코딩과 에디팅 과정을 통해 비논리적 응답이나 일편향성 응답설문을 제외하고 총 1,906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간보고를 통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의 방향을 보다 심도 있게 수정하였다.

또한 정량적(quantitative)인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성적(qualitative) 측면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6] 연구의 추진체계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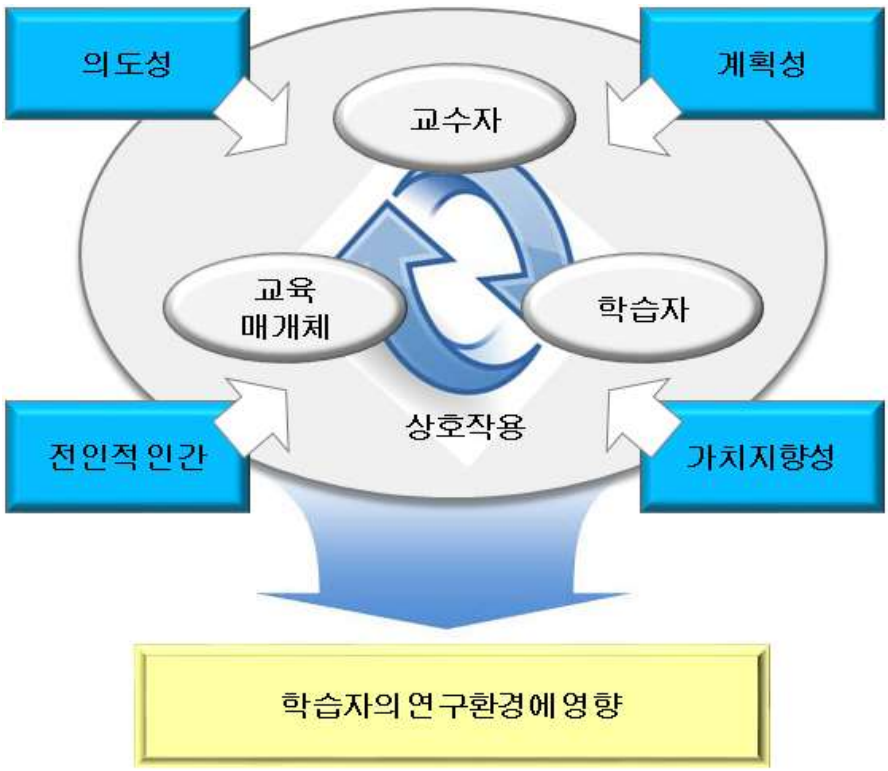
1. 교육과 환경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의도성과 계획성, 가치지향성, 전인적 인간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일정한 의도에 따라 행하는 전달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수자와 교육의 객체인 피교육자(학습자), 그리고 교육의 주체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객체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의 매개체(교육내용)가 필요하다(임창재, 2013). 이들 3개 요소는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3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교육의 장(場), 즉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장은 건물이나 강의실, 연구실 등의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의 현상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내용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집단적 현상 모두를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활용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교육의 장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학습자의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교육 조건 및 3요소와 연구환경간 영향 관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대학원생과 연구환경

환경이란 개체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적 조건과 요인의 총체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귀섭, 1993). 물리적 환경이란 유형적 환경으로 주로 지리적인 환경이나 생태학적 환경을 뜻한다. 반면에 사회적 환경이란 해당 학습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란 학습자에게 긍정적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된 외적인 조건과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식, 1984). 학습자의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연구실 환경, 준거집단의 환경 및 사회환경 등 모두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학교환경이나 연구실 환경, 준거집단의 환경 및 사회환경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있어서 연구환경에 대한 논의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학습자의 성장 및 발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왔다(김용주, 1989).

심귀섭(1993)의 논문에 의하면 C. R. Pace(1969)는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구성원, 전통, 정책,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구성원의 태도·가치·지각 및 참여와 논쟁점, 그리고 이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L. L. Baird(1980)는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구성원, 절차, 그리고 물리적 조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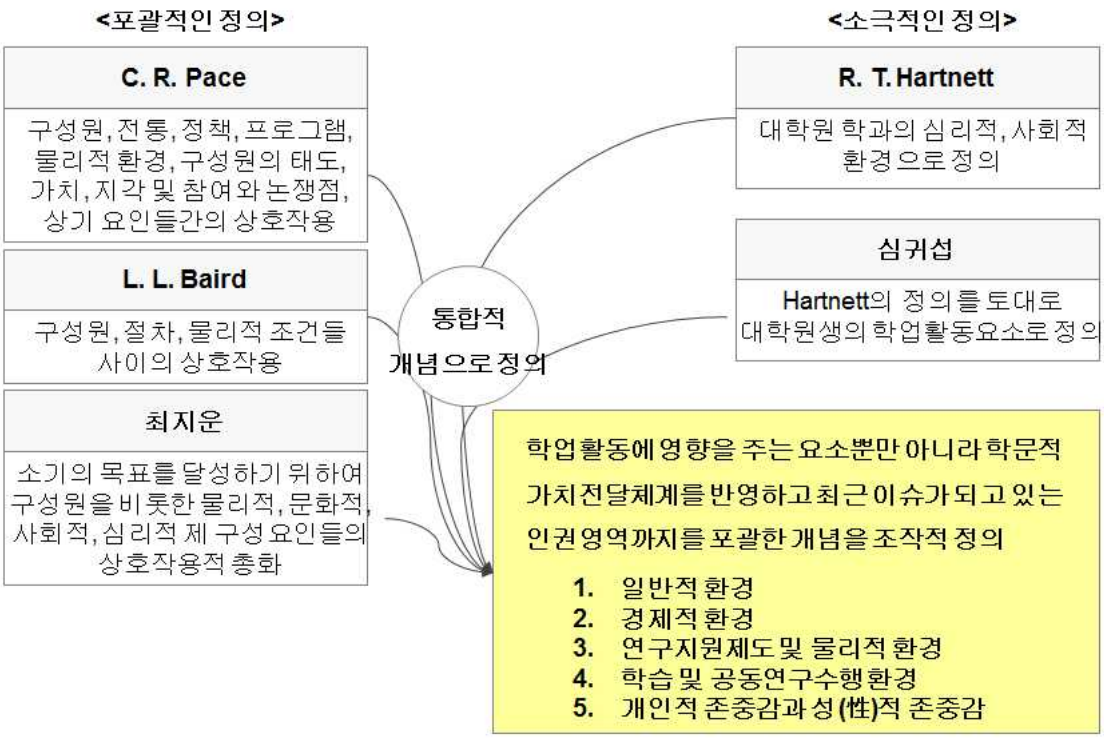
한편 최지운(1984)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대학원)의 환경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비롯한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재 구성요인들의 상호작용적 영향의 총화라고 정의해 보다 포괄적이며, 광의의 연구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R. T. Hartnett(1976)는 대학원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학원 학과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보다 소극적이면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원의 연구환경에 대한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원의 연구환경은 대학원의 구성원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적·사회적·물리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에 반영하였다.



[그림 1.8]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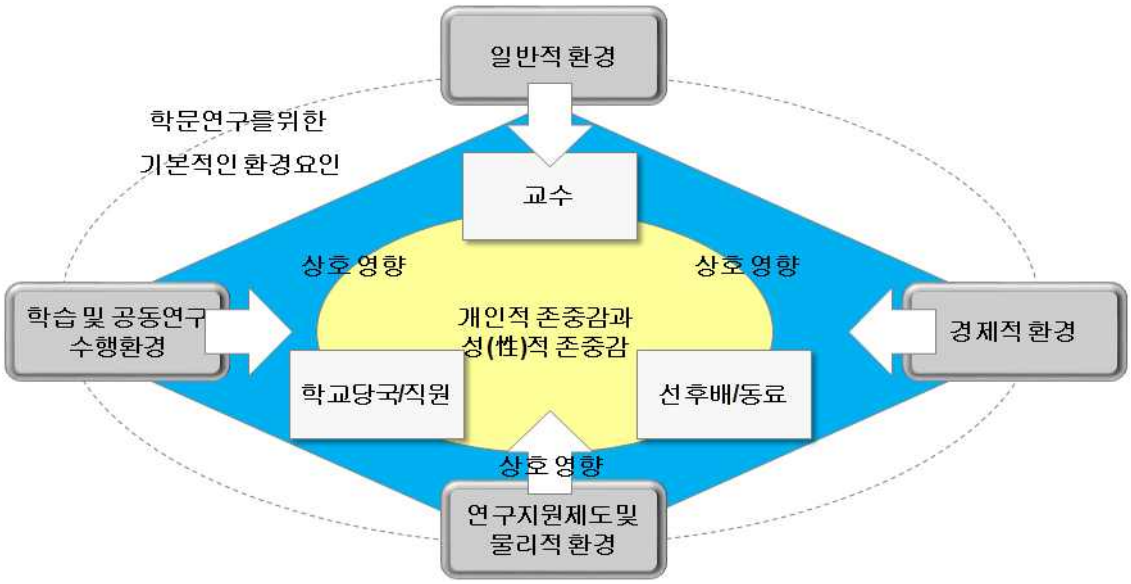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한 5개 영역의 개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 대학원생 연구환경 5개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

측정 영역	측정개념에 대한 정의
1. 일반적 환경	일반적인 환경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의 진학목적 등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학습과정이나 기타 준거집단에서의 행동이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 환경으로 정의함.
2.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대학원에서의 지속적인 학업권을 보장하고 대학원내에서 대인관계, 학문에 대한 몰입도, 연구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록금 및 생활비 조달방식, 조교 및 연구자로서 받는 급여수준, 기초생활 수준들을 포함함.
3.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의 각종 정책이나 지원제도 등으로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의 속성들을 측정
4.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	실질적인 학문지도와 논문지도 등 학습과 관련된 직접적인 환경과 공동연구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식의 전수과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교수와 대학원생, 선후배와 동료 등 대학원내 준거집단에서의 개인적 존중감과 저작권, 성(性)적으로 비하되거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의 개념으로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요인과 교육의 주체와 객체, 준거집단 등의 환경요인이 대학원생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대학원생을 둘러싼 환경인 일반적인 환경과 경제적 환경, 연구지원 제도 및 물리적 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환경 등은 기본적인 환경으로 대학원 연구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은 대학원 연구환경 내 주체들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연구성과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대학원생 연구환경요소별 영향관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1. 인권관련 파생권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설계한 측정문항 중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분석하여 인권관련 파생권리를 규정하였다. 인권관련 파생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권리(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연구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보호권리(헌법 제17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개인의 존엄권(헌법 제11조)」 등을 통하여 파생권리를 규정하였다. 즉,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적인 권리를 활용하여 이를 대학원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대학원생들의 파생권리로 분류한 결과, 총 11개의 권리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법률조항과 관련된 기본권리,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파생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헌법의 일반적인 권리와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파생권리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파생권리
기본적인 권리	기본 권리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을 추구할 가치 - 인격권 -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 인격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파생권리
기본적인 권리	기본 권리	
❍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평등권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남녀고용평등권	- 평등권 -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신체의 자유 - 인격권	- 신체의 자유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권리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파생권리
기본적인 권리	기본 권리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양심에 관한 권리	-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권리	- 연구결정권 - 연구성과 명의권
❍ 헌법 제3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교육(학습) 받을 권리	- 학습권
❍ 헌법 제34조 1항, 2항, 6항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1항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인간존엄에 관한 권리 - 복리후생에 관한 권리 - 안전에 관한 권리	- 복리후생권 - 안전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권리로 재구성한 10가지의 파생권리를 중심으로 본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문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류결과는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7>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구분	세부 질문문항
1.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제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교수로부터 -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 선후배, 동료로부터 -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2. 학습권	- 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렵다. -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다. - 논문의 연구주제 선정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 받았다. -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 (교수의 강요로)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선후배,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에 의해 꼭 필요하거나 원했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 (선후배 강요로)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해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 선후배, 동료들의 압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였다. - 선후배, 동료들이 지시한 업무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
	❍ 자문위원의 자문결과, 아래 사항들은 노동권으로 인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가 놓여 있어 현재로서는 노동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름.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학습권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다. - 연구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 -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은 적이 있다. - 선후배, 동료들의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요청받은 일은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복리후생권	-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다. -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4. 안전권	-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5. 연구결정권	-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 받았다.
6. 사생활보호권 (프라이버시권)	- (교수로부터)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 -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
7. 연구성과 명의권	-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 교수에 의한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 당한 경우가 있다. - 학술지 게재 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 받았다. - 선후배, 동료들의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 선후배, 동료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 당한 경우가 있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학술지 게재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교수로부터 - 교수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다. -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 ❍ 선후배, 동료로부터 - 선후배, 동료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다. -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 받았다. -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
	❍ 교수로부터 - 성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들었다. -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 선후배, 동료로부터 - 성적으로 차별, 희롱 또는 음담패설을 들었다. -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다. -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다. -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 -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였다.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등을 제공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 받았다. - 선후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나 국내의 학술적 논의는 매우 드문 편이다. 아마도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논할 때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누고, 고등교육에 관한 논의는 주로 대학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학원이 교육에 관한 학술적 혹은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학원 교육을 사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대학원은 직업적으로 학문 연구를 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며 따라서 대학원 인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원 인구는 2014년 현재 고등교육 전체 인구 대비 10.1%인 33만 명이다(황희란, 2015). 최근 들어 급증했다고는 하나 인구 전체의 0.1%도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 아니며 따라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선택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반대의 시각은 대학원 교육의 성격을 공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대학원은 새로운 지식 창출 인력이나 사회의 지도적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대학원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특히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자의 시각은 대학원 교육을 일종의 사치재(奢侈財)로 보는 것이고 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의 시각은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정책 차원에서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원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과 투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 혹은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서로 내적으로 관련된 계기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형성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1999년 봄에 발표된 '두뇌한국 21(BK21 : Brain Korea 21)' 정책이었다.[10] 주요 내용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하되 특히 이를 위해 지원되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쓴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최초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2000년대 이후 학위 수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조명을 받게 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학 분야 대학원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의학 박사학위 취득 개선 사항'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안하였고, 동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6년 2월 '박사학위과정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2).

세 번째 계기는 2010년 이후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들이 빈발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한 경우이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2011년 카이스트 대학의 대학원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인권 상황이나 연구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학원생 인권 개선이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10) 이 사업은 1999년에 시작되어 2005년에 제1단계가 추진되었고, 2006년에서 2013년 2월까지 2단계로 하여 마무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대학원생 문제에 관한 학술적 혹은 정책적 연구 실적은 많지 않다. 우선, BK21 관련 연구는 많지만 그 가운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극소수이다. 먼저 김병주 등(2005)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담당 교수의 연구의욕'은 향상되었으나 '학생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 '교수와의 상담기회 확보' 등에서는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사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정우진 등(2008)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지원, 학술 및 대외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교육환경(교수 1인당 학생수, 강의실 환경, 연구공간 제공, 자료접근성 등) 지원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덕호(2013)는 BK21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학원생들의 연구관련 성과변인들을 2011년과 2012년에 시범적으로 추진된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GPF 사업)와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훨씬 많은 액수(월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GPF(Global Ph.D. Fellowship) 사업이 전국 500개 사업단 2만여 명의 석박사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BK21 사업에 비해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 기대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덕호는 이러한 차이가 학기별로 구분해 보거나 지원의 집중성 등을 고려할 경우 훨씬 줄어드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개인형 연구지원 방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경향을 경계하였다. 기존의 BK21 방식이 지닌 장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나 인권침해 또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나, 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들은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다. 카이스트대학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1년에 처음으로 재학생 900명을 대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상으로 연구환경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3%가 연구인건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47.8%가 월 40만원 미만의 연구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되었던 인건비 전액을 받는 학생은 21.2% 뿐이었다. 연구비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고 응답한 학생도 19.2%에 달했다(연합뉴스, 2011년 4월 11일).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학원생들이 부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불만은 무척 심화되어 있었다. 이듬해인 2012년에 카이스트대학원 총학생회가 다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납입금이나 복지시설(47%)보다 연구비 수당 현실화(63%)와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5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2년 5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도 2012년 인권센터가 설치되면서 대학원생들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해 10월 토론회 형태로 발표된 조사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학원생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12년 한 일간지 사설에서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통해 그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11]

2013년 이후에는 몇몇 유명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상아탑 속에 묻혀있던 대학원의 곪은 부분이 대중적 검증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는 2014년 중반 무렵 전국 33만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

11) 10명 중 1명은 연구비를 빼돌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거나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경우도 8.7%나 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인의 일을 대학원생들에게 시키는 부분이다. 교수 아들의 생일파티에 불려가 풍선을 불고, 교수 부인의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심지어 해외출장 간 교수의 빈 집에 가서 개밥을 줬다고 한다. 머슴살이나 다름없다. 지도교수의 논문 심사비로 수백만 원을 낸다는 증언도 충격적이다."(국민일보 2012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으로 대학원생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54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45.5%) 학생들이 교수들에 의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대학원생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4).

청년위원회 실태조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형태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공개한 곳은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이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2014 연구환경 개선투쟁 <대학원생 실태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설문조사는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96%의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이었다(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2015년 7월에 보고서를 공개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2014년 실태조사는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라는 보고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주요 조사 항목을 보면 경제상황과 장학금, 근로소득, 건강 상태, 진로 및 정보접근성 등으로 2012년의 인권침해실태 파악 위주였던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광범위한 인권문제상황을 파악하고자 대학원생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교육권에 대한 질문에도 공평하게 중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한편, 외국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논문은 70년대에 등장하였고, 90년대 이후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관련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게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60년대에 시작된 대학원생 노조활동이었다. 대학원생들의 학내 인권침해를 다룬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선진국 대학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학내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문제도 이슈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학내 노동에 대한 경제적 처우 개선이었고,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 설립이었다.

비교적 초창기인 1976년에 발표된 Bognanon과 Suntrup의 연구 역시 미네소타 대학에서 있었던 노조설립 운동에 대한 대학원생 조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이때만 해도 대학원생이 노조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생소했기 때문에 노조설립 자체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Bognanon, M. F. & Suntrup, E. L., 1976).

Singh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원생 노조의 기원은 1965년 시작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언론운동이다. 학내 학생 조직에 대한 학교측의 검열에 반대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협상과 파업을 거쳐 400명으로 구성된 수업조교노조를 결성하였다. 대학원생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학원생이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 당국에 의해 협상 주체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노조는 1969년에 결성된 위스컨신-메디슨 대학의 수업조교협의회였다. 이 단체 설립 당시 관련 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당시 대학 총장이던 노동경제학자 Ed Young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설립 이듬해 임금 인상, 사회보장 개선,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교육과정 참여 등을 내걸고 파업을 단행했으며 교육과정 참여 외의 대부분의 조건을 획득하였다. 이들은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1986년 대학원생의 노조 조직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주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 2006).

Gary Rhoades와 Robert A. Rhoades(2003)도 대학원생 노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에 5개에 불과하던 대학원생 노조가 2000년 가을까지 23개 대학으로 늘었고, 그 밖에도 논문을 쓸 당시 최소 19개 대학에서 추진중에 있었다고 한다. 또 위 Singh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27개의 대학원 노조가 존재하는데(캘리포니아 대학 등의 노조를 캠퍼스별로 세면 최소 40개 조직), 이들 조합원 수는 미국의 모든 대학원 피고용자 중 20%에 해당한다고 한다(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 2006).

그렇다면 미국의 대학원생들은 왜 노조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노조 설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적 권익, 예컨대 임금, 혜택, 부수입, 보호 등의 증진에 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이슈 중 하나가 건강보험인데, 이는 대학원생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대표적 항목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오레곤대학의 대학원 교사조직연맹(GTFF, Graduate Teaching Fellows federation)의 예에서 보듯이, 노조활동의 목표를 사회정의의 증진에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 2003).

Daniel J. Julius와 Patrica J. Gumport(2003)의 연구는 대학원생의 노조 설립 이유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으로 학위과정 기간의 연장 정책과 대학원생이나 조교에게 맡기는 채점 등의 업무를 꺼리는 전임교수들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대학 빈민가'(academic ghettos)로 간주되는 학내 기숙사에 더 이상 오래 머물기 싫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한편, Robert A. Rhoades와 Gary Rhoades(2005)는 대학원생 노조설립을 대학의 기업화에 맞선 운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면담에 응한 노조 설립 대표자 36명 중 31명이 이를 언급할 정도로 대다수 노조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이와 관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노조 운동가들은 대학이 갈수록 기업 방식의 경제논리를 도입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그것은 결국 대학에서 노동력 착취와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피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연구대학에서의 학부교육 평가절하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대학원생 노조가 기존의 교수-대학원생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먼저 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2003)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스스로를 학부생과 엄격히 구분하여 자기들을 장래의 교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수-학생의 관계에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나타난 조합들의 문구를 보더라도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예일대학의 대학원생 노조(GESO, Graduate Employees and Students Organization)의 선언 문구이다.

> 노동조합은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로서 우리가 일하는 기관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개별 임금이나 수업단위 크기, 수업조교 할당 등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교수가 아니라 행정이다.
> (http://www.yaleunions.org/geso/why.htm)

대학원생 노조에 대한 촉매와 그 결과를 분석한 Daniel J. Julius와 Patrica J. Gumport(2003)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그들이 많은 면담 자료들과 계약서를 분석해 본 결과 단체교섭이 교수-학생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교수가 지도교수 역할을 거부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할과 고용정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도교수-학생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도 앞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학원생 노조 조직가들 스스로가 교수-학생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1. 국내 대학원생 현황[12)]

우리나라의 대학원 효시는 1947년에 개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근거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공식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대학원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1962년에는 25개 대학원에 2,094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국내 대학원이 급격하게 팽창한 것은 1990년대,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의 일이다. 1990년에 298개에 불과하던 대학원이 2014년에는 1,209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IMF 직전이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408개 대학원이 신설되었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22개 대학원이 신설되어 10년간 무려 630개의 대학원이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대학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대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12) 대학원생 현황에 관한 이하의 내용은 전적으로 황희란(2015)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2.1>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수 변화 추이

(단위 : 교,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감 ('14-'90)
대학 (학부)	전문	117	145	158	158	145	139	22
	교육	11	11	11	11	10	10	-1
	일반	107	131	161	173	179	189	82
	산업	6	17	19	18	11	2	-4
	계	241	304	349	360	345	340	99
대학원 (대학원대학)		298	421	829	1,051 (34)	1,138 (40)	1,209 (44)	911 (10)

주) 대학원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 수와 과 대학원대학 수의 합임.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상기의 <표 2.1>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 수의 변화를 대학(학부) 수와 비교해 본 것이다. 1990년에는 대학원과 학부 과정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0년에는 대학원 수가 두 배를 넘었고 2005년에는 세 배, 2014년에는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62년에 2,094명이던 대학원생은 1990년에 8만 6,911명으로 늘었고, 대학원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던 1995~2005년 사이에는 대학원생 수가 무려 11만 6,709명이, 그리고 2000~2005년 사이에는 5만 2,788명이 증가하였다. 10년 동안 약 17만 명이 확대된 것이다. 이후에도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대학원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현재 33만 872명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고등교육 인구 중 대학원생 비중은 1990년 5.7%에서 2014년에는 10.1%까지 확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2.2> 1990년-2014년 대학(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 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감
대학(학부)	전문	323,825	569,820	913,273	853,089	767,087	740,801	416,976
	교육	15,960	19,650	20,907	25,141	21,618	16,566	606
	일반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2,028,841	2,130,046	1,089,880
	산업	51,970	120,670	170,722	188,753	133,736	60,082	8,112
	계(a)	1,431,921	1,897,875	2,770,300	2,926,622	2,951,282	2,947,495	1,515,574
	증감	-	465,954	872,425	156,322	24,660	-3,787	-
	비율(a/c)	94.3	94.4	92.4	91.2	90.3	89.9	
대학원	석사과정	72,417	93,993	197,436	238,753	263,100	260,897	188,480
	박사과정	14,494	18,735	32,001	43,472	53,533	69,975	55,481
	계(b)	86,911	112,728	229,437	282,225	316,633	330,872	243,961
	증감	-	25,817	116,709	52,788	34,408	14,239	-
	비율(b/c)	5.7	5.6	7.6	8.8	9.7	10.1	-
합계(c)		1,518,832	2,010,603	2,999,737	3,208,847	3,267,915	3,278,367	1,759,535

주1) 대학원생 수는 대학 부설 대학원생 수와 대학원대학생 수의 합.
주2) 증감 : 전년 대비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국내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매우 열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적으로 보면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할 만큼 급격하게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외국의 유명대학들과 비교할 때 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연구 설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의 구성층이 얕아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대학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과 같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름뿐인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연구환경이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대학과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들은 주로 학생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 대학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였다. 정부 역시 대다수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입정책이나 학부 과정의 구조 조정 등에 주된 관심을 쏟았을 뿐 새로운 지식 생산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BK21 사업이 1999년에야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그것이 나름의 기틀을 잡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대학원 교육이 공적 의미를 지닌 과정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개인적 역량이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적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말은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 역시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정책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연구환경 실태를 법제도적 기반, 경제적 여건, 연구 및 학업 지원, 인권 상황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대학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적 기반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원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대학원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은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의 법적 지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며, 결국 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제가 미흡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

이밖에 대학원과 관련된 주요 법률 사항으로는 석·박사 학위과정 통합(재29조의3), 대학원대학(제30조), 수업연한(제31조) 등이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각 대학원 유형에 따라 둘 수 있는 학위과정의 종류를, 제24조에서는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의 기본적인 존립 근거와 존재 양태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라면, 그것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학칙과 하위 규정들이다. 몇몇 대학의 사례를 보자.

우선, 서울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관련 주요 내용은 학칙 제40조의 대학원위원회, 제43조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제45조의 연구운영위원회 3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는 대학원의 설치와 학생 선발, 학위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비 지원과 집행 등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단과대학별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달리 고려대학교는 학칙과는 별개로 1953년부터 대학원 학칙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입학과 전입 등의 학적 발생에 관한 내용, 수업 연한과 학위 취득, 지도교수와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기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각 대학원별 시행 세칙으로 정해져 있다. 1974년부터 대학원 학칙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연세대학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앙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방식을 절충한 형태이다. 즉, 학칙에 대학원 학사운영이라는 절을 두어 통합된 형태를 취하면서도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을 별도로 두어 대학원생의 선발과 교육, 학위수여 등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 교육에 관한 학내 규정들은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학들은 대개 대학원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령의 체제를 반영하여 서울대학교와 같은 형태를 따르는 반면 많은 사립대학들은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려대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의 형식이나 절차 등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항[13]을 제외하고는 대학별로 대동소이해 보인다.

대학원 운영이나 교육에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거의 모든 대학에 구비되어 있는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 지침이다. 그 내용 중에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록 선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도교수가 학생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범답안을 담고 있다(김성열 외, 2014).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을 연구 참여자로서 차별 없이 성실하게 지도해야 하고 그들의 공적을 공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13) 예컨대 연세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채용이나 자원 배분 등의 대우에서 공정해야 하고 학생을 연구 조교로 고용하는 경우 학생이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지도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켜야 한다.

최근에 들어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의 신분과 권리 보장을 대학 구성원들의 협약 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원생 권리 장전'의 제정 노력이 그것이다. 이것은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3개 대학 대학원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전국 33만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의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4] 이후 여러 대학에서 자교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장전'은 법규라기보다 대학내 구성원들 간의 협약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공감대만 충분히 형성된다면 법규 이상의 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대학원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경제적 여건

외국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 경제적 자립을 당연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 학비나 생활비 등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대 인권센터가 2014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

14) 카이스트대학 대학원 총학생회는 바로 직전 전국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한겨레신문, 2014.10.0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용을 보더라도 30.1%의 학생들이 부모나 배우자 등의 지원에 의존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하지만 20대 중반을 넘어선 대학원생이 고액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대개는 할 수만 있으면 자립의 길을 찾고자 한다. 또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형편상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원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장학금 혜택도 매우 적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대학원생들은 상대적 고소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시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반응은 그들이 경제적 소득 마련에 얼마나 목말라하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에 실시된 카이스트 대학의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복수 응답)로 납입금이나 복지시설(47%)보다도 연구비 수당 현실화(63%)를 첫 번째로 꼽았다(한겨레신문, 2012. 5. 14). 또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요소로 경제적 도움(학비와 생활비 도움, 68%)을 꼽았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각종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도 30%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35.5%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12).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등록금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4년의 조사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의 96%가 현재의 등록금 수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렇다면 대학원생들의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피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대략 월 70~110만원, 피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이러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은 대학 안에서 조교 업무 수행, 외부 아르바이트, 시간 강사, 취업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과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학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조교 등의 학내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조교 업무는 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행정조교(GA, General Assistants)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수업조교란 교수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업무이며 연구조교는 대학 내 연구소나 교수 연구실에서 각종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돕는 업무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량이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근무 조건이나 보수를 둘러싼 불만이 늘 제기될 수 있다. 반면 행정조교는 대학 내 행정 규칙에 따라 임용되는 자리라서 신분이나 보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15)]

대학원생들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일을 하더라도 보수가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4년의 서울대 조사에서 42.3%의 응답자들은 TA(Teaching Assistants)나 RA(Research Assistants)의 정원은 있으나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며, 30.8%의 응답자는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조교 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월 60만원에서 90만원(23.0%) 및 월 30만원

15) 하지만 대학원생이 속해 있는 실험실(Lab)의 관행이나 교수와 학생의 관계 방식에 따라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에서 50만원 사이(22.9%)가 가장 많았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1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의 생활비가 대략 10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면 월 6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 받더라도 그 액수가 매우 적다. 전국 대학 중에서 장학금 혜택이 가장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37.4%만이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원생의 2/3가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학금 수혜액은 월 30~60만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자 중 교내외 장학금을 60만원 이상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모두 합하면 15.2%인데, 아마도 이 정도의 학생들만이 가족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과 장학금으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들에서는 이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연구 및 학업 지원

대학원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업과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의 기본 임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것은 아직 미래의 과제일 뿐이다.

우선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 여부를 보자. 이에 관한 한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원생들이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향유하고 있다. 다만 인체에 해로운 각종 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약과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이공계 실험실은 안전 문제가 새로운 도전 거리이다. 주로 강의동과 교수 연구실 위주로 운영되는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 공간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81). 하지만 서울대학교 외의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사립대학 중에서 비교적 조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연구실 확보에 대한 불만 응답자가 만족 응답자의 두 배가 넘고 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최근에 들어 노동과 휴식이라는 일상적 생활공간 외에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설 지원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공간의 예로는 일시보육시설, 아이동반 연구공간, 어린이집, 가까운 유축 공간, 수유공간, 기저귀 교환대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구비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 83).

대학원생들의 학업은 분야별 최고 최신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중적인 몰입과 충분한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학원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학내외 근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쪼들리는 형편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은 근로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학과내 TA 등의 활동은 29.2%, 학내 유급노동은 23.7%, 외부 유급노동은 36.7%, 시간강사는 19.2%가 ‘상당히’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이런 부담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도 유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교나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59%가 연구나 학업 시간의 감소를 꼽았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겉으로 잘 드러내어 놓지는 않지만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학업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예민하면서도 절실한 문제는 지도교수와의 원활한 관계이다.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학위논문 주제 선정에서 논문 작성 과정과 심사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지도교수와의 불화로 학위 과정을 중도에 하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수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예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2014년 고려대학교 실태조사에서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고(61%), 그 이유에 대해 42%의 학생들은 연구 추진력을 꼽았다. 현재의 지도교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52.8%)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24.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2.4 대학원생 인권 상황

대학원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주된 계기는 2011년 이후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보도된 것이라고 할 만큼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2015년 7월 경기도 K대의 J모 교수에 의해 자행된 제자에 대한 폭언, 폭행, CCTV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이기까지 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보여줘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인분교수'라 칭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대학원생들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의 부당한 인권침해 행태를 각종 언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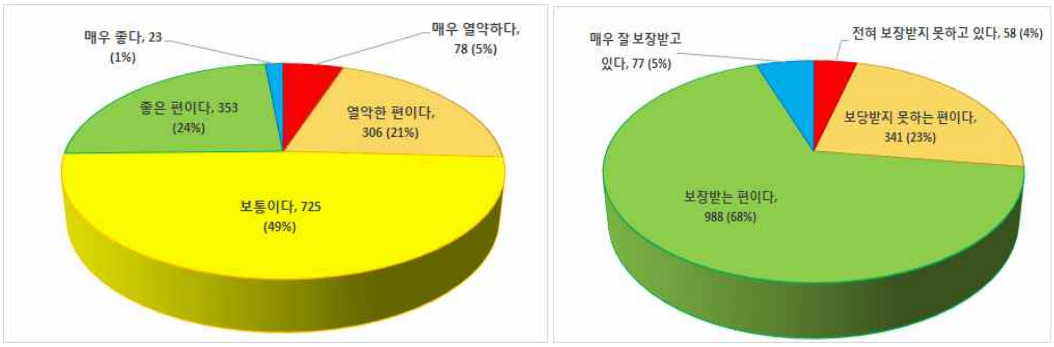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는 ‘슈퍼 갑 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갑질’로 비하하여 표현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종합적인 인권 상황은 2014년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부당처우 경험자는 45.5%에 이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개인존엄권(성희롱이나 각종 폭력 등) 침해가 31.8%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석사보다는 박사 과정이 각각 11%와 13%씩 높았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4).

하지만 같은 해에 실시된 서울대학교 실태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35.9%가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7.3%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월등히 개선된 것이었다(서울대 인권센터, 2015 : 52). 이러한 경향은 고려대의 실타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도교수에 의한 인권침해나 논문 관련 비리에 관한 질문에서 78%의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 34-35). 이런 결과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의 인권 상황이 여타의 대학들에 비해 훨씬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림 2.1]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 인권 및 인권보장 정도 인식도



자료원: 서울대학교인권센터(2015), 『2014년 서울대학교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26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외국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수많은 외국의 대학원 제도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라마다 또는 대학마다 교육제도는 물론 대학원의 형태나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 대학원 운영의 제도적 바탕이 되는 법률이나 규정 형태도 우리와 너무 달라 비교해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술 논문 등 일부 선행연구나 세마나 발표 자료 등에 나타난 미국 대학원생들의 노조 활동이나 각 대학들의 대학원생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외국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을 구성하는 법적 제도적 측면들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외국의 대학원 현실에 대한 극히 일부의 측면만을 담고 있음을 밝혀둔다.

3.1 법제도적 여건

외국의 대학원생들도 국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생활을 동시에 영위해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다. 더구나 외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 이후의 삶을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크게 장학금을 받든지 대학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대학원생들도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스스로의 정체성을 학생으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미국 대학원노조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원 노조 지도자들을 널리 면담한 Gary Rhoades와 Robert A. Rhoades(2002)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주변화된 노동자”(marginalized workers) 또는 “고용계약을 맺은 노예”(indentured servants)라고 부른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만 제대로 대우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받지 못하고 신분도 그리 안정되지 못함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미국 대학원생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다. 자구적 노력의 대표적인 형태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대학 당국과 단체협상을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협상이 법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학원생들이 만든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대학원생들이 피고용자(employees)임을 확인받는 것이다.

대학에서 조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급여를 받는 대학원생의 지위가 피고용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최종 기관은 주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다. 주립인 경우에는 주정부가 결정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이다(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 2006).

미국의 대학원생들이 법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얻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많은 대학들에서는 아직도 파업과 같은 물리적 싸움이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일하고 급여를 받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으로 볼 것인가 피고용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 노조도 스스로가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예일대학교의 대학원생 피고용자 조직(GESO)의 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 2003, 재인용). 하지만 그 문건의 제목은 “예일대학은 대학원생 교사가 일하기 때문에 움직인다.”였다. 학생이기는 하지만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대학원생 조교는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둘 다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하나는 학위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원생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웍이나 시험과 같이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완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일대학이 학부생에게서 받는 수업료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교수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교사이기도 하다.
> (http://www.yaleunions.org/geso/why.htm)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학원생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위에서 인용한 Singh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원생 노조의 기원은 1965년 시작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언론운동이다. 학내 학생 조직에 대한 학교측의 검열에 반대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협상과 파업을 거쳐 400명으로 구성된 수업조교노조를 결성하였다. 대학원생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학원생이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 당국에 의해 협상 주체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노조는 1969년에 결성된 위스컨신-메디슨 대학의 수업조교협의회였다. 이 단체 설립 당시 관련 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당시 대학 총장이던 노동경제학자 Ed Young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설립 이듬해 임금 인상, 사회보장 개선,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교육과정 참여 등을 내걸고 파업을 단행했으며 교육과정 참여 외의 대부분의 조건을 획득하였다. 이들은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1986년 대학원생의 노조 조직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주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와 법정에서 학생이 피고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증을 거친다. 첫 번째는 목적 검증이다. 즉, 조직 결성의 목적이 교육일 경우 비록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협상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검증인데, 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피고용자라는 입장이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2000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전에는 거부했던 뉴욕대학 대학원생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미국 사립대학의 대학원 노조 운동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하지만, 다시 2004년 7월 브라운대학 노조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귀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의 노조 운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 2006)

그렇다면 미국의 대학원생들은 노조 설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대학원생 노조운동가들의 관심은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권익, 예컨대 임금, 혜택, 부수입, 보호 등의 증진에 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오레곤대학의 대학원 교사조직연맹(GTFF)의 예에서 보듯이 노조 활동의 목표를 사회정의의 증진에 두는 경우도 있다(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 2003). 2년 후 동일한 연구자들(Robert A. Rhoades and Gary Rhoades)은 대학원생 노조설립의 동기에 관한 다른 연구를 진행했는데, 면담에 응한 노조 설립 대표자 36명 중 31명은 노조활동을 대학의 기업화에 맞선 운동이라고 답하였다(Robert A. Rhoades and Gary Rhoades, 2005).

한편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대학 운영을 위한 다양한 내규와 함께 학생들의 권리를 규정한 권리장전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권리장전의 주요 항목들이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간결하지만,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들과 또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들이 잘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이 문서에 기술된 원칙들은 여러 단과대학의 정책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를 가진다(강의 접근권, 교수 지도 접근권, 연구 및 임상경험권).
○ 학위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학위취득 조건, 지도교수 배정/선택/변경, 학위수료 예상기간, 졸업률, 재정지원조건 등).
○ 해당 학과목에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기대되는 노력 수준과 구체적 업무, 연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차별 금지, 비밀 보장 등).
○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평가를 받고 평가기준을 알 권리를 가진다(지도교수와 논의할 기회, 학사경고, 재정지원 회수, 퇴교 처분에 관한 정책 등).
○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학생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정 방식에 대하여 지도교수와의 논의 필요).
○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학문적 사안에 대한 독립된 의견, 제도적 방책에 대한 의견 등).
○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연구와 학문적 출판물에 대한 지도교수 및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을 가진다.

3.2 경제적 여건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외국 대학원생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환경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달리 그들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예민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내 인권 문제나 학업을 위한 학교 당국의 지원 또는 교수의 강의나 논문지도 문제 등은 이미 논의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환경의 주요 요소들은 지출 측면에서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와 등록금을 중심으로 하는 학비가 있고, 수입 측면으로는 장학금과 학내 근로 소득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학기 중의 교외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립대학의 경우 특히 주민 자녀의 납입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사립대학은 매우 비싼 편이다.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입금만 연간 5천만원에 육박하며,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 돈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모두 납부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종 명목의 장학금을 통해 상당 부분을 면제 또는 지원받음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외부의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표 2.3>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등록금 현황

Harvard University: 등록금 개요 (2012년)

	In-State				Out-of-State			
	등록금	수수료	교재비	생활비용	등록금	수수료	교재비	생활비용
학부	$ 36,305	$ 3,546	$ 1,000	$ 15,149	$ 36,305	$ 3,546	$ 1,000	$ 15,149
대학원	$ 36,304	$ 3,546	$ 1,000	$ 15,149	$ 36,304	$ 3,546	$ 1,000	$ 15,149

(http://blogkorea.collegetuitioncompare.com/2013/05/harvard-university.html)

Tuition & Fees Harvard University 2015-2016 Academic Year (Undergraduate)		
Year	Tuition & Fees	On Campus Room & Board
2014-2015	$43,938	$14,669
2015-2016	$45,278	$15,381

(http://m.cafe.daum.net/historiaDei/DUu8/183?q=D_iszgdicPfzk0&)

학비의 경우는 이처럼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충당한다지만 생활비는 대부분 학내 노동을 통해 벌어야 한다. 외국 대학원생들의 주 수입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교 업무에 대한 급여이다. 조교 형태는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행정조교(GA)를 두고 있는데, 미국 대학의 학부 수업은 상당 부분 이러한 조교들이 담당하고 있다. Singh(2006)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무렵 대학원생 신분의 강사 비중이 약 35%까지 늘었으며, 비전임 교원의 비율은 1970년 22%에서 1995년 41%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중 18%가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노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서의 조교 업무가 대학의 비용을 절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이유야 어쨌든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조교 업무 수행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일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 형태이긴 한데, 코넬대의 경우를 보면 대학원생 조교들은 전임의 경우 일주일에 15~20시간(시간제 조교는 10시간)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하며, 평균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연구조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외에 추가로 1주일에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한다. 코넬대학은 이처럼 급여를 받는 대학원생을 직원으로 인정한다(조성란, 2015).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앞에서 살펴 본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3.3 대학원생 인권 상황

미국 대학의 조교들이 하는 업무는 엄격하게 학문과 연구에 관련된 것에 국한한다. 만일 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교수가 있으면 당장 학교 내규에 저촉되어 고발당하거나 문제제기에 직면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규정이나 관행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처럼 교수의 사적인 심부름을 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불상사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교가 아니더라도 대학원생은 누구나 자신이 독립적인 연구자이자 존엄한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된다. 하버드 대학의 예를 보자(김선주, 연도 미상). 이 학교에서는 각종 규정이나 문서를 통해 조교 임용의 평등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 성희롱이나 연구 업무 외의 행동에 대한 규제, 고충처리 절차,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을 공개하고 있고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성적 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매우 엄격하여 총장이라도 혹독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예로 2005년 한 학술대회에서 '과학과 수학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성공한 경우가 적다는 점은 유전적 차이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로렌스 섬머스(Lawrence Summers) 총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약 1년간 각종 비판에 시달리다가 2006년 사임했다. 그 후 하버드 대학은 여성 과학자를 위한 TF 설치,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최초의 하버드 대학 여성 총장(Drew Gilpin Faust) 임용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대부분의 유명 대학들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를 규정이나 관행을 통해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코넬대의 경우를 보자. 우선, 교수의 기본적인 업무는 학생을 도와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제한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논문을 게재하거나 출판할 경우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반드시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저자가 되거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규정 중에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졸업 후 모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은 대개 파벌 형성을 방지하거나 학문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조성란, 2016).

이상과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볼 대 미국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겉으로 느슨해 보이면서도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양자의 역할이 뚜렷이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그것이 실천적으로 양자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정당한 관계 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경우 그는 대학사회에서 혹독한 곤욕을 치르게 되고 심할 경우 결국 대학사회에서 추방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가시적 혹은 불가시적 강한 압력에 의해 인권문제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선진국 대학들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절 대학원생 지원정책 현황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FGI)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서울대학교인권센터 보고서, 고려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내 대학들의 대학원생이 대한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대학들의 대학원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명문화된 지원정책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지원조항이 각 대학원의 요람에 공식화 되어 있을 뿐이다.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조교, 즉 수업조교(TA)나 연구조교(RA), 행정조교(GA) 등으로 근무여건이나 보상 등의 지원정책은 미비 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장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나 혹은 수업조교나 연구조교 등으로 근무할 경우 주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월 생활비 명목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인권센터, 2015). 그마저도 수업조교나 연구조교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지도교수나 학과에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인 교수개인이 비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연구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코넬대학의 경우에는 풀타임제 학생의 경우 한달 급여가 한화로 약 190-200만원 선으로 우리와는 경제적 환경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성란,2015).

16) 코넬대학의 경우에는 조교로 근무할 경우 일주일에 15-20시간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구조교(RA)는 본인의 논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논문작성을 도와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조교(GA)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구공간 등 물리적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등 몇몇 대학의 이공계계열에 대한 지원이 특징적일 뿐 여타의 대부분의 대학이나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연구공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 교수연구실이나 빈 강의실을 연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대학원생의 심층면접결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경제적 지원환경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에 비해 장학금 및 조교 수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어요. 예를 들어, 등록금,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를 합하면 월평균 150이 필요한데 현재는 프로젝트로 60만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해요. 수입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된 장학금이 적어서 연구실 프로젝트 비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지도교수의 연구 역량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편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프로젝트 수주가 적은 연구실의 경우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해 빚을 지거나, 최악의 경우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 1년 차는 매달 10만원, 2년차는 매달 20만원, 박사가 매달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공계 연구실은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공용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교수 혹은 교수가 신뢰하는 구성원이 학생들 전체의 인건비를 수거하고 나름의 규칙에 따라 재분배하고 있죠.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모두 여기고 있어요. 인건비 분배도 못하는 연구실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입 보장 자체가 힘들다는 인식이 크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제도적/물리적 지원환경

“솔직히 말하자면 유명한 국공립대학의 지원은 저희 같은 사립대의 지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석사가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의 개념도 단위가 틀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교수님이 따로 챙겨주는 금액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립대의 학부생 한 학기 등록금은 450만원, 대학원생 한 학기 등록금은 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전라도 지역의 국립대인 경우, 생명과학과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립대의 경우에 교수님 한분과 한명의 학생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국공립대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죠. 인력 규모나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큰 프로젝트를 따오고 싶으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도 제안하기 힘들고,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물리적 지원도 없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입학 전에는 장학금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입학 후에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저보고 차라리 빚을 내고 학교에 다니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장학금이 나와도 거의 등록금만 충당되는 정도입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교를 포함해 다른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연구소 근무와 조교 활동을 포함해 매일 공부할 여유가 없이 일만 해도 생활비가 없어서 솔직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연구실과 실험실의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실험 중간에 따로 쉴 곳, 생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독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간에서 식사와 수면을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러다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학생대상의 복지가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대학 재단이나 발전기금의 자산으로 이용되어 그 공간이 정작 학생 복지를 위해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는 공간이 텅텅 비어 몇 년 비어있는 곳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휴게실, 생리중이거나 임신, 출산을 한 학생들이 쉬고 모유수유를 할 공간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공에 따라 다양한 저널에서 자료를 살펴봐야 하지만,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학교에서 구독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비용면에서도 이유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정보 검색 혜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우수한 저널을 찾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학교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논문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지원환경

“교수님이나 선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학문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연구실에 잔류하기 어렵습니다. 지도교수 변경도 어렵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은 솔직히 한국을 떠나지 않고서는 학문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죠.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교수가 논문심사에서 계속 방해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 학생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부당한 대우는 받는 사례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어요.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그 뒤에 감당해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 커서 차라리 조용히 참고 졸업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령, 실습비나 연구비 횡령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자체를 피해버리죠”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과정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낙인이 찍히면, 졸업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니까요. 문제를 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정말 대학원생은 로마 시대 노예 같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집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정말 불쌍한 노예랑 똑같아요. 주인의 인격에 따라 삶이 뒤바뀐다는 점에서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 사람의 인격에 의존해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건 시스템도 아니라 도제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자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의 학문적 생산성과 복지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문제를 드러내서 제도화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의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식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성희롱,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논문대필 등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일부 대학교(대학원) 등에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학교가 2000년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2012년에 인권센터(http://hrc.snu.ac.kr/)로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가 비슷한 시기 인권센터(http://humanrights.cau.ac.kr/)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카이스트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윤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도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몰카 없는 캠퍼스를 위한 전수조사'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이들 기관들은 모두 부속시설로 운영되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교원으로 할 경우 독립성이 일부 휘손될 수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 외 서강대, 강원대, 포스텍, 한양대 등에서도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2.4>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대학의 운영 현황

구분	서울대학교	중앙대	카이스트	동국대학교
명칭	인권센터	인권센터	인권윤리센터	인권센터
설치년도	2012년	2012년	2014년	2014년
설치근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조직구성	인권상담소,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3개 운영위원회	단일	단일
상시인원	7명	5명	3	3명
센터장 신분	학내 교원	.	.	.
온/오프라인 상담유무	○	○	.	.
자체 홈페이지	○	○	.	.
최근 3년간 상담건수	2013년(1,774) 2014년(1,225) 2015년8월 현재(1,006)	.	.	.
전화번호	02-820-2421	02-820-6907	02-350-1212	02-2260-304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5절 해외 대학교의 권리장전 및 운영사례

1. 권리장전

대학원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한 해외대학의 다양한 사례 중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생에 대한 학생권리 및 책임과 관련되 권리장전을 보면 크게 10가지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영역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학습권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
2. 정보 접근권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
3. 교육 및 학습환경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4. 인격 존중권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
5. 평가에 대한 알 권리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
6. 보상받을 권리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을 권리
7. 학문 및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자유의사의 표현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
9. 복리후생 등에 대해 보장 받을 권리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
10.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구체적인 권리장전 전문을 보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학생권리책임 성명 전문

『존스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권리 책임 성명』(Statement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h.D. Student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접속링크: http://web.jhu.edu/administration/provost/initiatives/phd_board/rights_responsibilities
2011년 10월 11일 조인(링크 내 notes 링크 참조) / 서문 및 권리 부분만 인용. 번역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 『2014년 서울대학교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5, 186-88(부록4)에서 인용.

Preamble: Ph.D. education is fundamental to the University's teaching and research mission. For an intellectual community of scholars to flourish,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compact between Ph.D. students, the faculty, and other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It is in this spirit that the Doctor of Philosophy Board, in collaboration with faculty and students from across the University, has articulated a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doctoral students at Johns Hopkins.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is document are to be realized in policies established by the various Schools of the University; the Schools will also develop mechanisms to monitor and enforce such policies.
서문: 박사과정교육은 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 사명에 있어 근본이 된다. 학자들의 지적 공동체가 번창하기 위해 박사과정학생, 교수진 및 대학 공동체의 기타 구성원 간 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위원회는 대학 내 모든 교수진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존스홉킨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명을 밝힌다. 이 문서에 기술된 원칙들은 대학 내 여러 단과대학에 의해 규정된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RIGHTS

1.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supervision and training. This includes access to the classroom, laboratory and teaching opportunities necessary for completion of degree requirements, appropriate and regular faculty supervision consistent with the norms of the discipline, as well as appropriate research and/or clinical experiences.

박사과정 학생들은 교육, 지도 및 훈련의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요건 달성을 위해 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수적인 강의실, 실험실, 강의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각 학과의 기준에 맞는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수의 지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며 적절한 수준의 연구 및 (혹은) 임상 경험을 포함한다. [학습권, 물질적인 연구환경 보장]

2.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full and regular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This includes information regarding program requirements, assignment/selection/change of advisor, expected time to completion, graduation rates, and conditions of financial support.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위취득조건, 지도교수 배정/ 선택/ 변경, 학위수료 예상기간, 졸업률, 재정지원조건에 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학위과정에 필요한 정보접근권]

3.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onditions of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that are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ir discipline. This include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ongoing consultation regarding their expected effort and specific duties, as well as clearly stated criteria for participation in collaborative work and/or research.

박사과정 학생들은 해당 학과목에 적절하고 합당한 학습, 교수, 연구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그들에게 기대되는 노력 수준과 구체적 업무, 그리고 협력 작업 및 (혹은) 연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명확히 규정된 규준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 협의를 포함한다. [학습권, 정보접근권, 교육연구환경 보장]

4.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be treated in a respectful and professional manner by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ommunity. This includes freedom from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s well as assurance of reasonable confidentiality in their communications, as governed by university policy.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전문적 태도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학 정책에서 적용되듯이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 의사소통에서 합당한 수준의 비밀보장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평등권, 인격존중]

5.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receive, on a regular basis, written evaluation of their progress and to be informed of the criteria upon which the evaluation is based. Students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discuss such evaluations with their advisor. Each program should make available their policies concerning academic probation, funding withdrawal, and dismissal; reasonable warning should be provided in advance of dismissal based on failure to make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박사과정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척상황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지도교수와 논의할 기회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각 과정은 학사 경고, 재정지원 회수, 퇴교 처분에 관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학문적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에 근거한 퇴교 처분 이전에는 합당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학습권, 객관적 평가근거를 제공받을 권리. 학생에게 불리한 행정절차 시 권리보장]

6.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ppropriat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research and scholarship. This will require 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 advisor and other relevant parties regarding expectations for student contributions and the nature of the recognition.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와 학문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 학생의 공헌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인정 방식에 대한 학생, 지도교수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연구실적 인정]

7.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ademic freedom. This includes the right to express, without reprisal, independent opinions about scholarly issues (such as opinions regard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bates in their disciplines), opinions regarding matters of institutional policy, concerns about suspected research misconduct and personal opinions on public matters.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견(학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 제도적 방책에 대한 의견, 의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학문 및 표현의 자유]

8.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have their views represented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govern the Ph.D. Student ideas and perspectives should be solicited and considered if substantiv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a Ph.D. program are anticipated.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를 규율하는 방침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박사과정 체계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생각과 관점을 구하여 고려해야 한다. [자유의사의 표현, 학습권, 대학원 과정 정책에 대한 참여권]

9.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clearly defined policies regarding benefits and non-academic issues pertinent to their student status. These policies should cover (but not be limited to) such things as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recognition of family responsibilities, leave, vacation and other absences. These policies should acknowledge that students can, without reprisal, form clubs,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around common interests, as long as these are consistent with general non-discrimination policies of the University.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생 신분과 관련된 복리후생 및 비학문적 사안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부양의무의 인정, 휴가 및 기타 결근 등에 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보장 내용은 상기 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학내의 일반적인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원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동아리,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복리후생에 대한 경제권, 의료지원, 부모학생보호, 단체결성권, 참여권]

10. Ph.D. students have the right to accessible procedures for redress of their grievances. Each School within the University must provide mechanisms to ensure that grievance procedures are fair and without reprisal. These procedures should include Ph.D. student representation, as appropriate.

박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시정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각 단과대는 고충처리 과정이 공정하며 보복 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학원생 대표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절차기구,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 대표의 참여권]

2. 캐나다의 운영 사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하 UBC)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평등 및 포용 사무국'(The Equity and Inclusion office)」을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 주소(http://equity.ubc.ca) / 담당자 메일(equity@equity.ubc.ca) 참조).

UBC에서는 사무국에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장, 교수, 대학원생, 옴부즈맨, 학교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 20여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대학평의원회와도 연결된 '평등과 다양성 담당 학장 자문단(the Provost's Advisory Committee on Equity and Diversity)'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평등 및 포용 사무국 소속의 일부 구성원들이 자문단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다.[17)]

17) 2014년 구성원은 http://equity2.sites.olt.ubc.ca/files/2010/06/EIO-Org-Chart-Feb2014.pdf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UBC에서는 구성원의 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평등(Employment Equity)방침(1990년 최초 제정)[18] 및 차별과 추행(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방지 방침(1995년 최초 제정)[19]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평등 및 포용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사무실은 밴쿠버(Vancouver) 및 오카나간(Okanagan) 캠퍼스에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을 위한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하고 있다.

평등 및 포용 사무국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내 학업 및 업무 환경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둘째, 교내 차별 및 추행 예방을 위한 각종 업무
셋째, 구성원 개개인이 차별 및 추행 관련 문제를 겪는 상황을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감독기구(Director of Conflict Management)를 두고 있으며, 구성원의 차별 및 추행 관련 문제(인종, 종교, 성, 장애, 성적 지향 포함)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감독기구는 학내에서 대학원생들의 평등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UBC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학생, 직원(staff), 교원(faculty) 및 각 직능조합, 단과대별 평등 위원회 등의 대표자들을 위한 발표와 패널을 참가시키는 다양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원생들의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다양함 담론을 제공하는 등의 기여

18) http://www.universitycounsel.ubc.ca/files/2010/09/policy2.pdf 참조
19) http://www.universitycounsel.ubc.ca/files/2013/08/policy3.pdf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를 하고 있다. 또한 관리직 교직원, 고용, 수업 및 직장, 교수-학생 관계 등 다양한 상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내 관련 담당자들을 위해 간략한 용어 가이드북 제공하고 있으며[20], 구성원들을 위한 FAQ[21], 학생맘(부부)을 위한 아동수유 및 기저귀 교체가 가능한 공간 제공[22], 학내 고용 평등실태 관련 상세한 통계 제공(2011-13)[23], 평등 및 다양성, 원주민, 장애, 가족, 젠더, 인종과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학내 각종 연구기관 안내[24], 학내 고용불평등 관련 온라인 인구조사(census)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5]. 조사 항목에는 다문화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증진시키는 항목도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26].

---

20)http://equity2.sites.olt.ubc.ca/files/2013/11/AHU-Responsibilities-Regarding-EO-Policies-2013.pdf

21) http://equity.ubc.ca/employment-equity/employment-equity-census-faqs/

22) http://equity.ubc.ca/programs/ubc-breastfeeding-friendly-spaces/

23) http://equity.ubc.ca/data/

24) http://equity.ubc.ca/academic-programs-research/

25) http://equity.ubc.ca/employment-equity/employment-equity-online-census/ 참조.
설문지는 http://equity2.sites.olt.ubc.ca/files/2012/12/EquityCensusQuestionnaire-interactive.pdf 참조

26) http://equity.ubc.ca/intercultural-underst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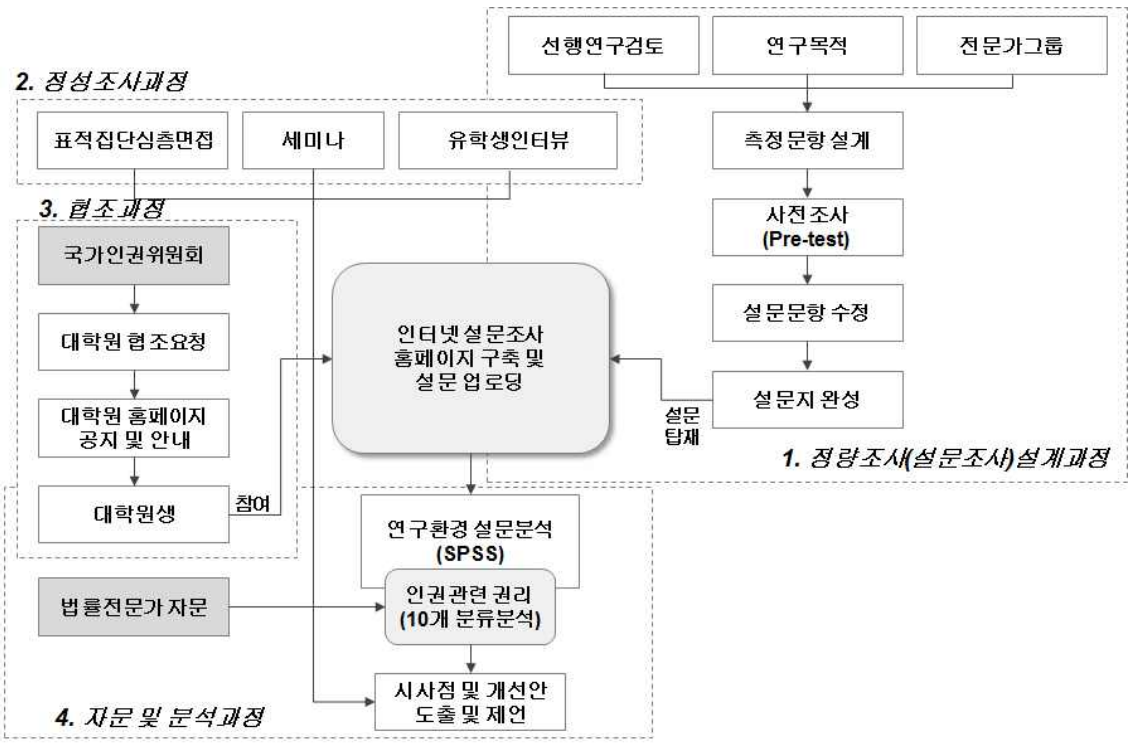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과정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① 실태조사 설문설계를 위한 사전검토 및 정량조사(설문조사)설계과정 ② 심층인터뷰와 세미나 등 정성조사과정 ③ 인권위원회의 협조과정 ④ 자문 및 분석과정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그림 3.1] 연구환경 실태조사 과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 기초분석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정량조사(quantitative survey)뿐만 아니라 표적집단심층면접(FGI)과 대학원생 국제세미나, 유학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등 정성조사(qualitative survey)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량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조사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대학원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연구환경 및 인권관련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질문된 사항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을 보이거나 응답회피권리의 민감성을 고려해 응답회피성향(avoidance response tendency)을 보일 수 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적 조사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의 응답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별 응답자 분포

실태조사 방법		일시 (기간)	응답자 또는 참여자 수
정량조사 (설문조사)		2015.06.08.-06.22 (15일간)	1,906명
정성 조사	대학원생 국제세미나	2015.06.04	24명
	표적집단심층면접(FGI)	2015.06.27	7명
		2015.07.24	4명
	유학생 심층인터뷰	2015.06.20.-07.20	4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을 이용한 정량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전체 표본은 1,906명으로 모집단(330,872명) 대비 5.7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이다.

설문조사에 의한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통계속성별 분포는 <표 3.2>와 같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분포가 2.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5-30세 미만인 대학원생들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5세 미만인 경우는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 20대 연령층이 전체 응답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17%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은 27.5%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학 혹은 수료 여부에 따른 분포를 보면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1,647명(석사 1,284명, 박사 390명)으로 전체 1,906명 중 87.8%에 해당하고 있었다. 나머지 232명(12.2%)은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국공립 혹은 사립여부에 대한 분포를 보면,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재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재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일반대학원에 재학 혹은 수료한 대학원생들이 전체의 86.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계열별로 응답자 분포를 보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등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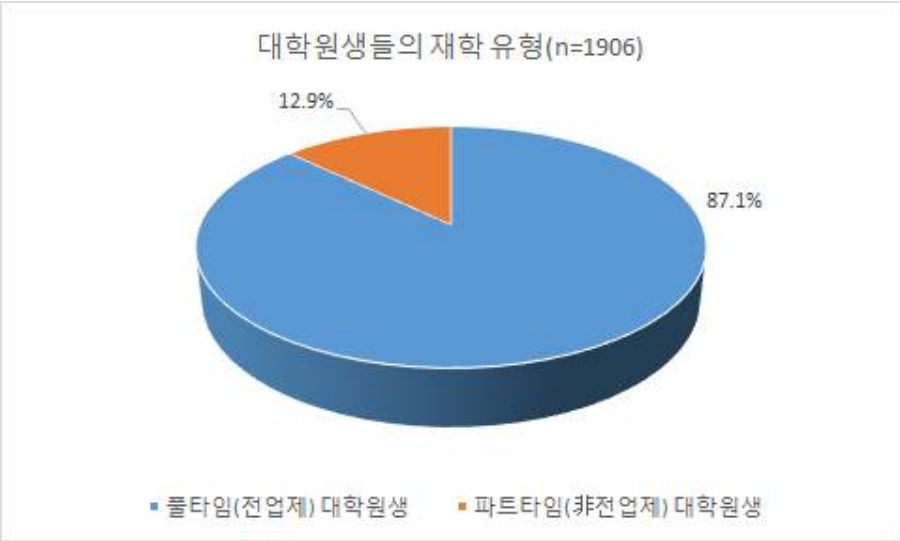
<표 3.2> 설문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빈도	열 N %
성별	남자	904	47.4
	여자	1002	52.6
연령대	20-25세 미만	564	29.6
	25-30세 미만	962	50.5
	30-35세 미만	275	14.4
	35-40세 미만	50	2.6
	40세 이상	53	2.8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재학중	1284	67.4
	석사과정 수료	98	5.1
	박사과정 재학중	390	20.5
	박사과정 수료	134	7.0
설립 성격	국/.공립	1048	55.0
	사립	858	45.0
대학원유형	일반대학원	1647	86.4
	특수대학원	118	6.2
	전문대학원	141	7.4
대학원계열	인문사회계열	410	21.5
	교육/사범계열	124	6.5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97	5.1
	공학계열	646	33.9
	자연과학계열	417	21.9
	의학/약학/간호학계열	167	8.8
	예체능계열	45	2.4
	합계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2 대학원생 재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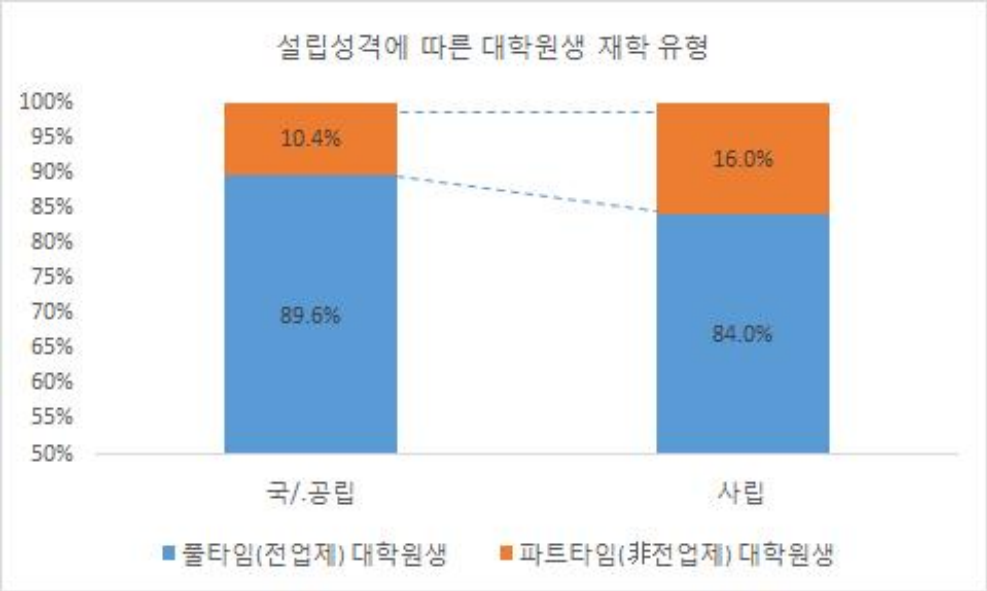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응답한 1,906명의 대학원생들이 갖는 자신의 정체성, 즉 신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전체 응답자 둥 87.1%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이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2.9%는 파트타임(비전업제) 대학원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을 대학원의 설립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의 대학원의 경우 풀타임제 대학원생이 사립대학 대학원생들보다 약 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대학원이 사립대학교의 대학원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풀타임제 대학원생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3] 설립성격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재학 유형

대학원의 유형 및 계열에 따른 대학원 재학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3>에 나타나 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91.0%의 대학원생이 풀타임제 대학원생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제 대학원들이 약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야간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외의 직업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고 약 85% 이상이 풀타임제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풀타임제 대학원생들은 풀타임으로 연구실이나 조교로서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해결하거나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학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학제도나 연구지원제도 등 지원환경을 재학유형, 계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 의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경상계열의 순으로 풀타임제 대학원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대학원생들은 95% 이상 풀타임제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교육/사범계열의 경우 풀타임제 대학원생의 비율이 40% 정도로 타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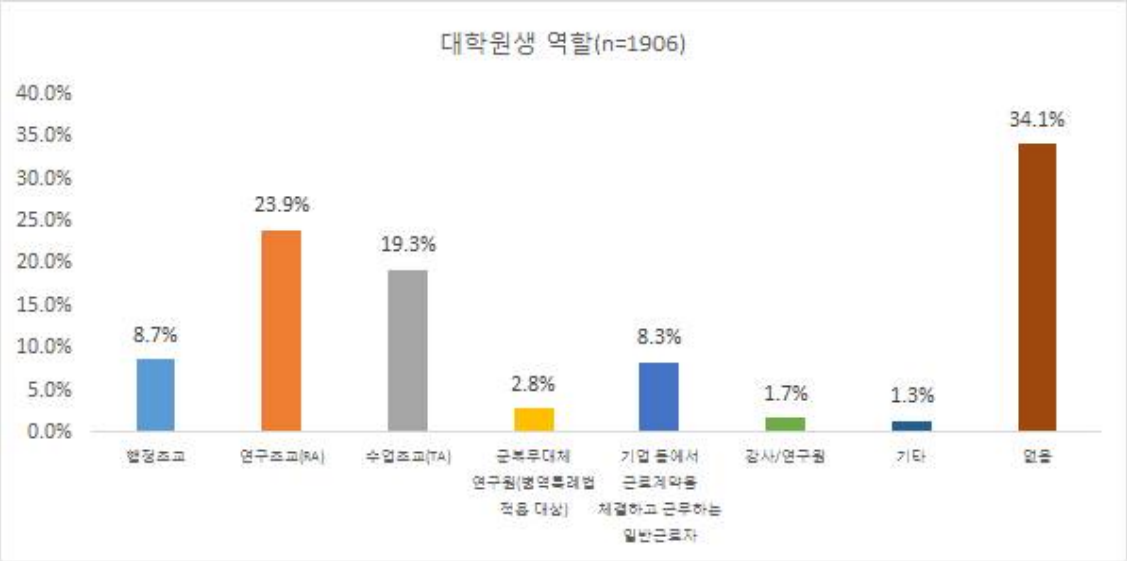
<표 3.3> 대학원 유형 및 계열에 따른 대학원 재학 유형

		재학유형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합계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대학원 유형	일반대학원	1498	91.0	149	9.0	1647	100.0
	특수대학원	42	35.6	76	64.4	118	100.0
	전문대학원	120	85.1	21	14.9	141	100.0
대학원 계열	인문사회계열	335	81.7	75	18.3	410	100.0
	교육/사범계열	49	39.5	75	60.5	124	100.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74	76.3	23	23.7	97	100.0
	공학계열	627	97.1	19	2.9	646	100.0
	자연과학계열	399	95.7	18	4.3	417	100.0
	의학/약학/간호학계열	146	87.4	21	12.6	167	100.0
	예체능계열	30	66.7	15	33.3	45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3 대학원생 활동역할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내에서 활동하는 역할에 대한 분포를 보면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조교(RA)나 수업조교(TA), 행정조교(GA)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전체 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아무런 역할도 없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34.1%로 나타나 이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대학원생들의 대학 내 활동역할 분포

이러한 활동역할에 대하여 설립성격과 대학원 유형, 계열 등에 따라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대학원의 설립유형별로 보면 3가지 유형의 조교(행정, 연구, 수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55.3%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47.5%로 나타나 약 8%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립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생들이 조교역할 등에서 차별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이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조교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대학원 보다 조교역할 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과 경상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3가지 유형의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교육/사범계열이나 의학계열,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4> 설립성격별, 유형별, 계열별 활동역할 분포

		설립성격			
		국/.공립		사립	
		빈도	열 N %	빈도	열 N %
역할	행정조교	66	6.3%	99	11.5%
	연구조교(RA)	294	28.1%	161	18.8%
	수업조교(TA)	219	20.9%	148	17.2%
	소계	***579***	***55.3***	***408***	***47.5***
	군복무대체 연구원(병역특례법 적용 대상)	19	1.8%	35	4.1%
	기업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73	7.0%	85	9.9%
	강사/연구원	14	1.3%	19	2.2%
	기타	7	0.7%	18	2.1%
	없음	356	34.0%	293	34.1%
	합계	1048	100.0%	858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유형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빈도	열 N %	빈도	열 N %	빈도	열 N %
역할	행정조교	137	8.3%	21	17.8%	7	5.0%
	연구조교(RA)	423	25.7%	9	7.6%	23	16.3%
	수업조교(TA)	348	21.1%	10	8.5%	9	6.4%
	소계	***908***	***55.1***	***40***	***33.9***	***39***	***27.7***
	군복무대체 연구원(병역특례법 적용 대상)	52	3.2%	1	0.8%	1	0.7%
	기업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105	6.4%	43	36.4%	10	7.1%
	강사/연구원	29	1.8%	2	1.7%	2	1.4%
	기타	18	1.1%	4	3.4%	3	2.1%
	없음	535	32.5%	28	23.7%	86	61.0%
	합계	1647	100.0%	118	100.0%	141	100.0%

		대학원계열							
		인문사회계열 (n=410)	교육/사범계열 (n=124)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n=97)	공학계열 (n=646)	자연과학계열 (n=417)	의학/약학/간호학계열 (n=167)	예체능계열 (n=45)	합계 (n=1906)
역할	행정조교	19.8%	17.7%	12.4%	3.6%	4.8%	1.8%	8.9%	8.7%
	연구조교(RA)	16.8%	7.3%	32.0%	31.4%	25.4%	16.8%	20.0%	23.9%
	수업조교(TA)	18.0%	12.9%	19.6%	19.8%	26.9%	8.4%	8.9%	19.3%
	소계	***54.6***	***37.9***	***64.0***	***54.8***	***57.1***	***27.0***	***37.8***	***51.9***
	군복무대체 연구원 (병역특례법 적용 대상)	0.2%	0.0%	0.0%	6.3%	2.6%	0.6%	0.0%	2.8%
	기업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8.8%	31.5%	18.6%	4.2%	2.6%	11.4%	17.8%	8.3%
	강사/연구원	2.2%	1.6%	2.1%	1.4%	1.9%	1.8%	0.0%	1.7%
	기타	4.1%	3.2%	1.0%	0.0%	0.2%	0.6%	2.2%	1.3%
	없음	30.0%	25.8%	14.4%	33.3%	35.5%	58.7%	42.2%	3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4 대학원생 신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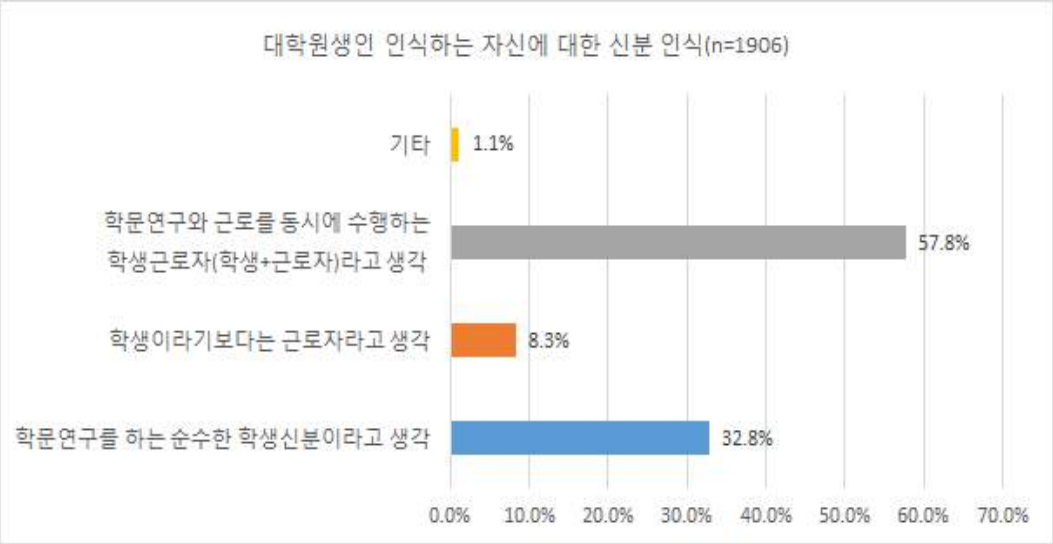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신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을 학생근로자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7.8%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근로자로 인식하는데 따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에 발표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자신을 학생근로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8.2%로 높게 나타나 자신에 대한 신분인식을 학생근로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조교역할이나 연구원 역할에 대하여 '학습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Singh(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1965년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시작된 자유언론운동의 결과로 수업조교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969년 위스콘신-메디슨신학대학의 수업조교노조가 만들어진 후 20년이 흐른 1986년에야 대학원생의 노조조직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정도로 학생근로자로 인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신분이나 인권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규와 학계 등의 담론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5] 대학원생들의 자기신분에 대한 인식

대학원생들의 자신 신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그들이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분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학생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율이 20%대로 나타나고 있는 역할계층은 연구조교나 수업조교, 군복무 대체자 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타 역할계층은 순수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계층이 없는 경우에 순수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학생이라는 신분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5> 활동역할에 따른 자기자신에 대한 신분인식

		신분인식2				
		학문연구를 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각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라고 생각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학생+근로자)라고 생각	기타	합계
역할	행정조교 (n=165)	10.3%	18.2%	71.5%	0.0%	100.0%
	연구조교(RA) (n=455)	27.9%	6.6%	64.4%	1.1%	100.0%
	수업조교(TA) (n=367)	26.4%	7.9%	64.9%	0.8%	100.0%
	군복무대체 연구원 (병역특례법 적용 대상) (n=54)	22.2%	9.3%	66.7%	1.9%	100.0%
	기업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n=158)	12.7%	17.1%	70.3%	0.0%	100.0%
	강사/연구원 (n=33)	9.1%	12.1%	72.7%	6.1%	100.0%
	기타 (n=25)	16.0%	4.0%	76.0%	4.0%	100.0%
	없음 (n=649)	53.3%	4.9%	40.4%	1.4%	100.0%

제2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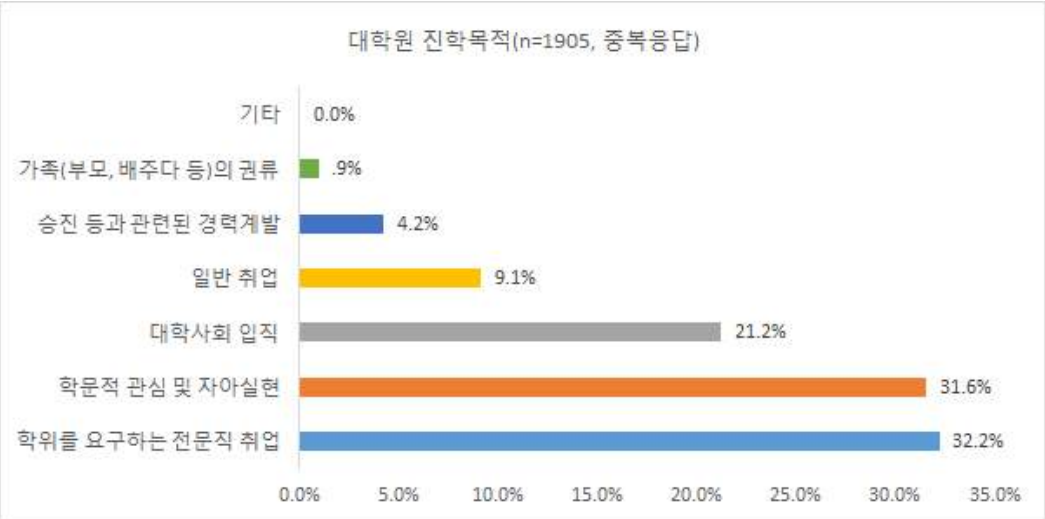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환경과 연관된 대학원생의 인권관련 권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찰력을 찾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량적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표적집단심층면접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들은 이러한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일반적 연구환경

1.1 대학원 진학의 목적

대학원생들의 진학목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은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32.3%)과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의 목적(31.6%)으로 진학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사회(교수, 연구원 등)에 입직하기 위해서(21.2%), 일반 취업을 위해(9.1%)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 승진, 경력개발,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 등의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대학원 진학목적

대학원 진학목적을 학위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의 경우 전문직 취업(35.5%),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의 목적(30.3%)으로 진학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학문적 자아실현의 목적(34.9%)로 나타났으며, 대학 사회(교수, 연구원 등)에 입직하기 위한 목적(33.2%)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학원 진학목적에 있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6> 대학원 과정에 따른 진학목적

구분			진학목적							전체
			대학 사회(교수, 연구원 등) 입직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	일반 취업	승진 등과 관련된 경력계발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	기타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재학중	빈도	200	467	149	64	386	11	7	1284
		%	15.6%	36.4%	11.6%	5.0%	30.1%	0.9%	0.5%	100.0%
	석사과정 수료	빈도	31	23	3	6	33	2	0	98
		%	31.6%	23.5%	3.1%	6.1%	33.7%	2.0%	0%	100.0%
	석사소계	%	231 (16.7%)	490 (35.5%)	152 (11.0%)	70 (5.1%)	419 (30.3%)	13 (0.9%)	7 (0.5%)	1382 (100.0%)
	박사과정 재학중	빈도	137	87	16	10	133	5	3	390
		%	35.0%	22.3%	4.1%	2.6%	34.0%	1.3%	0.7%	100.0%
	박사과정 수료	빈도	37	37	6	1	50	0	2	134
		%	27.8%	27.8%	4.5%	0.8%	37.6%	0%	1.5%	100.0%
	박사소계	%	174 (33.2%)	124 (23.7)	32 (6.1%)	11 (2.1%)	183 (34.9%)	5 (1.0%)	5 (1.0%)	524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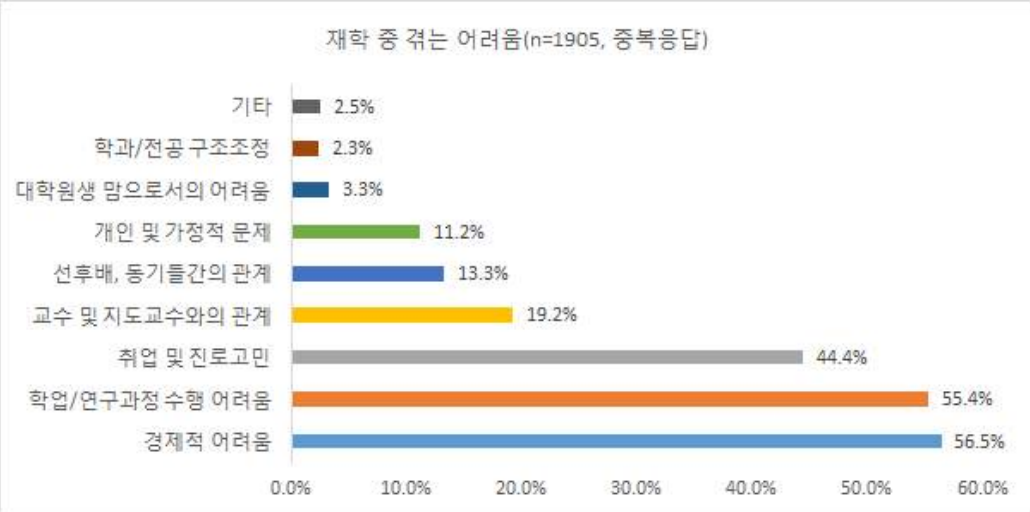
1.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중복응답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26.9%)과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연구과제의 경우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요소가 강한 속성으로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 및 진로고민(21.1%),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9.1%), 개인 및 가정의 문제(6.4%),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6.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어려움(취업 및 진로고민)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교수와 선후배간의 관계)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개인적 관점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시스템적인 취업지도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취업할 것이라는 개인적 사안으로만 여기지 않는 전체 국가 혹은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대학원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상담해주고 안내해주는 제도적 접근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7]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중복응답 기준)

1.3 휴학 경험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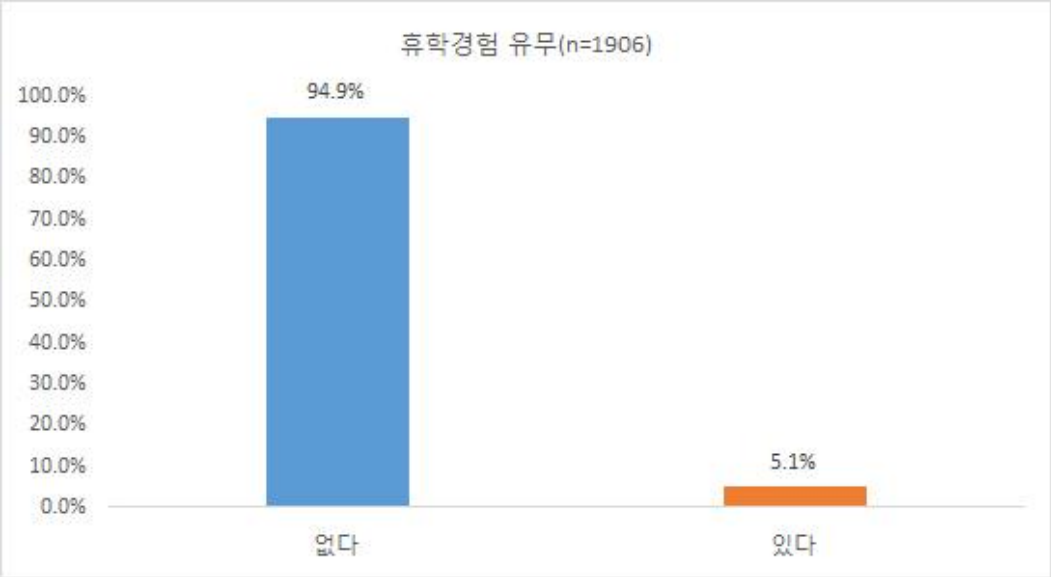
1,906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재학 시 휴학 경험유무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는 <그림 3.8>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약 95%(1,809명) 정도가 휴학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학경험이 있는 경우는 5.1%(97명)로 나타나고 있었다.

휴학 경험이 있는 9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학 이유를 중복응답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휴학한 경우(27명, 28.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및 가정적 문제(23명, 24.0%)였으며, 학업/연구 과제 수행 어려움(15명, 15.6%)이 그 다음의 휴학 이유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은 현재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원 재학 중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휴학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도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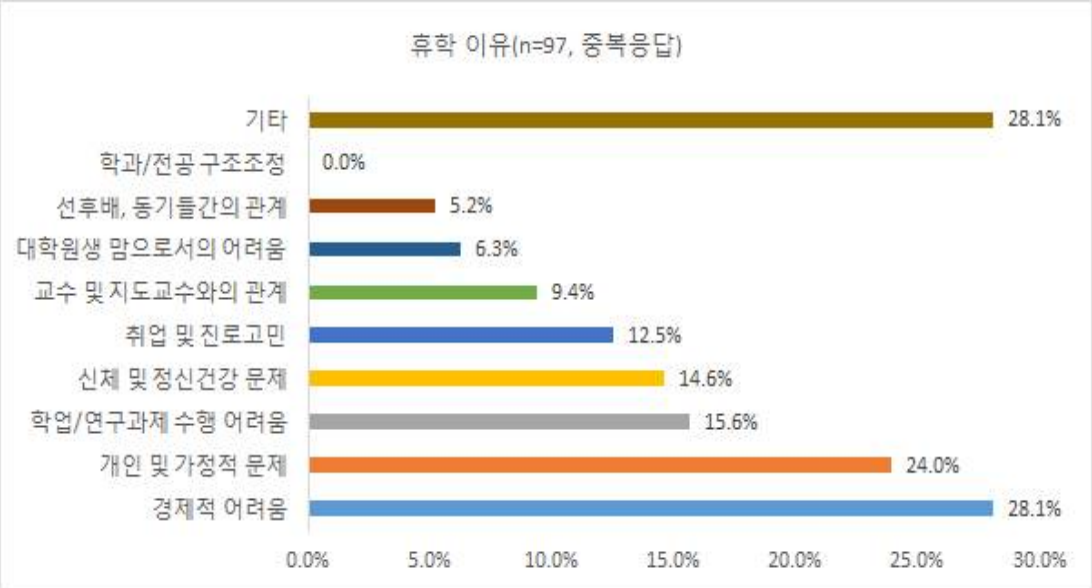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요구된다.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원과정을 단지 개인적인 사치재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장학제도의 도입이나 학외 기업들의 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대학이나 대학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유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9] 대학원 휴학 경험자의 휴학 이유(중복응답 기준)

2. 경제적 연구환경

2.1 등록금 수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한 학기(6개월) 등록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6%), 그 다음으로는 400-500만원 미만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21.2%)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40.2%), 석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300-400만원 미만(37.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에는 400-500만원 미만(35.6%),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34.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7>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 분포

한 학기 등록금 수준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재학 중	석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재학 중	박사과정 수료	합계
	200만원 미만	빈도	96	7	26	9	138
		열 N %	7.5%	7.1%	6.7%	6.7%	7.2%
	200 ~ 300만원 미만	빈도	516	21	95	46	678
		열 N %	40.2%	21.4%	24.4%	34.3%	35.6%
	300 ~ 400만원 미만	빈도	196	37	77	32	342
		열 N %	15.3%	37.8%	19.7%	23.9%	17.9%
	400 ~ 500만원 미만	빈도	217	19	139	29	404
		열 N %	16.9%	19.4%	35.6%	21.6%	21.2%
	500 ~ 600만원 미만	빈도	107	9	27	15	158
		열 N %	8.3%	9.2%	6.9%	11.2%	8.3%
	600만원 이상	빈도	152	5	26	3	186
		열 N %	11.8%	5.1%	6.7%	2.2%	9.8%
	합계	빈도	1284	98	390	134	1906
		열 N %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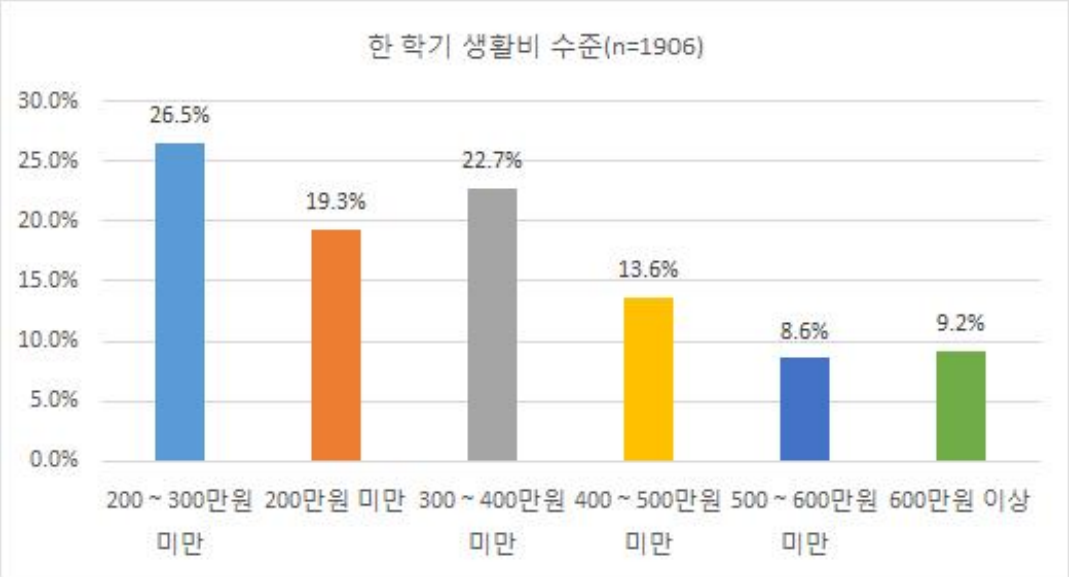
2.2 생활비(경비) 수준

대학원생들이 한 학기 동안 사용하는 생활비 및 경비(의식주를 위한 경비, 책값, 교통비, 오락 및 문화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는 <표 3.8>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한 학기 생활비로 200~300만원 미만(26.5%)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400만원 미만(2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 재학 및 수료 중이거나 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에는 통상 200~400만원 미만의 생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는 생활비가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박사과정 수료 이후의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생들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FGI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즉, 등록금이나 주거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장학금 및 조교 수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등록금,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를 합해 월평균 150 정도의 최소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연구비로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은 월 60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학문연구를 위해 제대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지도교수의 역량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편차가 커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 대학원생의 한 학기 평균 생활비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8> 대학원 과정별 한 학기 소요되는 평균 생활비 수준

한 학기 생활비 수준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재학중	석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재학중	박사과정 수료	합계
200만원 미만	빈도	283	14	55	16	368
	열 N %	22.0%	14.3%	14.1%	11.9%	19.3%
200 ~ 300만원 미만	빈도	393	22	73	18	506
	열 N %	30.6%	22.4%	18.7%	13.4%	26.5%
300 ~ 400만원 미만	빈도	308	25	85	15	433
	열 N %	24.0%	25.5%	21.8%	11.2%	22.7%
400 ~ 500만원 미만	빈도	148	15	72	25	260
	열 N %	11.5%	15.3%	18.5%	18.7%	13.6%
500 ~ 600만원 미만	빈도	77	8	59	19	163
	열 N %	6.0%	8.2%	15.1%	14.2%	8.6%
600만원 이상	빈도	75	14	46	41	176
	열 N %	5.8%	14.3%	11.8%	30.6%	9.2%
합계	빈도	1284	98	390	134	1906
	열 N %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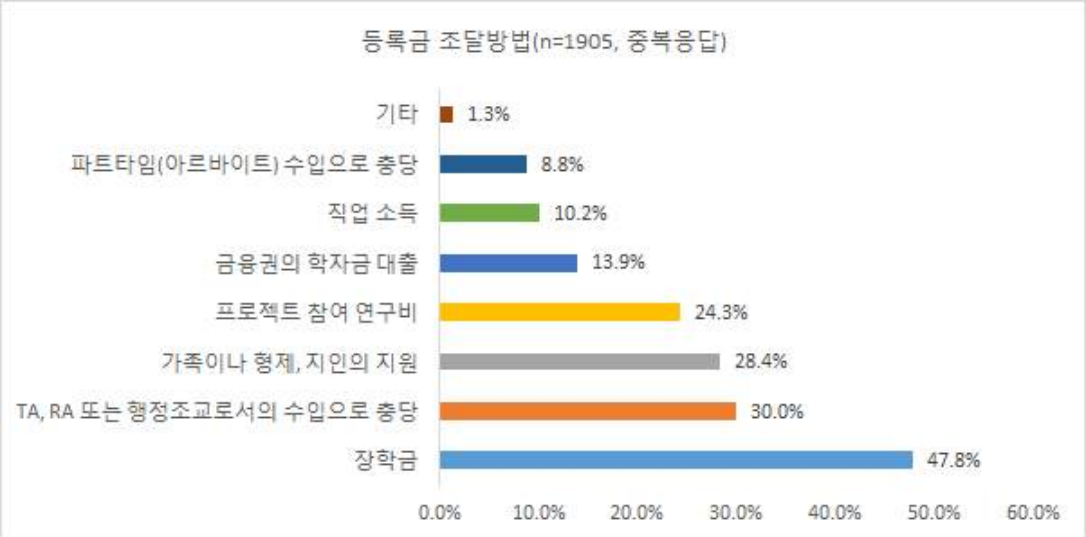
2.3 등록금 조달 방법

대학원 등록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중복응답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3.11>과 같다. 대학원생들이 등록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장학금에 의한 경우가 4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조교(TA, RA 또는 행정조교)로 근무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30.0%,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28.4%,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24.3%,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로 13.9%, 직업 소득 10.2%,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 8.8%, 기타 1.3%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의 대학원생이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거나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를 통해 등록금의 조달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82.88% 수준(응답자 365명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조교수입이나 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젝트 참여연구비로 등록금 전체를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3.11]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조달 방법(중복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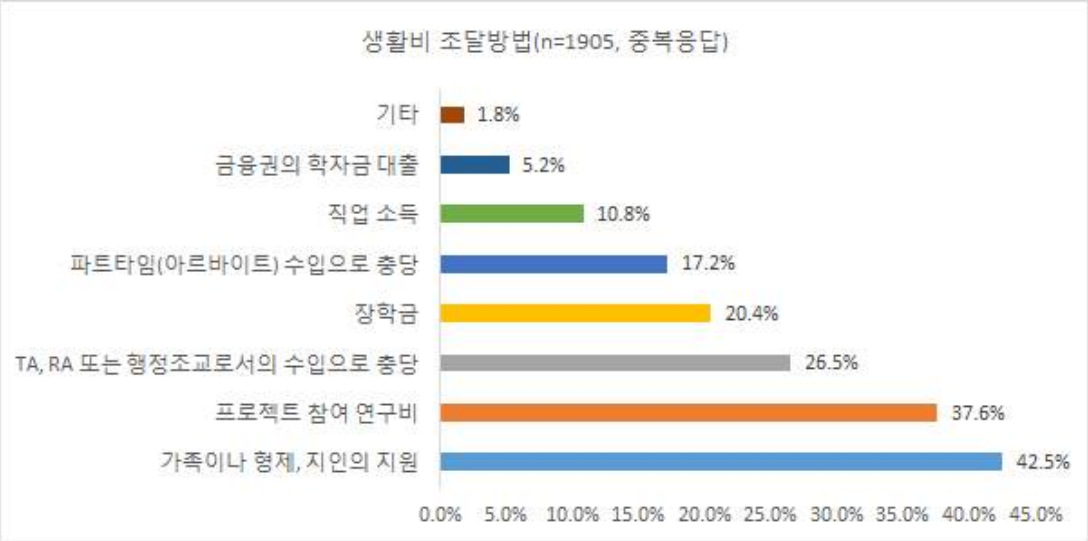
2.4 생활비 조달 방법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가족, 지인의 지원에 의한 경우(4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경우(37.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26.5%, 장학금에 의한 경우는 20.4% 등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5.2%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받는다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대학원생 257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TA, RA 또는 행정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로서의 수입이나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의 70.25%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조달방법(중복응답 기준)

2.5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대학원생들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실태를 평가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경제적 환경을 평가하는 5개의 측정 문항 중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는 Top2 퍼센트가 높은 항목을 3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Top2 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3개 항목을 보면, 일상생활비용의 조달 어려움과 여타의 수입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상황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9>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실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등록금 마련 때문에 기초 생활에 어려움	빈도	361	376	622	362	185	737	547	1906
	%	18.9%	19.7%	32.6%	19.0%	9.7%	38.7%	28.7%	100.0%
일상생활 비용의 조달에 어려움	빈도	195	270	567	581	293	465	874	1906
	%	10.2%	14.2%	29.7%	30.5%	15.4%	24.4%	45.9%	100.0%
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려움	빈도	115	208	330	572	681	323	1253	1906
	%	6.0%	10.9%	17.3%	30.0%	35.7%	16.9%	65.7%	100.0%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미래(질병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없음	빈도	68	130	238	538	932	198	1470	1906
	%	3.6%	6.8%	12.5%	28.2%	48.9%	10.4%	77.1%	100.0%
경제적 문제로 학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음	빈도	316	542	453	385	210	858	595	1906
	%	16.6%	28.4%	23.8%	20.2%	11.0%	45.0%	31.2%	100.0%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3.1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대학원의 장학제도와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총 9개의 문항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질문이 긍정 혹은 부정의 형태에 따라 Low2 퍼센트와 Top 퍼센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0>에 나타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연구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Low2 퍼센트의 응답이 동의하는 Top2 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응답(Low2 퍼센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Low2 퍼센트)이 긍정적인 답변(Top2 퍼센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Low2 응답이 그렇다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Top2 퍼센트)이 30.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업무요구나 근로요구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GI에서도 나타나 지도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는 대학원 생활을 '노예 같은 생활'이라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원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과 진학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 여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여부,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지원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Low2 퍼센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학원의 장학금 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동의하는 경우(Top2 퍼센트)가 전체 응답자의 84.9%를 차지해 대학원생들이 국가나 자치단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0>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281	560	725	294	46	841	340	1906
	%	14.7%	29.4%	38.0%	15.4%	2.4%	44.1%	17.8%	100.0%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	빈도	241	454	719	428	64	695	492	1906
	%	12.6%	23.8%	37.7%	22.5%	3.4%	36.5%	25.8%	100.0%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빈도	186	420	731	497	72	606	569	1906
	%	9.8%	22.0%	38.4%	26.1%	3.8%	31.8%	29.9%	100.0%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다	빈도	211	450	672	365	208	661	573	1906
	%	11.1%	23.6%	35.3%	19.2%	10.9%	34.7%	30.1%	100.0%
취업과 진학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빈도	372	578	642	291	23	950	314	1906
	%	19.5%	30.3%	33.7%	15.3%	1.2%	49.8%	16.5%	100.0%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빈도	752	555	523	67	9	1307	76	1906
	%	39.5%	29.1%	27.4%	3.5%	0.5%	68.6%	4.0%	100.0%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빈도	574	592	535	182	23	1166	205	1906
	%	30.1%	31.1%	28.1%	9.5%	1.2%	61.2%	10.8%	100.0%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지원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도	384	488	706	271	57	872	328	1906
	%	20.1%	25.6%	37.0%	14.2%	3.0%	45.8%	17.2%	100.0%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23	32	233	780	838	55	1618	1906
	%	1.2%	1.7%	12.2%	40.9%	44.0%	2.9%	84.9%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2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하여 6개 문항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정도(Low2 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정도(Top2 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원내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부모들의 학습권과 자녀를 안전한 장소에서의 돌봄 및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FGI에서도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생리중이거나 임신, 출산을 학생들이 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도서관의 정보제공성이나 강의실 및 연구실의 각종 편의시설(전자기기, 실험기기, 냉난방 및 방음 등)의 구비성,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Top2 퍼센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다만 연구실이나 실험실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평가(Low2 퍼센트)도 21.2% 정도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1>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다	빈도	387	547	556	357	59	934	416	1906
	%	20.3%	28.7%	29.2%	18.7%	3.1%	49.0%	21.8%	100.0%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빈도	1071	516	273	40	6	1587	46	1906
	%	56.2%	27.1%	14.3%	2.1%	0.3%	83.3%	2.4%	100.0%
도서관은 필요한 학술정보나 도서, 온라인 저널 지원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	빈도	61	170	462	853	360	231	1213	1906
	%	3.2%	8.9%	24.2%	44.8%	18.9%	12.1%	63.6%	100.0%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연구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빈도	221	302	442	654	287	523	941	1906
	%	11.6%	15.8%	23.2%	34.3%	15.1%	27.4%	49.4%	100.0%
현재 강의실 및 연구실의 각종 편의시설(전자기기, 실험기기, 냉난방 및 방음 등)이 갖추어져 있다	빈도	102	214	565	794	231	316	1025	1906
	%	5.4%	11.2%	29.6%	41.7%	12.1%	16.6%	53.8%	100.0%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빈도	152	253	625	660	216	405	876	1906
	%	8.0%	13.3%	32.8%	34.6%	11.3%	21.2%	46.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학습 및 코스워크 중 수업환경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 만족 여부와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Top2 퍼센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형태로 측정한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와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한 경우, 교수로부터 논문 작성이나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한 경우,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경우, 학점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응답(Low2 퍼센트)이 그렇다라는 응답(Top2 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연구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측정문항에서도 그렇다라는 동의 응답(Top2 퍼센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수 개인사정으로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와 수업을 제한 당한 경우, 연구를 대신한 경우,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Top2 퍼센트)가 11%~2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대학원사회에서 교수 스스로가 개선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2> 학습 및 학위과정 수업환경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만족하고 있다	빈도	117	196	547	768	278	313	1046	1906
	%	6.1%	10.3%	28.7%	40.3%	14.6%	16.4%	54.9%	100.0%
교수가 학습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빈도	38	86	280	873	629	124	1502	1906
	%	2.0%	4.5%	14.7%	45.8%	33.0%	6.5%	78.8%	100.0%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빈도	386	710	461	258	91	1096	349	1906
	%	20.3%	37.3%	24.2%	13.5%	4.8%	57.5%	18.3%	100.0%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다	빈도	669	646	285	217	89	1315	306	1906
	%	35.1%	33.9%	15.0%	11.4%	4.7%	69.0%	16.1%	100.0%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빈도	706	643	339	161	57	1349	218	1906
	%	37.0%	33.7%	17.8%	8.4%	3.0%	70.8%	11.4%	100.0%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빈도	630	578	327	243	128	1208	371	1906
	%	33.1%	30.3%	17.2%	12.7%	6.7%	63.4%	19.5%	100.0%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제공 등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빈도	1187	468	163	60	28	1655	88	1906
	%	62.3%	24.6%	8.6%	3.1%	1.5%	86.8%	4.6%	100.0%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6개 문항을 측정한 결과는 <표 3.12>과 같다. 6개 문항 중 긍정적으로 질문한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는지이 여부와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는지의 여부의 경우 긍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정적인 응답(Top2 퍼센트)이 부정적 응답(Low2 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질문의 형태로 질문한 논문의 주제선정에서의 강제성이나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의 여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Low2 퍼센트)이 그렇다라는 응답(Top2 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학원의 논문지도 및 심사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한 경우나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든 경우 등(Top2 퍼센트)도 10% 이상 나타나고 있어 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GI에서도 지도교수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논문지도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적극 요구된다. 특히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간에 논문지도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 이와 같이 논문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마인드혁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3>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다	빈도	68	165	397	643	308	233	951	1581
	%	4.3%	10.4%	25.1%	40.7%	19.5%	14.7%	60.2%	100.0%
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빈도	498	624	299	108	49	1122	157	1578
	%	31.6%	39.5%	18.9%	6.8%	3.1%	71.1%	9.9%	100.0%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빈도	686	596	207	65	21	1282	86	1575
	%	43.6%	37.8%	13.1%	4.1%	1.3%	81.4%	5.5%	100.0%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다	빈도	1059	380	93	24	9	1439	33	1565
	%	67.7%	24.3%	5.9%	1.5%	0.6%	91.9%	2.1%	100.0%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	빈도	455	489	321	216	89	944	305	1570
	%	29.0%	31.1%	20.4%	13.8%	5.7%	60.1%	19.4%	100.0%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다	빈도	58	76	262	701	471	134	1172	1568
	%	3.7%	4.8%	16.7%	44.7%	30.0%	8.5%	7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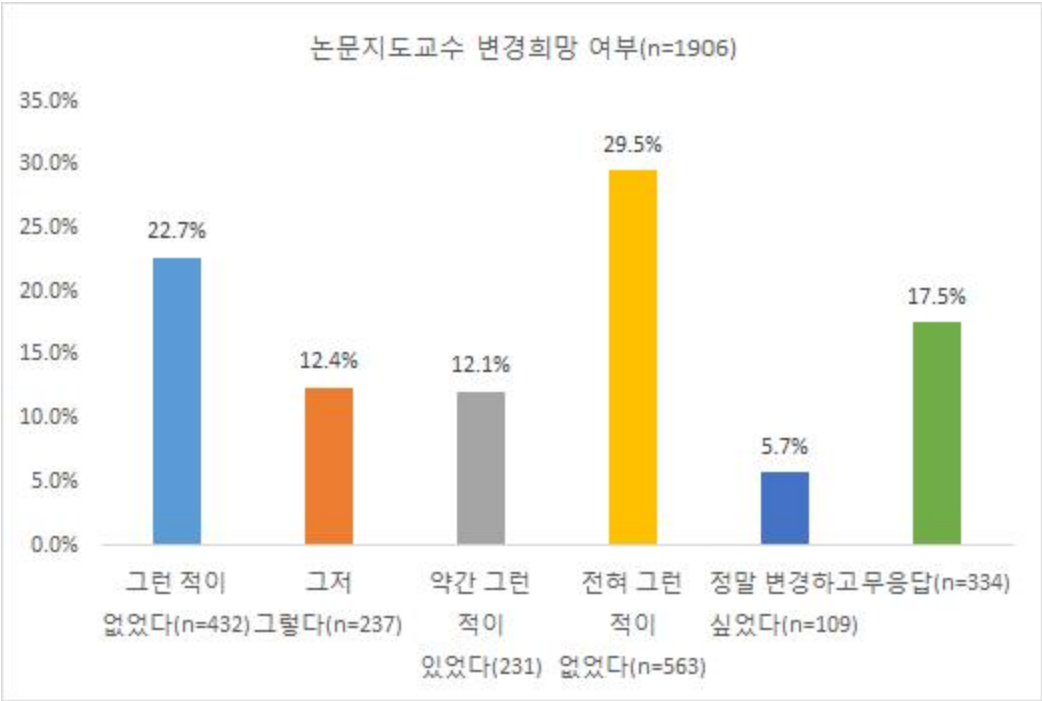
4.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 유무와 변경 이유

대학원생 중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경우를 보면 그런 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2.2%(432명+563명=995명)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바꾸고 싶은 경우도 17.8%(231명+109명=340명)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경희망 유무는 <그림 3.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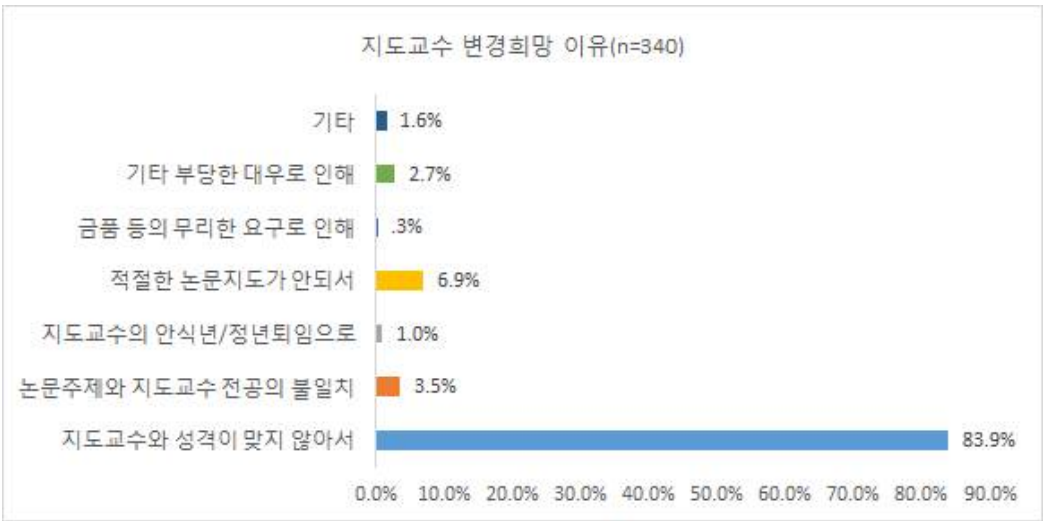
변경을 희망한 340명을 대상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를 중복응답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림 3.14>에 나타나 있다. 지도교수를 변경하고 싶어 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83.9%가 지도교수와의 성격 차이에 의해 변경을 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논문지도가 되지 않아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이유로 변경을 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망한 경우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지도교수와의 개인적 갈등이 지도교수 변경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여부



[그림 3.14]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자의 변경희망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응답자(340명) 중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는 7.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2.7%는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35.1%, 다른 지도교수로 바꿔도 크게 다를 바 없어서 21.1%,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봐 11.6%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4>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기준)

구분	빈도	%	케이스 %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70	35.1%	62.7%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할까 두려워서	56	11.6%	20.7%
지도교수 변경제도가 없어서	53	11.0%	19.6%
이전 지도교수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서	54	11.2%	19.9%
다른 지도교수로 바꿔도 크게 다를바 없어서	102	21.1%	37.6%
기타	49	10.1%	18.1%
합계	484	100.0%	178.6%

4.4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공동연구수행 경험 여부에 관해서는 교수와 연구수행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가 54.1%(1,031명), 없었다는 응답자 45.9%(875명)로 나타났다. 학위과정별 공동연구수행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수행 경험이 박사과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공동연구행에서 일부 차별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문의 성격상 석사과정생을 공동연구수행의 멤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3.15> 학위과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구분		공동연구 수행경험		전체
		있었다	없었다	
석사과정 재학중	빈도	617	667	1284
	%	48.1%	51.9%	100.0%
석사과정 수료	빈도	41	57	98
	%	41.8%	58.2%	100.0%
박사과정 재학중	빈도	264	126	390
	%	67.7%	32.3%	100.0%
박사과정 수료	빈도	109	25	134
	%	81.3%	18.7%	100.0%

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일반대학원의 학생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생들은 풀타임제 대학원생의 61.8%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반해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50% 미만의 낮은 공동연구 수행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풀타임제 대학원생의 36.7%만이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6>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교수와 공동연구 경험					
			있었다		없었다		합계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대학원 유형	일반 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926	61.8%	572	38.2%	1498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31	20.8%	118	79.2%	149	100.0%
		합계	957	58.1%	690	41.9%	1647	100.0%
	특수 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20	47.6%	22	52.4%	42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10	13.2%	66	86.8%	76	100.0%
		합계	30	25.4%	88	74.6%	118	100.0%
	전문 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44	36.7%	76	63.3%	120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0	0.0%	21	100.0%	21	100.0%
		합계	44	31.2%	97	68.8%	141	100.0%

전공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대학원생들이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가정 많았다.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의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풍부한 것은 이들 계열의 대내외 연구프로젝트가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40%대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과 경상계열의 경우에는 30% 정도만이 공동연구 수행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사범계열은 약 18% 정도만이 공동연구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범계열의 동동연구 수행경험이 낮은 것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가 많아 교수 혼자서도 수행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7> 전공계열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구분		공동연구 수행경험		전체
		있었다	없었다	
인문사회계열	빈도	130	280	410
	%	31.7%	68.3%	100.0%
교육/사범계열	빈도	22	102	124
	%	17.7%	82.3%	100.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빈도	29	68	97
	%	29.9%	70.1%	100.0%
공학계열	빈도	490	156	646
	%	75.9%	24.1%	100.0%
자연과학계열	빈도	275	142	417
	%	65.9%	34.1%	100.0%
의학/약학/간호학계열	빈도	67	100	167
	%	40.1%	59.9%	100.0%
예체능계열	빈도	18	27	45
	%	40.0%	60.0%	100.0%

4.5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수행경험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10가지의 연구환경에 대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8>에 나타나 있다. 10가지의 평가항목은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혼합하여 일방향성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정적인 성향으로 질문한 프로젝트 참여 강요의 경우 그렇다라는 의미를 갖는 Top2 퍼센트가 20.3%, 프로젝트로 인한 학업에 대한 피해 37.1%, 연구비 도용 지시 10.7%, 학술논문에 교수 이름 게재 강요 8.9%,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본인 연구의 미수행 피해 19.1% 등으로 나타나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가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 할 때는 반드시 대학원생의 자유 의지에 의하도록 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생들이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FGI에 의해 정성적으로 조사한 결과, 교수 혹은 선배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들의 보복이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부 대학원생들의 평가에 의하면 원하는 연구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들로 약 4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약 42%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만족감이나 불만족감은 결과적으로 공동연구의 책임자인 교수 개인의 인격이나 투명성을 중시하는 윤리적 태도 등이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원 내에서 자유의지에 의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이나 마인드 혁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교수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 강요	빈도	173	237	167	93	54	410	147	724
	%	23.9%	32.7%	23.1%	12.8%	7.5%	56.6%	20.3%	100.0%
원하는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	빈도	47	123	253	235	66	170	301	724
	%	6.5%	17.0%	34.9%	32.5%	9.1%	23.5%	41.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 지장	빈도	77	169	208	167	101	246	268	722
	%	10.7%	23.4%	28.8%	23.1%	14.0%	34.1%	37.1%	100.0%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음	빈도	95	149	178	208	94	244	302	724
	%	13.1%	20.6%	24.6%	28.7%	13.0%	33.7%	41.7%	100.0%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빈도	73	126	223	212	86	199	298	720
	%	10.1%	17.5%	31.0%	29.4%	11.9%	27.6%	41.4%	100.0%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음	빈도	450	220	39	12	0	670	12	721
	%	62.4%	30.5%	5.4%	1.7%	0.0%	92.9%	1.7%	100.0%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빈도	331	227	88	46	31	558	77	723
	%	45.8%	31.4%	12.2%	6.4%	4.3%	77.2%	10.7%	100.0%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함	빈도	420	228	57	12	6	648	18	723
	%	58.1%	31.5%	7.9%	1.7%	0.8%	89.6%	2.5%	100.0%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음	빈도	388	190	79	34	30	578	64	721
	%	53.8%	26.4%	11.0%	4.7%	4.2%	80.2%	8.9%	100.0%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빈도	246	207	133	81	57	453	138	724
	%	34.0%	28.6%	18.4%	11.2%	7.9%	62.6%	19.1%	100.0%

4.6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 수행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5.6%(856명)가 수행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3.7%(1,023명)는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0.7%(14명)로 나타났다. 학위과정별로 보면 석사과정생이 선후배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평균 33.3%)보다 박사과정생의 수행경험이 더 높게(평균 61.0%)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성과의 질로 가늠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학위과정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선후배나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과정	석사과정 재학중	빈도	527	745	12	1284
		행 N %	41.0%	58.0%	0.9%	100.0%
	석사과정 수료	빈도	25	72	1	98
		행 N %	25.5%	73.5%	1.0%	100.0%
	박사과정 재학중	빈도	234	155	1	390
		행 N %	60.0%	39.7%	0.3%	100.0%
	박사과정 수료	빈도	83	51	0	134
		행 N %	61.9%	38.1%	0.0%	100.0%
	합계	빈도	869	1023	14	1906
		행 N %	45.6%	53.7%	0.7%	100.0%

공동연구 수행경험 여부를 대학원 유형 및 재학유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3.20>과 같다. 대학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이 약 50% 가까이 공동수행경험이 있는 반면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절반 이하의 수행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원의 경우 풀타임제 대학원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풀타임제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수행경험율이 52.4%인데 비해 특수대학원은 40.5%, 전문대학원은 28.3%로 일반대학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20> 대학원 및 재학유형에 따른 선후배 등과 공동연구 수행경험

			선후배나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대학원 유형	일반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785	52.4%	705	47.1%	8	0.5%	1498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24	16.1%	123	82.6%	2	1.3%	149	100.0%
		합계	809	49.1%	828	50.3%	10	0.6%	1647	100.0%
	특수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17	40.5%	25	59.5%	0	0.0%	42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9	11.8%	67	88.2%	0	0.0%	76	100.0%
		합계	26	22.0%	92	78.0%	0	0.0%	118	100.0%
	전문대학원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34	28.3%	83	69.2%	3	2.5%	120	100.0%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0	0.0%	20	95.2%	1	4.8%	21	100.0%
		합계	34	24.1%	103	73.0%	4	2.8%	141	100.0%

대학원의 전공계열에 따른 공동연구 수행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가장 많은 계열은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때와 마찬가지로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학계열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수행경험을 갖는 계열은 교육/사범계열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과 경상계열은 2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21> 전공계열에 따른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경험

		선후배나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계열	인문사회계열	79	19.3%	324	79.0%	7	1.7%	410	100.0%
	교육/사범계열	17	13.7%	105	84.7%	2	1.6%	124	100.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8	18.6%	77	79.4%	2	2.1%	97	100.0%
	공학계열	443	68.6%	203	31.4%	0	0.0%	646	100.0%
	자연과학계열	248	59.5%	169	40.5%	0	0.0%	417	100.0%
	의학/약학/간호학계열	54	32.3%	111	66.5%	2	1.2%	167	100.0%
	예체능계열	10	22.2%	34	75.6%	1	2.2%	45	100.0%
	합계	869	45.6%	1023	53.7%	14	0.7%	1906	100.0%

4.7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선후배나 동료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환경에 대하여 5점 척도에 의해 연구환경을 평가한 결과는 <표 3.22>와 같다. 공동연구 수행환경 중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Top2 퍼센트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7개의 평가문항 중 4개 문항(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동저자로 올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 참여시킨 경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선후배 등의 개인적 인격이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강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혁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장전 등을 마련하고 부속조항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3.22>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 환경에 대한 평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함	빈도	374	277	111	65	36	651	101	863
	%	43.3%	32.1%	12.9%	7.5%	4.2%	75.4%	11.7%	100.0%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함	빈도	354	261	144	66	39	615	105	864
	%	41.0%	30.2%	16.7%	7.6%	4.5%	71.2%	12.2%	100.0%
집단 따돌림에 의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빈도	520	237	65	29	10	757	39	861
	%	60.4%	27.5%	7.5%	3.4%	1.2%	87.9%	4.5%	100.0%
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빈도	519	239	58	30	12	758	42	858
	%	60.5%	27.9%	6.8%	3.5%	1.4%	88.3%	4.9%	100.0%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함	빈도	501	245	72	32	13	746	45	863
	%	58.1%	28.4%	8.3%	3.7%	1.5%	86.4%	5.2%	100.0%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학술지 게재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음	%	431	224	102	65	41	655	106	863
	빈도	49.9%	26.0%	11.8%	7.5%	4.8%	75.9%	12.3%	100.0%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여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	392	251	120	61	38	643	99	862
	빈도	45.5%	29.1%	13.9%	7.1%	4.4%	74.6%	11.5%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5.1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대학원생들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존중 받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3개 문항을 중심으로 개인적 존중 환경을 조사하였다. 13개의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인격적 존중감이나 성적(性的)인 측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 13개 문항은 개인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는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곧 개인적으로 존중 받지 못한 비율이다. 따라서 각각의 평가문항에 대하여 Top2 퍼센트의 비율이 존중 받지 못한 비율이다.

13개 문항 중 특히 비율이 높은 항목은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직도 대학원 내에서 교수가 갑(甲)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개인적인 인격이나 가치관의 미성숙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적(性的)인 차별,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사생활 침해 등도 비록 그 비율은 낮으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은 단 1%라도 그 심각성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대학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각종 매체 등에 보도되고 있는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일련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 시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했을 경우 감점제도를 두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3.23>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558	256	53	30	9	1814	39	1906
	행 N %	81.7%	13.4%	2.8%	1.6%	0.5%	95.2%	2.0%	100.0%
성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66	299	125	89	27	1665	116	1906
	행 N %	71.7%	15.7%	6.6%	4.7%	1.4%	87.4%	6.1%	100.0%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82	287	66	52	19	1769	71	1906
	행 N %	77.8%	15.1%	3.5%	2.7%	1.0%	92.8%	3.7%	100.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음	빈도	1470	298	86	31	21	1768	52	1906
	행 N %	77.1%	15.6%	4.5%	1.6%	1.1%	92.8%	2.7%	100.0%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252	306	158	116	74	1558	190	1906
	행 N %	65.7%	16.1%	8.3%	6.1%	3.9%	81.7%	10.0%	100.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53	324	138	53	38	1677	91	1906
	행 N %	71.0%	17.0%	7.2%	2.8%	2.0%	88.0%	4.8%	100.0%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50	335	126	66	29	1685	95	1906
	행 N %	70.8%	17.6%	6.6%	3.5%	1.5%	88.4%	5.0%	100.0%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13	323	112	41	17	1736	58	1906
	행 N %	74.1%	16.9%	5.9%	2.2%	0.9%	91.1%	3.0%	100.0%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97	249	37	15	8	1846	23	1906
	행 N %	83.8%	13.1%	1.9%	0.8%	0.4%	96.9%	1.2%	100.0%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3	294	75	26	18	1787	44	1906
	행 N %	78.3%	15.4%	3.9%	1.4%	0.9%	93.8%	2.3%	100.0%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501	294	72	27	12	1795	39	1906
	행 N %	78.8%	15.4%	3.8%	1.4%	0.6%	94.2%	2.0%	100.0%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342	314	132	78	40	1656	118	1906
	행 N %	70.4%	16.5%	6.9%	4.1%	2.1%	86.9%	6.2%	100.0%
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46	280	51	19	10	1826	29	1906
	행 N %	81.1%	14.7%	2.7%	1.0%	0.5%	95.8%	1.5%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2 선후배/동료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선후배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체 1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3.24>에 나타나 있다. 선후배나 동료들간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은 56.9%로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등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Top2로 볼 때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2.3%), 성희롱이나 음담패설(4.2%),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받은 부당한 대우(4.0%) 등은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평가한 교수들에 대한 평가결과(각각 2.0%, 3.7%, 3.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수가 아닌 또 다른 갑(甲)에 의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가른 문항에 대해서도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학원생 모두에게 입학 한 첫 학기에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 마인드 혁신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3.24> 선후배/동료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함	빈도	93	168	560	793	292	261	1085	1906
	행 N %	4.9%	8.8%	29.4%	41.6%	15.3%	13.7%	56.9%	100.0%
선후배, 동료들의 압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였음	빈도	1091	580	156	60	19	1671	79	1906
	행 N %	57.2%	30.4%	8.2%	3.1%	1.0%	87.7%	4.1%	100.0%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음	빈도	1247	444	152	47	16	1691	63	1906
	행 N %	65.4%	23.3%	8.0%	2.5%	0.8%	88.7%	3.3%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선후배, 동료들이 지시한 업무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음	빈도	999	499	240	127	41	1498	168	1906
	행 N %	52.4%	26.2%	12.6%	6.7%	2.2%	78.6%	8.8%	100.0%
선후배, 동료로부터 요청받은 일은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음	빈도	955	482	256	154	59	1437	213	1906
	행 N %	50.1%	25.3%	13.4%	8.1%	3.1%	75.4%	11.2%	100.0%
선후배 또는 동료들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447	349	66	36	8	1796	44	1906
	행 N %	75.9%	18.3%	3.5%	1.9%	0.4%	94.2%	2.3%	100.0%
성적으로 차별, 희롱 또는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02	351	72	58	23	1753	81	1906
	행 N %	73.6%	18.4%	3.8%	3.0%	1.2%	92.0%	4.2%	100.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받았음	빈도	1459	324	88	23	12	1783	35	1906
	행 N %	76.5%	17.0%	4.6%	1.2%	0.6%	93.5%	1.8%	100.0%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33	337	105	90	41	1670	131	1906
	행 N %	69.9%	17.7%	5.5%	4.7%	2.2%	87.6%	6.9%	100.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49	322	145	59	31	1671	90	1906
	행 N %	70.8%	16.9%	7.6%	3.1%	1.6%	87.7%	4.7%	100.0%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02	322	116	50	16	1724	66	1906
	행 N %	73.6%	16.9%	6.1%	2.6%	0.8%	90.5%	3.5%	100.0%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90	332	108	49	27	1722	76	1906
	행 N %	72.9%	17.4%	5.7%	2.6%	1.4%	90.3%	4.0%	100.0%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43	290	53	11	9	1833	20	1906
	행 N %	81.0%	15.2%	2.8%	0.6%	0.5%	96.2%	1.0%	100.0%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4	310	72	20	10	1804	30	1906
	행 N %	78.4%	16.3%	3.8%	1.0%	0.5%	94.6%	1.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결혼 및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411	317	93	50	35	1728	85	1906
	행 N %	74.0%	16.6%	4.9%	2.6%	1.8%	90.7%	4.5%	100.0%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499	301	73	22	11	1800	33	1906
	행 N %	78.6%	15.8%	3.8%	1.2%	0.6%	94.4%	1.7%	100.0%
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34	289	58	16	9	1823	25	1906
	행 N %	80.5%	15.2%	3.0%	0.8%	0.5%	95.6%	1.3%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3절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측정문항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파생권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헌법에 기초하여 파생된 대학원생 인권은 ①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학습권 ③ 복리후생권 ④ 안전권 ⑤ 연구결정권 ⑥ 사생활보호권 ⑦ 연구성과 명의권 ⑧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⑩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등 총 10가지의 권리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분류항목은 제1장 제5절의 <표 1.6>과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본 절은 이렇게 분류된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관련된 인권관련 문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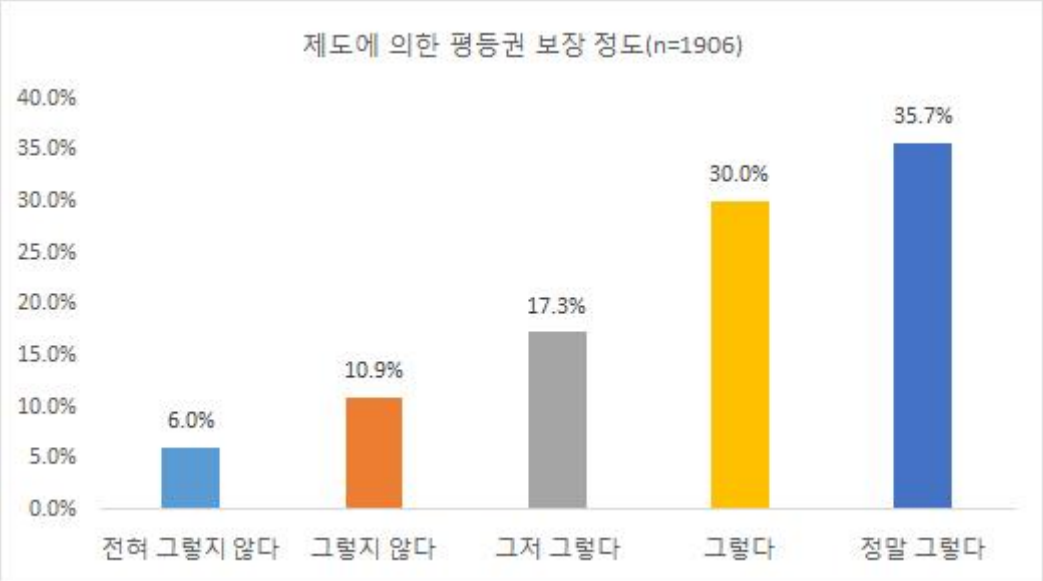
1. 평등권

대학원생의 인권과관련하여 평등권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0개 항목 중 제도와 관련된 항목이 1개, 교수와 관련된 항목이 4개, 선후배와 관련된 항목이 5개로 구성되었다. 각각에 대하여 평등권의 보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대학원생들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의 공평성에 대한 분석결과, 65.7% 정도의 응답자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믿는 응답자도 17% 정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3.15]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인식

장학금 제도 등의 운영에 의한 평등권의 보장 여부에 대해 대학원의 설립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국공립이나 사립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사립대 대학원생들이 국공립대보다 공정성에 약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3.25> 설립성격에 따른 평등권 보장 수준

		설립성격					
		국/공립		사립		합계	
		빈도	열 N %	빈도	열 N %	빈도	열 N %
(제도)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56	5.3%	59	6.9%	115	6.0%
	그렇지 않다	117	11.2%	91	10.6%	208	10.9%
	그저 그렇다	203	19.4%	127	14.8%	330	17.3%
	그렇다	340	32.4%	232	27.0%	572	30.0%
	정말 그렇다	332	31.7%	349	40.7%	681	35.7%
	합계	1048	100.0%	858	100.0%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대학원생들의 평등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권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Low2 퍼센트 비율이 평등권이 보장되는 비율이다. 조사대상 대학원들은 교수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출신학교로 인해 차별 받지 않으며(88.4%), 나이/외모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 것(91.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상/신념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으며(93.8%), 출신지역/종교/장애 등으로 인해서도 차별 받지 않는 것(94.2%)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권이 침해당한 경우는 낮게 나타났으나 교수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마인드 혁신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50	335	126	66	29	1685	95	1906
	행 N %	70.8%	17.6%	6.6%	3.5%	1.5%	88.4%	5.0%	100.0%
(교수)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13	323	112	41	17	1736	58	1906
	행 N %	74.1%	16.9%	5.9%	2.2%	0.9%	91.1%	3.0%	100.0%
(교수)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3	294	75	26	18	1787	44	1906
	행 N %	78.3%	15.4%	3.9%	1.4%	0.9%	93.8%	2.3%	100.0%
(교수)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501	294	72	27	12	1795	39	1906
	행 N %	78.8%	15.4%	3.8%	1.4%	0.6%	94.2%	2.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선후배나 동료들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표 3.4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Top2퍼센트)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선후배나 동료들 간에도 평등권이 보장(Low2 퍼센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미한 정도로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7>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350	335	126	66	29	1685	95	1906
	행 N %	70.8%	17.6%	6.6%	3.5%	1.5%	88.4%	5.0%	100.0%
(교수)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13	323	112	41	17	1736	58	1906
	행 N %	74.1%	16.9%	5.9%	2.2%	0.9%	91.1%	3.0%	100.0%
(교수)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1493	294	75	26	18	1787	44	1906
	행 N %	78.3%	15.4%	3.9%	1.4%	0.9%	93.8%	2.3%	100.0%
(교수)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음	빈도	1501	294	72	27	12	1795	39	1906
	행 N %	78.8%	15.4%	3.8%	1.4%	0.6%	94.2%	2.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학습권의 보장

학습권의 경우에는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의 항목이 1개,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항목이 9개 항목, 그리고 선후배의 의해 보장되는 학습권이 6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각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습권의 보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이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Top2 퍼센트)가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FGI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이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교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해도 수입규모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원교육이 단지 사치재로서의 교육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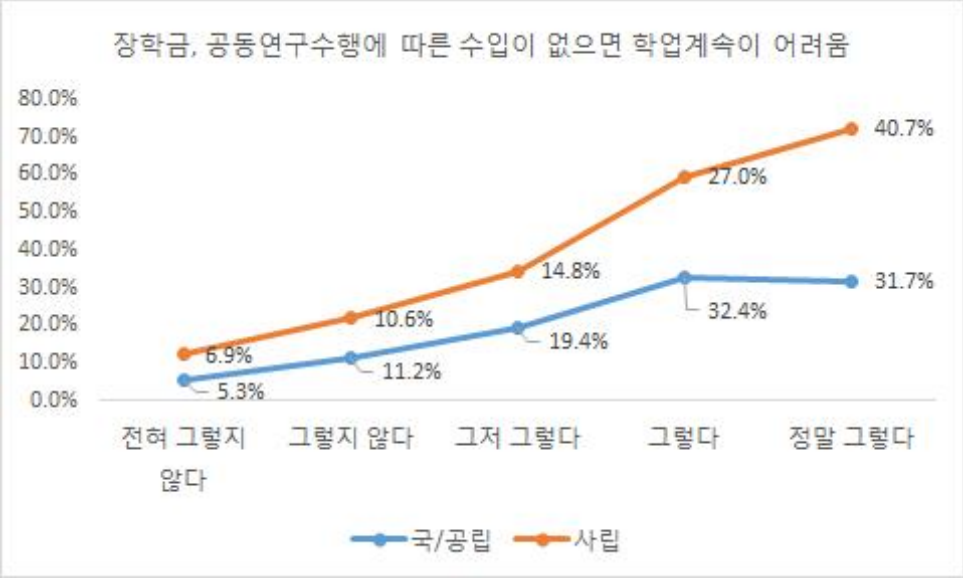
<표 3.28>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제도)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려움	빈도	115	208	330	572	681	323	1253	1906
	행 N %	6.0%	10.9%	17.3%	30.0%	35.7%	16.9%	65.7%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설립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6>에 나타나 있다. 학습권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는 국립/공립대학의 대학원 보다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의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이 40.7%로 국/공립의 31.7% 보다 높아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 보다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Top2 퍼센트로 놓고 보면 사립이나 국/공립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립의 Top2 퍼센트는 64.1%이고, 국/공립의 Top2 퍼센트는 67.7%로 오히려 국/공립의 학습권 보장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6]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학습권 보장 수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수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3.29>와 같다. 교수에 의한 학습권의 보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나 프로젝트 수행 등을 노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노동이나 근로행위로 보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으로 볼 경우 학교나 교수가 대학원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교수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조교나 프로젝트 수행 등은 학습 혹은 학문연구와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학문의 연장선상인 학습권으로 포함시켜야 옳다는 견해를 따라 조사하였다.[27)]

교수에 의해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34.5%(Top2 퍼센트)로 높게 나타나 공동연구가 결과적으로 대학원생 학습권을 장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조교 등으로 근무할 때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Top2퍼센트 30.1%)였으며, 프로젝트 연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Low2 퍼센트 33.0%) 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25.8%(Low2 퍼센트)로 나타나 교수에 의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Top2 퍼센트 18.3%)으로 인해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특정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제한(Top2 퍼센트 16.1%)해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 내에서 교수들에 의해 학습권 피해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7) 본 견해는 본 조사와 관련된 헌법 및 인권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29>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음	빈도	386	710	461	258	91	1096	349	1906
	행 N %	20.3%	37.3%	24.2%	13.5%	4.8%	57.5%	18.3%	100.0%
(교수)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음	빈도	669	646	285	217	89	1315	306	1906
	행 N %	35.1%	33.9%	15.0%	11.4%	4.7%	69.0%	16.1%	100.0%
(교수)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음	빈도	498	624	299	108	49	1122	157	1578
	행 N %	31.6%	39.5%	18.9%	6.8%	3.1%	71.1%	9.9%	100.0%
(교수)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음	빈도	116	256	297	230	123	372	353	1022
	행 N %	11.4%	25.0%	29.1%	22.5%	12.0%	36.4%	34.5%	100.0%
(교수)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빈도	377	304	172	103	66	681	169	1022
	행 N %	36.9%	29.7%	16.8%	10.1%	6.5%	66.6%	16.5%	100.0%
(교수)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음	빈도	211	450	672	365	208	661	573	1906
	행 N %	11.1%	23.6%	35.3%	19.2%	10.9%	34.7%	30.1%	100.0%
(교수)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음	빈도	123	215	259	296	131	338	427	1024
	행 N %	12.0%	21.0%	25.3%	28.9%	12.8%	33.0%	41.7%	100.0%
(교수)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빈도	91	172	321	316	119	263	435	1019
	행 N %	8.9%	16.9%	31.5%	31.0%	11.7%	25.8%	42.7%	100.0%
(교수)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은 적이 있음	빈도	633	319	51	14	3	952	17	1020
	행 N %	62.1%	31.3%	5.0%	1.4%	0.3%	93.3%	1.7%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학습권과 관련하여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0>과 같다. 분석결과, 선후배 등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Top2 퍼센트 12.2%)가 가장 많았으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시켜서 본인의 연구를 못하는 경우(11.5%), 요청받은 일을 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11.2%)가 많아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후배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이러한 학습권 침해 등은 인권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문제 등은 학내 혹은 원우들간 불신감을 심어주어 더욱 심각한 행위(폭력 등)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권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30>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선후배)집단 따돌림에 의해 꼭 필요하거나 원했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빈도	520	237	65	29	10	757	39	861
	행 N %	60.4%	27.5%	7.5%	3.4%	1.2%	87.9%	4.5%	100.0%
(선후배)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해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음	빈도	392	251	120	61	38	643	99	862
	행 N %	45.5%	29.1%	13.9%	7.1%	4.4%	74.6%	11.5%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선후배)압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였음	빈도	1091	580	156	60	19	1671	79	1906
	행 N %	57.2%	30.4%	8.2%	3.1%	1.0%	87.7%	4.1%	100.0%
(선후배)지시한 업무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음	빈도	999	499	240	127	41	1498	168	1906
	행 N %	52.4%	26.2%	12.6%	6.7%	2.2%	78.6%	8.8%	100.0%
(선후배)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	빈도	354	261	144	66	39	615	105	864
	행 N %	41.0%	30.2%	16.7%	7.6%	4.5%	71.2%	12.2%	100.0%
(선후배)동료로부터 요청받은 일은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음	빈도	955	482	256	154	59	1437	213	1906
	행 N %	50.1%	25.3%	13.4%	8.1%	3.1%	75.4%	11.2%	100.0%

3. 복리후생권의 보장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측정문항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측면의 2개 문항과 제도적 측면의 1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조사·분석결과는 <표 3.31>에 나타나 있다.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맘(mom)을 위한 모유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리후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83.3%(Low2 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9.0%(Low2 퍼센트)로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 복리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출산 및 보육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원정책이 없는 경우가 68.6%(Low2 퍼센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대학원생에 대한 복리후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제도 모두 대학원생들에 대한 복리후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1> 복리후생권에 대한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환경)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음	빈도	387	547	556	357	59	934	416	1906
	행 N %	20.3%	28.7%	29.2%	18.7%	3.1%	49.0%	21.8%	100.0%
(환경)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빈도	1071	516	273	40	6	1587	46	1906
	행 N %	56.2%	27.1%	14.3%	2.1%	0.3%	83.3%	2.4%	100.0%
(제도)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음	빈도	752	555	523	67	9	1307	76	1906
	행 N %	39.5%	29.1%	27.4%	3.5%	0.5%	68.6%	4.0%	100.0%

4. 안전권의 보장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에서 연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혹은 대학원에서 학습할 때 안전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3.32>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21.2%(Low2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 위험에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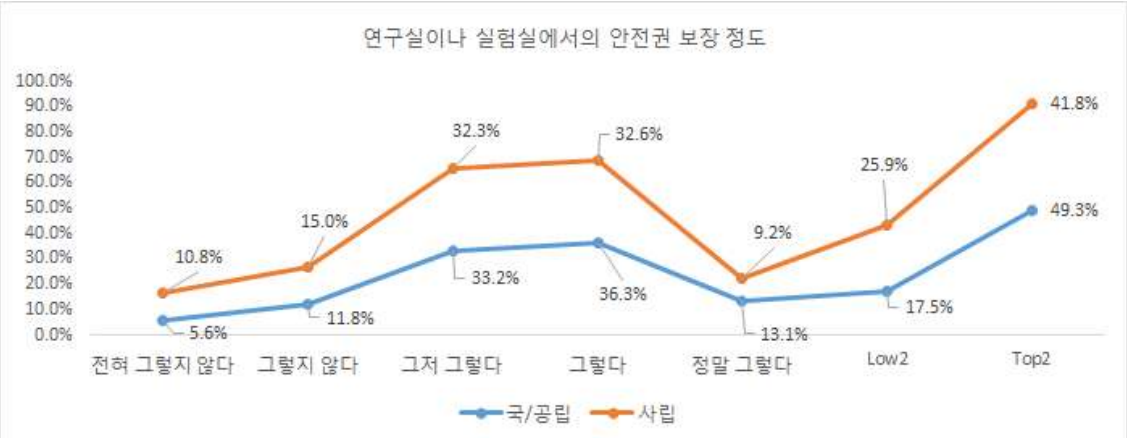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6.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 안전권 보장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환경)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	빈도	152	253	625	660	216	405	876	1906
	행 N %	8.0%	13.3%	32.8%	34.6%	11.3%	21.2%	46.0%	100.0%

안전권에 대한 보장 수준을 대학원의 설립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이 국/공립 보다 안전권이 더 취약(Low2 퍼센트 25.9%)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도 17.5%로 나타나 모두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안전권 보장 수준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연구결정권 보장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연구를 결정하는 연구결정권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결정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33>과 같다. 연구결정권을 보장하는 2개 문항 모두에서 연구결정권이 침해(Top2 퍼센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도 역시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결정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학원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교수들에 의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노력은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 등 철학에 의존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3.33>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음	빈도	630	578	327	243	128	1208	371	1906
	행 N %	33.1%	30.3%	17.2%	12.7%	6.7%	63.4%	19.5%	100.0%
(교수)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음	빈도	258	345	234	124	64	603	188	1025
	행 N %	25.2%	33.7%	22.8%	12.1%	6.2%	58.8%	18.3%	100.0%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연구결정권의 보장 수준을 대학원의 설립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원보다는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연구결정권이 더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op2 퍼센트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사립대학교 대학원의 비율이 국/공립 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연구결정권의 침해가 국/공립대학원보다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4> 대학원 설립성격에 따른 연구결정권 보장 수준 비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음	국/공립	빈도	375	322	196	100	55	697	155	1048
		행 N %	35.8%	30.7%	18.7%	9.5%	5.2%	66.5%	14.8%	100.0%
	사립	빈도	255	256	131	143	73	511	216	858
		행 N %	29.7%	29.8%	15.3%	16.7%	8.5%	59.6%	25.2%	100.0%
(교수)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음	국/공립	빈도	185	220	134	59	24	405	83	622
		행 N %	29.7%	35.4%	21.5%	9.5%	3.9%	65.1%	13.3%	100.0%
	사립	빈도	73	125	100	65	40	198	105	403
		행 N %	18.1%	31.0%	24.8%	16.1%	9.9%	49.1%	26.1%	100.0%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대학원생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보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와 선후배 등에 의한 사생활 보호에 관해 각각 1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분석결과는 <표 3.34>와 같다. 교수나 선후배 등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FGI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 외에 갑자기 연락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급하게 일을 시키는 등의 사생활 침해를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시간에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처리를 시키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작더라도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나 선배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교수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이 더더욱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4> 사생활보호권 보장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342	314	132	78	40	1656	118	1906
	행 N %	70.4%	16.5%	6.9%	4.1%	2.1%	86.9%	6.2%	100.0%
(선후배)결혼 및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음	빈도	1411	317	93	50	35	1728	85	1906
	행 N %	74.0%	16.6%	4.9%	2.6%	1.8%	90.7%	4.5%	100.0%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대학원생들이 단독 혹은 연구논문이나 성과를 냈을 때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名義權)이 보장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와 선후배 등으로부터 보장 받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 3개 문항씩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35>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수와 선후배 등에 의해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을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성향이 아직도 대학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FGI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의 도용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 도용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인드 혁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5>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음	빈도	706	643	339	161	57	1349	218	1906
	행 N %	37.0%	33.7%	17.8%	8.4%	3.0%	70.8%	11.4%	100.0%
(교수)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한 경우가 있음	빈도	602	327	72	13	9	929	22	1023
	행 N %	58.8%	32.0%	7.0%	1.3%	0.9%	90.8%	2.2%	100.0%
(교수)학술지 게재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 받음	빈도	562	280	103	41	35	842	76	1021
	행 N %	55.0%	27.4%	10.1%	4.0%	3.4%	82.5%	7.4%	100.0%
(선후배)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함	빈도	374	277	111	65	36	651	101	863
	행 N %	43.3%	32.1%	12.9%	7.5%	4.2%	75.4%	11.7%	100.0%
(선후배)동료에 의해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한 경우가 있음	빈도	501	245	72	32	13	746	45	863
	행 N %	58.1%	28.4%	8.3%	3.7%	1.5%	86.4%	5.2%	100.0%
(선후배)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논문에 올리도록 강요 받음	빈도	431	224	102	65	41	655	106	863
	행 N %	49.9%	26.0%	11.8%	7.5%	4.8%	75.9%	12.3%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권)에 대하여 보장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8개 문항, 선후배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7개 문항으로 이들 평가문항에는 폭언이나 욕설,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적(性的) 차별,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등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분석결과는 <표 3.36>에 나타나 있다.

대학원생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침해사례는 대체적으로 교수에 의한 경우가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관계에서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엄권과 관련된 것으로 가해자가 누구든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대학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상이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6>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558	256	53	30	9	1814	39	1906
	행 N %	81.7%	13.4%	2.8%	1.6%	0.5%	95.2%	2.0%	100.0%
(교수)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음	빈도	1470	298	86	31	21	1768	52	1906
	행 N %	77.1%	15.6%	4.5%	1.6%	1.1%	92.8%	2.7%	100.0%
(교수)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252	306	158	116	74	1558	190	1906
	행 N %	65.7%	16.1%	8.3%	6.1%	3.9%	81.7%	1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53	324	138	53	38	1677	91	1906
	행 N %	71.0%	17.0%	7.2%	2.8%	2.0%	88.0%	4.8%	100.0%
(교수)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97	249	37	15	8	1846	23	1906
	행 N %	83.8%	13.1%	1.9%	0.8%	0.4%	96.9%	1.2%	100.0%
(교수)성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66	299	125	89	27	1665	116	1906
	행 N %	71.7%	15.7%	6.6%	4.7%	1.4%	87.4%	6.1%	100.0%
(교수)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82	287	66	52	19	1769	71	1906
	행 N %	77.8%	15.1%	3.5%	2.7%	1.0%	92.8%	3.7%	100.0%
(교수)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46	280	51	19	10	1826	29	1906
	행 N %	81.1%	14.7%	2.7%	1.0%	0.5%	95.8%	1.5%	100.0%
(선후배)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음	빈도	1447	349	66	36	8	1796	44	1906
	행 N %	75.9%	18.3%	3.5%	1.9%	0.4%	94.2%	2.3%	100.0%
(선후배)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받았음	빈도	1459	324	88	23	12	1783	35	1906
	행 N %	76.5%	17.0%	4.6%	1.2%	0.6%	93.5%	1.8%	100.0%
(선후배)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333	337	105	90	41	1670	131	1906
	행 N %	69.9%	17.7%	5.5%	4.7%	2.2%	87.6%	6.9%	100.0%
(선후배)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음	빈도	1349	322	145	59	31	1671	90	1906
	행 N %	70.8%	16.9%	7.6%	3.1%	1.6%	87.7%	4.7%	100.0%
(선후배)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음	빈도	1543	290	53	11	9	1833	20	1906
	행 N %	81.0%	15.2%	2.8%	0.6%	0.5%	96.2%	1.0%	100.0%
(선후배)성적으로 차별, 희롱 또는 음담패설을 들었음	빈도	1402	351	72	58	23	1753	81	1906
	행 N %	73.6%	18.4%	3.8%	3.0%	1.2%	92.0%	4.2%	100.0%
(선후배)성(性)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음	빈도	1534	289	58	16	9	1823	25	1906
	행 N %	80.5%	15.2%	3.0%	0.8%	0.5%	95.6%	1.3%	100.0%

FGI 분석결과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7>과 같다. 특히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라든가 '빚을 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서 학교를 다니라.', '배신자', '현실 부적응자'라는 표현 등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사제지간에 오고갈 수 있는 대화나 언어가 아님에도 이러한 언어 폭력으로 인해 많은 대학원생들이 인격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시급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7> FGI에서 제시된 주요 인격권 침해 사례

1.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
2. 입학 전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고 입학 후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니 차라리 빚을 내서 대학원을 다녀라."
3. 문제제기를 막으면서 "너 나를 그런 식으로 유명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4. (학생)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은 솔직히 한국을 떠나지 않고는 학문을 계속할 수 없을 거예요."
5. (학생) "정말 대학원생은 로마 시대 노예 같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집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정말 불쌍한 노예랑 똑같아요. 주인의 인격에 따라 삶이 뒤바뀐다는 점에서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대학원은 학문도야를 위해 이루어진 공간이다. 학문의 성과는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물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대학원생들에게 있다.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인권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문항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표 3.38>에 나타나 있다. 대체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는 있으나 교수 개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심사를 못 받거나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특히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연구 성과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교수 변경의 용이성은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8>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음	빈도	68	165	397	643	308	233	951	1581
	행 N %	4.3%	10.4%	25.1%	40.7%	19.5%	14.7%	60.2%	100.0%
(교수)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음	빈도	686	596	207	65	21	1282	86	1575
	행 N %	43.6%	37.8%	13.1%	4.1%	1.3%	81.4%	5.5%	100.0%
(교수)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음	빈도	1059	380	93	24	9	1439	33	1565
	행 N %	67.7%	24.3%	5.9%	1.5%	0.6%	91.9%	2.1%	100.0%
(교수)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음	빈도	455	489	321	216	89	944	305	1570
	행 N %	29.0%	31.1%	20.4%	13.8%	5.7%	60.1%	19.4%	100.0%
(교수)지도교수 변경의 용이하였음	빈도	6	5	5	4	7	11	11	27
	행 N %	22.2%	18.5%	18.5%	14.8%	25.9%	40.7%	40.7%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대학원에서의 지도교수 및 교수와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향은 교수에 의해 부당한 지시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부당한 일에 대한 지시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39>에 나타나 있다.

부당한 일을 지시 받은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나 교수에 의한 부당지시가 9.7%(Top2 퍼센트)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도 약 5%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9>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수준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Low2	Top2	합계
(교수)학점, 장학금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 등 압력 받음	빈도	1187	468	163	60	28	1655	88	1906
	행 N %	62.3%	24.6%	8.6%	3.1%	1.5%	86.8%	4.6%	100.0%
(교수)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음	빈도	493	314	117	63	36	807	99	1023
	행 N %	48.2%	30.7%	11.4%	6.2%	3.5%	78.9%	9.7%	100.0%
(선후배)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음	빈도	519	239	58	30	12	758	42	858
	행 N %	60.5%	27.9%	6.8%	3.5%	1.4%	88.3%	4.9%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거나 대응행동에 대하여 자유응답에 의해 정성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하거나 특별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학 내에 공식적인 기구 - 예를 들어, 인권센터 등 -를 만들도록 의무화 해 인권의식이 대학(대학원)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적 환경

1.1 재학유형 및 신분인식

대학원생들의 재학유형을 보면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이 전체의 90% 가까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립대학교 대학원원보다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의 풀타임제 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신분을 학생근로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생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대학원생의 근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거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학생이면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어 기존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1.2 대학원 진학목적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진학목적을 크게 3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① 전문직 취업 ②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 ③ 대학사회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입직하는 것을 진학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진학목적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박사과정생들은 대학사회에서의 입직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연구 과제 수행의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연구과제 수행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사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적 특성 외에 환경적 요소가 강한 속성으로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경제적 환경

2.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대학원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은 석사과정은 200-300만원 미만, 박사과정은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학기에 필요한 생활비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을 조달방법을 보면 ① 장학금 ② 조교(TA, RA 또는 행정조교) 수입 ③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④ 프로젝트 참여 ⑤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교수입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는 365명의 등록금 조달비중은 평균 82.88% 수준으로 등록금 전체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조달방법을 보면 ① 가족, 지인의 지원 ② 프로젝트 참여 ③ 조교로서의 수입 ④ 장학금 ⑤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교수입과 프로젝트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257명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조교수입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어느 정도 조달하는지를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결과, 필요한 생활비의 70.25%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결과에서도 조교수입이나 프로젝트 참여연구비로 등록금이나 필요로 하는 생활비 전체를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3.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연구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의 공평한 운영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교육조교나 연구조교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 역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운영과 더 많은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3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FGI 조사결과에서는 대학원 생활을 '노예 같은 생활'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 운영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대학원의 장학금 제도 및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는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84.9%) 나타나고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2 물리적 환경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 대학원생 맘(mom)을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 등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의 확충은 학생부모들의 학습권과 자녀를 안전한 장소에서 돌봄 및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FGI 조사결과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생리중이거나 임신, 출산을 학생들이 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이나 실험실의 편리성이나 안전성 등 안전권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학습 및 코스워크 학습환경에서는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와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하는 학습권 침해사례가 많았다. 또한 논문 작성이나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하고 명의를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수로부터 부당한 지시(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 학점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은 경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 교수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등 인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지 못한 경우나 교수의 바쁜 일상으로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든 경우 등 공정한 논문지도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GI에서도 지도교수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논문지도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적극 요구된다. 특히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간에 논문지도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 이와 같이 논문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마인드혁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대학원생 중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경우가 340명(17.8%) 정도로 나타났다.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① 지도교수와의 성격 차이 ② 적절한 논문지도가 되지 않아서 ③ 논문주제와 지도교수 전공의 불일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한 대학원생 중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① 향후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② 다른 지도교수로 바꿔도 크게 다를 바 없어서 ③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까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대학원에서 비인권적인 따돌림이나 보복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대학원생 중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별로 보면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경우가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풍부했으며,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보다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타임제 대학원생이 일반대학원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공동연구가 활발하였으며, 교육/사범계열의 대학원생들이 경우에는 공동연구 수행경험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와 프로젝트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비 도용을 지시하거나 학술논문에 교수 이름 게재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혁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학문적으로 을(乙)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등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원 내에서 자유의지에 의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이나 마인드 혁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4.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학위과정별로는 박사과정이 석사과정보다 2배나 많은 수행경험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학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행경험이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공학과 자연과학계열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후배나 동료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시 문제가 되는 것들로는 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도 저자로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 ②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공동저자로 올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 ④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 참여시키는 경우 등 비인권적·비윤리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혁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장전 등을 마련하고 부속조항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5.1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성적(性的)인 차별,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그 비율은 낮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각종 매체 등에 보도되고 있는 성추행, 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희롱, 폭력 등 일련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평가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감점제도를 두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5.2 선후배 등과의 관계

선후배 등과의 관계에서도 ①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 ②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③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교수들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수가 아닌 또 다른 갑(甲)에 의한 대학원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원생 모두에게 입학 한 첫 학기에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 마인드 혁신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6.1 평등권

대학원생들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의 공평성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엄격한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하는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수들의 마인드 혁신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선후배나 동료들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평등권이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미한 정도로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2 학습권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통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의 보장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평가한 결과, 국/공립대학의 대학원 보다 사립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 보다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에 의해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①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② 조교 등으로 근무 시 과도한 업무로 인해 ③ 프로젝트 연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④ 프로젝트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⑤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 ⑥ 특정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 내에서 교수들에 의해 학습권 피해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후배 등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연구기간내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는 원우들간 불신감을 심어주어 더욱 심각한 행위(폭력 등)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권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3 복리후생권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권은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복리후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생 맘(mom)을 위한 모유수유실과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원생에 대한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4 안전권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5 연구결정권

연구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①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 받고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② 프로젝트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결정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학원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교수들에 의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노력은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 등 철학에 의존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6.6 사생활보호권

대학원생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는 교수나 선후배 모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마인드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교수에 의해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이 더더욱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7 연구성과 명의권

대학원생들이 단독 혹은 연구논문이나 성과를 냈을 때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名義權)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을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성향이 아직도 대학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FGI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성과의 도용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명의권 도용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인드 혁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대학원생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침해사례는 대체적으로 교수에 의한 경우가 선후배에 의한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관계에서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엄권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관련된 것으로 가해자가 누구든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이 대학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상이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6.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 개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논문심사를 못 받거나 지도교수의 변경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특히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연구 성과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교수 변경의 용이성은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6.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에서 지도교수 및 교수와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특수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은 교수에 의해 부당한 지시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교수나 선후배에 의해 부당한 일을 지시 받은 경우는 교수와 선후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는 교수에 의한 부당지시가 선후배나 동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과도한 선물 등의 압력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에 걸쳐 11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유학생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한국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은 수 년 전 대학원 문제들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상황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최근 수년 간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대학이 나름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은 아직 미흡한 편이며 특히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관한 교수의 인식이나 대학 내 제도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대학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핵심적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수준의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 총론적인 정책방향

최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대학원 운영 경력이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나 인권에 관한 제도와 인식, 관행 등의 측면에서 아직 기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론적 수준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능력에 비례한다고 볼 때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기능은 이전보다 훨씬 중시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나아가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이 단지 대학원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고등교육 정책에서 대학원 교육에 관한 별도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학부 수준의 교육과 분리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원이 대학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 교육기관으로 격상될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원 제도는 법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채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문제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학원 교육이 학부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근원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셋째, 정부 정책 차원에서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 및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轉機)가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나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도제식 스승-제자 관계가 인식과 관행 속에 깊이 스며있어서 이것이 비상식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수와 대학원생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생 권리장전'처럼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공동 협약문을 의무적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각론적 정책방향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다보니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도교수의 절대적 권력 앞에서 다양한 업무 외적 역할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 활동 결과를 교수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일상적으로 교수에게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도 있다. 일부 부유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을 위한 쾌적한 연구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수유 공간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추가적인 복지시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형편이다.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누리는 전반적인 여건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원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본적인 조건이다. 적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부모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대학원에 재학하고는 있으나 연령상 부모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앞의 조사에서 57.8%의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학생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듯이 이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필수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비 배분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대학원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다른 하나는 대학 차원에서 현재 대학원생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대학에서 연구비나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점이 한계이기는 하다. 하지만 당연히 대학원생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구비나 활동비의 일부를 여러 이유를 들어 교수나 선배들이 가로채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 측면은 정부가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에서 대학원생의 비율을 늘리거나 저렴한 이율의 학비대출을 확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앞의 조사에서 대학원생의 31.1%는 '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었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 차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선진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원생들을 조교 등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 상세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매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및 주별 월별 총 노동시간의 상항선이 명기되어 있다. 대학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대학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일을 시키는 관행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대학원생들이 학업이나 개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학이 연구 및 복지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21.3%의 대학원생들이 연구실 공간조차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단지 강의실 외에는 머물 곳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수와 같은 개인연구실은 차치하고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대학원생들이 최소한 자기 책상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대학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공간 외에 휴게 공간 또는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대학원생들이 학업 중 이들을 맡길 만한 시설과 같은 복지 공간을 갖춘 대학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유능한 창조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적에 비추어보면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며, 이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 안에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고 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수년 전에 비해 전반적인 인권침해 현실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응답 결과들을 보면 대학원생들의 인권 상황이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다.’는 학생들이 10.7%였으며, 공동연구를 하고서도 등재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11.7%였다. 또 2.1%의 학생들이 교수로부터 추행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성적 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3.7%나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모든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협약 방식에 의한‘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을 강화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막연하고 애매한 문구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하여 해석상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중재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이다. 교수와 대학원생만이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갈등조정기구를 모든 대학이 설치, 운영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부당한 일을 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원생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기회 제공이 지역간 공사립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 대학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하여 나름의 가능성을 보이는 지방대 및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지방대 및 사립대 대학원에 대한 정책 지원의 확대를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2절 핵심정책 제언

여기서는 당면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제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학원의 지위는 독립적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대학의 한 부속기관이다. 종합대학이라는 체제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학원의 행정 기능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1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대학원을 추가한다.
(※ 단, 대학과 대학원을 별도의 학교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병설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 제언 2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대학은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대학원이 독립적인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를 제2절에서 빼내어 별도의 ‘대학원’이라는 절로 독립시킨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현재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학사 운영이나 대학원생 복지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없거나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연구공간의 미비와 함께 대학원생들이 학교로부터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전담 행정지원 기구의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3 : 모든 대학원에 학부와 분리하여 대학원 행정실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와 대학원 행정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도제식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교수들은 아직도 학생을 대등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 중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어떤 의례적 절차와 의무가 준 강제적 형태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제언 4 : 모든 대학(원)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쌍무적 협약식을 거행하고 그 결과로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그것이 나름의 강제력을 가진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이를 운용한다. 또한 매년 상담건수와 처리결과를 유관 부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 개선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수립의 일관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관련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조사와 통계분석,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정기적인 실태조사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2011년 카이스트 대학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이후 대중적 주목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반복된 실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효과를 영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5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정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가급적 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된 항목에 대하여 모듈화 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개발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대학이다. 하지만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학 내 정책에서 학생 권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평가가 나름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제언 5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인권 상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에 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 록 편

1.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2. 주요 통계분석표

3. 세미나/표적집단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4. 유학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결과

5. 기타 응답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과제로 (사)한국교육연구소가 수행하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연구 관련 환경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사의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자 및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항입니다. 본 조사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조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사)한국교육연구소

조사담당자: 김경미 팀장 / 김윤겸 연구원(T. 02-765-5778)

e-mail: keri21c@daum.net

※ 다음의 문항은 통계분석 시 분류통계를 위한 기본적인 인구통계속성 문항입니다.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연령 만 _____ 세

3. 귀하는 현재 대학원에서 어떤 과정, 몇 학기에 재학 중입니까? 혹은 수료 중입니까? 아래 2 가지 응답 중 해당하는 1가지에만 체크(∨)표시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재학 중인 경우 : □석사 □박사 과정 재학중

(2) 수료인 경우 : □석사 □박사 과정 수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1 재학중인경우 몇 학기 재학중이신가요?
수료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해 주세요.

4. 귀하가 다니는 대학원은 국/공립, 사립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국/공립 (2) 사립

5. 귀하가 다니는 대학원은 어떤 유형의 대학원입니까?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3) 전문대학원 (4) 기타:_____

6. 귀하의 전공계열은? (※경영,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동일 계열로 응답 요함)

(1) 인문사회계열 (2) 교육/사범계열 (3) 경영/경제/경상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과학계열 (6) 의학/약학/간호학계열
(7) 예체능계열 (8) 국제대학원 (9) 기타:_____

7. 귀하는 현재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유형의 대학원생에 해당합니까?
(1)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2)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7-1. 귀하는 현재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외에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1) 행정조교 (2) 연구조교(RA) (3) 수업조교(TA)
(4) 군복무대체 연구원(병역특례법 적용 대상)
(5) 기업 등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6) 없음 (7) 기타_____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2. (상기 7-1번의 응답을 기준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귀하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 학문연구를 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각
(2)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라고 생각
(3)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학생+근로자)라고 생각
(4) 기타: _____

8. 귀하가 다니는 대학원은 행정구역상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6) 인천	(7) 울산	(8) 세종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음의 문항은 대학원생의 일반적인 환경 및 경제적 환경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9. 귀하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학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진학목적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대학 사회(교수, 연구원 등) 입직 (2)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
(3) 일반 취업 (4) 승진 등과 관련된 경력계발
(5)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 (6)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
(7) 기타:_____

10. 귀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주로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기타 사항이 있으면 기타사항도 작성해 주십시오.

(1) 학업/연구 과제 수행 어려움 (2) 경제적 어려움
(3) 개인 및 가정적 문제 (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5)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 (6) 취업 및 진로고민
(7) 육아를 해야 하는 대학원생 맘(아이가 있는 학생부부)으로서의 어려움
(8) 학과/전공 구조조정
(9) 기타:_____

11. 귀하는 대학원 과정 중 휴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12번으로 가세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1-1. (위 11번에서 1번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타사항도 작성해 주십시오.

(1) 학업/연구 과제 수행 어려움
(2)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3) 개인 및 가정적 문제
(4)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5)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
(6) 취업 및 진로고민
(7)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
(8) 대학원생 부모로서의 어려움
(9) 학과/전공 구조조정
(10) 해당사항없음
(11) 기타:_____

11-2. (위 11번에서 1번에 응답한 경우) 휴학한 학기 수는 총 몇 학기입니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분리해서 응답해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놓아두십시오)

(1) 석사과정 중에 _____학기
(2) 박사과정 중에 _____학기

12.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6개월)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 ~ 300만원 미만
(3) 300 ~ 400만원 미만
(4) 400 ~ 500만원 미만
(5) 500 ~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13. 귀하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한 학기(6개월)동안 어느 정도의 생활비나 경비를 쓰고 있습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 ~ 300만원 미만
(3) 300 ~ 400만원 미만
(4) 400 ~ 500만원 미만
(5) 500 ~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4. 귀하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장학금 (2)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
(3)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4)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로
(5)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6) 직업 소득
(7)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
(8) 기타_____

14-1. 귀하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제외한 각종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장학금 (2)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
(3)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4)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로
(5)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6) 직업 소득
(7)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
(8) 기타_____

14-2. (위 14번에서 (2), (3)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받는 보수는 한 학기(6개월) 등록금 중 몇 % 에 해당 됩니까?

한 학기(6개월)등록금 중 _____(%)

14-3 (위 14번에서 (2), (3)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받는 보수는 한 학기(6개월) 생활 비중 몇 %에 해당 됩니까?

한 학기(6개월)생활비 중 _____(%)

15. 다음 문항은 대학원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 해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보통)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5-1) 등록금 마련 때문에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①...②...③...④...⑤

(15-2) 일상생활 비용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①...②...③...④...⑤

(15-3) 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렵다 ①...②...③...④...⑤

(15-4)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미래(질병,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없다. ①...②...③...④...⑤

(15-5) 경제적 문제로 학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 15-6.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의 문항은 대학 및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 해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보통)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6.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

(16-1)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16-2)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6-3)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6-4)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었다. ①....②....③....④....⑤
(16-5) 취업과 진학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6-6)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①....②....③....④....⑤
(16-7)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6-8)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지원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②....③....④....⑤
(16-9)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②....③....④....⑤

17. 물리적 지원환경

(17-1)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다. ①....②....③....④....⑤
(17-2)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①....②....③....④....⑤
(17-3) 도서관은 필요한 학술정보나 도서, 온라인 저널 지원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7-4)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연구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17-5) 현재 강의실 및 연구실의 각종 편의시설(전자기기, 실험기기, 냉난방 및 방음 등)이 갖추어져 있다. ①....②....③....④....⑤
(17-6)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7-7 제도적 및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 해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보통)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18.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18-1)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만족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18-2) 교수가 학습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①…②…③…④…⑤

(18-3)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①…②…③…④…⑤

(18-4)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다. ①…②…③…④…⑤

(18-5)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①…②…③…④…⑤

(18-6)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①…②…③…④…⑤

(18-7)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18-8) 현재 논문지도를 받거나 지도교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0번으로 가세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9.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환경

(19-1)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19-2) 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①…②…③…④…⑤
(19-3)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19-4)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19-5)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 ①…②…③…④…⑤
(19-6)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다. ①…②…③…④…⑤

19-7.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1)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2) 그런 적이 없었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런 적이 있었다 (5) 정말 변경하고 싶었다

19-8. **(19-7번에서 4,5번으로 응답한 경우)**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1) 지도교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2) 논문주제와 지도교수 전공 불일치로
(3) 지도교수의 안식년 혹은 정년퇴임으로 인해
(4) 적절한 논문지도가 안되서 (5) 금품 등의 요구로 인해
(6) 기타 부당한 대우로 인해:
(7) 기타:(구체적으로)

19-9. (19-7번에서 4,5번으로 응답한 경우) 실제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였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변경하지 않았다.

19-10 (19-9번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지도교수 변경이 용이하였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그렇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그저 그랬다 (5) 매우 용이했다

19-11. (19-9번에서 2번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2)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할까 두려워서
(3) 지도교수 변경제도가 없어서
(4) 이전 지도교수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서
(5) 기타:_____

19-12 **(19-10번에서 (1), (2)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_____

20. 공동연구수행 환경

20-1. 지도교수 또는 전공교수와 함께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20-3번으로 가세요."

20-2. 지도교수 또는 전공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20-2-1)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빈번하게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	①...②...③...④...⑤
(20-2-2) 원하는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
(20-2-3)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①...②...③...④...⑤
(20-2-4)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0-2-5)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	①...②...③...④...⑤
(20-2-6)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은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20-2-7)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대학원생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다.	①...②...③...④...⑤
(20-2-8) 교수에 의한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한 경우가 있다.	①...②...③...④...⑤
(20-2-9)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20-2-10)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20-3.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20-3-0)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21번으로 가세요."

(20-3-1) 선후배, 동료들의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저작권) ①…②…③…④…⑤

(20-3-2) 선후배, 동료들의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정당한 보상) ①…②…③…④…⑤

(20-3-3) 선후배,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에 의해 꼭 필요하거나 원했던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①…②…③…④…⑤

(20-3-4) 선후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았다. ①…②…③…④…⑤

(20-3-5) 선후배, 동료에 의해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한 경우가 있다. ①…②…③…④…⑤

(20-3-6)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학술지 게재 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20-3-7)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해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②…③…④…⑤

※ 20-3-8.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음은 교수 및 선후배, 동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존중감이나 성적 존중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 해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보통)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21. 교수와의 인적 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21-1) 교수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 ①…②…③…④…⑤

(21-2) 성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1-3)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이나 음담패설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1-4)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 받았다. ①…②…③…④…⑤

(21-5)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1-6)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①…②…③…④…⑤

(21-7)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1-8)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1-9)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21-10)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1-11)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①…②…③….④…⑤

(21-12) 결혼생활,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1-13)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1-14. 교수로부터 개인적 존중감이나 성적 존중감이 침해 당한 경우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본 통계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22. 선후배 및 동료간 인적 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환경

(22-1)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②..③..④..⑤
(22-2) 선후배, 동료들의 압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하였다.	①..②..③..④..⑤
(22-3)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①..②..③..④..⑤
(22-4) 선후배, 동료들이 지시한 업무로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22-5) 선후배, 동료로부터 요청받은 일은 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다.	①..②..③..④..⑤
(22-6) 선후배 또는 동료들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	①..②..③..④..⑤
(22-7) 성적으로 차별, 희롱 또는 음담패설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2-8)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접대, 여행 등 동행을 요구받았다.	①..②..③..④..⑤
(22-9)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22-10)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①..②..③..④..⑤
(22-11) 출신학교나 학부전공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2-12) 나이나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2-13) 체벌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	①..②..③..④..⑤
(22-14) 사상, 정치적 입장 및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2-15) 결혼 및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	①..②..③..④..⑤
(22-16) 출신지역,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①..②..③..④..⑤
(22-17)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	①..②..③..④..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2-18. 선후배, 동료로부터 개인적 존중감이나 성적 존중감이 침해 당한 경우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22-19. 20, 21, 22 문항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대학원 재학 중인 대학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하는 편 (3) 그저 그렇다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잘 모르겠다

24. 귀하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에 다시 진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전혀 진학하고 싶지 않다 (2) 그다지 진학하고 싶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는 진학하고 싶다
(5) 반드시 진학하고 싶다

※ 25. 귀하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적 존중감 등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쿠폰)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모바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프트콘을 받으실 핸드폰 번호

H.P: _____

(핸드폰 번호는 모바일 기프트콘을 발송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발송 후 즉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주요 통계분석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속성별 응답자 분포			
		빈도	비율(%)
권역	서울권역	483	25.3
	수도권역	673	35.3
	경상권역	304	15.9
	전라권역	234	12.3
	충청권역	212	11.1
성별	남자	904	47.4
	여자	1002	52.6
연령대	25세 미만	564	29.6
	25-30세 미만	962	50.5
	30-35세 미만	275	14.4
	35-40세 미만	50	2.6
	40세 이상	53	2.8
	무응답	2	.1
	합계	19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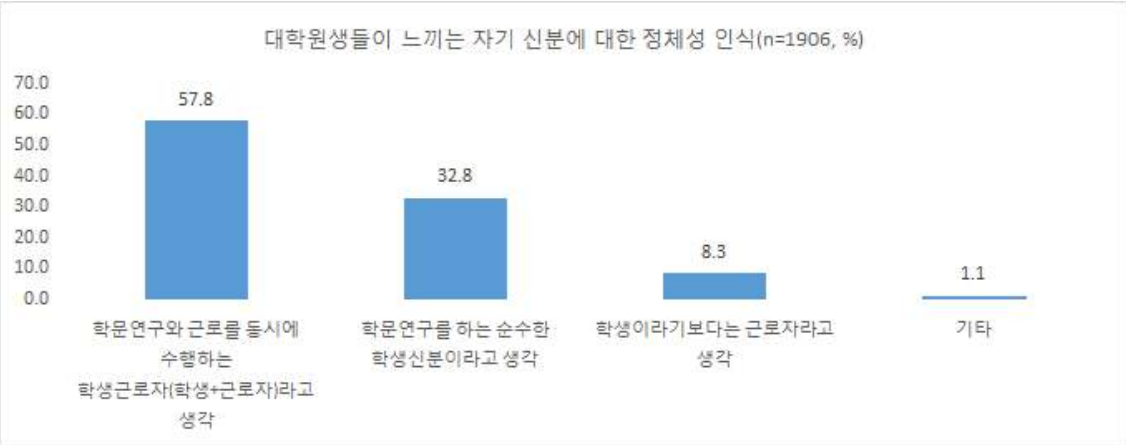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학원 관련 응답자 일반사항			
		빈도	비율(%)
설립성격	국/공립	1048	55.0
	사립	858	45.0
대학원유형	일반대학원	1647	86.4
	특수대학원	118	6.2
	전문대학원	141	7.4
과정	석사과정 재학중	1284	67.4
	석사과정 수료	98	5.1
	박사과정 재학중	390	20.5
	박사과정 수료	134	7.0
계열	인문사회계열	410	21.5
	교육/사범계열	124	6.5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97	5.1
	공학계열	646	33.9
	자연과학계열	417	21.9
	의학/약학/간호학계열	167	8.8
	예체능계열	45	2.4
재학유형	풀타임(전업제) 대학원생	1660	87.1
	파트타임(非전업제) 대학원생	246	12.9
	합계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 인식

		설립성격					
		국/공립		사립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분 인식	학문연구를 하는 순수한 학생신분이라고 생각	360	34.4	266	31.0	626	32.8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라고 생각	72	6.9	86	10.0	158	8.3
	학문연구와 근로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근로자(학생+근로자)라고 생각	607	57.9	494	57.6	1101	57.8
	기타	9	.9	12	1.4	21	1.1
	합계	1048	100.0	858	100.0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일반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

대학원 진학 목적										
구분			진학목적							전체
			대학 사회(교수, 연구원 등) 입직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	일반 취업	승진 등과 관련된 경력계발	학문적 관심 및 자아실현	가족(부모, 배우자 등)의 권유	기타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 재학 중	빈도	200	467	149	64	386	11	7	1284
		%	15.6%	36.4%	11.6%	5.0%	30.1%	0.9%	0.5%	100.0%
	석사과정 수료	빈도	31	23	3	6	33	2	0	98
		%	31.6%	23.5%	3.1%	6.1%	33.7%	2.0%	0%	100.0%
	박사과정 재학 중	빈도	137	87	16	10	133	5	3	390
		%	35.0%	22.3%	4.1%	2.6%	34.0%	1.3%	0.7%	100.0%
	박사과정 수료	빈도	37	37	6	1	50	0	2	134
		%	27.8%	27.8%	4.5%	0.8%	37.6%	0%	1.5%	100.0%

대학원 재학 중 겪게 되는 주요 어려움(중복응답, n=1906)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재학 중 어려움	학업/연구과정 수행 어려움	763	55.2	292	55.7	1055	55.4
	경제적 어려움	771	55.8	305	58.2	1076	56.5
	개인 및 가정적 문제	152	11.0	61	11.6	213	11.2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236	17.1	130	24.8	366	19.2
	선후배, 동기들간의 관계	183	13.2	70	13.4	253	13.3
	취업 및 진로고민	628	45.4	219	41.8	847	44.4
	대학원생 맘으로서의 어려움	20	1.4	42	8.0	62	3.3
	학과/전공 구조조정	32	2.3	12	2.3	44	2.3
	기타	34	2.5	14	2.7	48	2.5
	합계	1382	100.0	524	100.0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 휴학경험 및 경험자의 휴학 이유(중복응답)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휴학경험	있다	56	4.1	41	7.8	97	5.1
	없다	1326	95.9	483	92.2	1809	94.9
	합계	1382	100.0	524	100.0	1906	100.0
휴학 이유 (중복)	학업/연구과제 수행 어려움	9	16.4	6	14.6	15	15.6
	경제적 어려움	16	29.1	11	26.8	27	28.1
	개인 및 가정적 문제	11	20.0	12	29.3	23	24.0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4	7.3	5	12.2	9	9.4
	선후배, 동기들간의 관계	4	7.3	1	2.4	5	5.2
	취업 및 진로고민	10	18.2	2	4.9	12	12.5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9	16.4	5	12.2	14	14.6
	대학원생 맘으로서의 어려움	1	1.8	5	12.2	6	6.3
	학과/전공 구조조정	0	.0	0	.0	0	.0
	해당사항 없음	0	.0	0	.0	0	.0
	기타	14	25.5	13	31.7	27	28.1
	합계	55	100.0	41	100.0	9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등록금과 생활비 조달방법(중복 응답)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금 조달방법	장학금	623	45.1	289	55.2	912	47.8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	440	31.8	132	25.2	572	30.0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312	22.6	151	28.8	463	24.3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220	15.9	45	8.6	265	13.9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454	32.9	87	16.6	541	28.4
	직업 소득	144	10.4	50	9.5	194	10.2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	120	8.7	48	9.2	168	8.8
	기타	12	.9	13	2.5	25	1.3
생활비 조달방법	장학금	230	16.6	159	30.3	389	20.4
	TA, RA 또는 행정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	379	27.4	126	24.0	505	26.5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	476	34.4	240	45.8	716	37.6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	77	5.6	22	4.2	99	5.2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	633	45.8	177	33.8	810	42.5
	직업 소득	146	10.6	60	11.5	206	10.8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	246	17.8	82	15.6	328	17.2
	기타	21	1.5	13	2.5	34	1.8
	합계	1382	100.0	524	100.0	1906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기술통계량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등록금 마련 때문에 기초생활에 어려움	2.87	.03	1.20	2.63	.06	1.27
일상생활 비용의 조달에 어려움	3.28	.03	1.16	3.22	.05	1.23
장학금,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수입이 없으면 학업계속이 어려움	3.72	.03	1.21	3.95	.05	1.18
학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미래(질병,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없음	4.13	.03	1.07	4.10	.05	1.14
경제적 문제로 학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음	2.80	.03	1.22	2.82	.06	1.31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3. 대학의 제도적 · 물리적 지원 환경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제도적 및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기술통계량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가 적절하다고 생각	2.64	.03	.99	2.54	.04	.99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	2.81	.03	1.02	2.78	.05	1.06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음	2.93	.03	1.01	2.90	.04	1.01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음	2.89	.03	1.13	3.10	.05	1.17
취업과 진학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2.50	.03	1.01	2.43	.04	1.00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음	2.06	.02	.93	1.72	.04	.87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2.23	.03	1.01	2.14	.05	1.03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지원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57	.03	1.04	2.47	.05	1.09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21	.02	.84	4.34	.03	.76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음	2.61	.03	1.10	2.42	.05	1.08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1.68	.02	.84	1.52	.03	.79
도서관은 필요한 학술정보나 도서, 온라인 저널 지원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음	3.66	.03	.98	3.72	.04	1.00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연구공간이 제공되고 있음	3.24	.03	1.24	3.30	.05	1.20
현재 강의실 및 연구실의 각종 편의시설(전자기기, 실험기기, 냉난방 및 방음 등)이 갖추어져 있음	3.41	.03	1.02	3.51	.04	.99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	3.28	.03	1.08	3.27	.05	1.08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의 인식과 대학원유형간의 차이

구분	대학원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등록금이나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반대학원	1647	2.62	.982	1.202	0301
	특수대학원	118	2.67	1.055		
	전문대학원	141	2.50	1.060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80	1.033	.362	.696
	특수대학원	118	2.76	.940		
	전문대학원	141	2.87	1.090		
교육조교/연구조교 제도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96	1.008	11.356	.000
	특수대학원	118	2.70	.918		
	전문대학원	141	2.60	1.006		
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가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98	1.138	4.554	.011
	특수대학원	118	2.96	1.135		
	전문대학원	141	2.67	1.174		
취업과 진학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47	1.010	.870	.419
	특수대학원	118	2.60	1.039		
	전문대학원	141	2.48	.975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일반대학원	1647	1.95	.918	2.323	.098
	특수대학원	118	2.10	.937		
	전문대학원	141	2.06	.954		
학업과 연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20	1.021	.244	.783
	특수대학원	118	2.19	.915		
	전문대학원	141	2.26	1.026		
학교가 외부의 장학금 지원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55	1.063	.357	.700
	특수대학원	118	2.47	.949		
	전문대학원	141	2.51	1.066		
국가나 지자체 등 학교 외 기관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대학원	1647	4.29	.797	15.328	.000
	특수대학원	118	4.03	.882		
	전문대학원	141	3.96	.970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학 및 대학원의 물리적 지원환경 인식과 대학원 유형간의 차이

구분	대학원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내에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원	1647	2.52	1.108	8.251	.000
	특수대학원	118	2.86	.989		
	전문대학원	141	2.77	1.065		
학생부모를 위한 모유수유실이나 유아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원	1647	1.60	.810	8.770	.000
	특수대학원	118	1.77	.861		
	전문대학원	141	1.87	.932		
도서관은 필요한 학술정보나 도서, 온라인 저널 지원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3.70	.978	10.283	.000
	특수대학원	118	3.70	.766		
	전문대학원	141	3.31	1.147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연구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3.32	1.213	20.395	.000
	특수대학원	118	2.71	1.192		
	전문대학원	141	2.90	1.244		
현재 강의실 및 연구실의 각종 편의시설(전자기기, 실험기기, 냉난방 및 방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일반대학원	1647	3.46	1.009	4.114	.016
	특수대학원	118	3.42	.973		
	전문대학원	141	3.21	1.125		
연구실 또는 실험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3.30	1.083	1.896	.151
	특수대학원	118	3.19	1.032		
	전문대학원	141	3.13	1.123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학습 및 학위과정 수업 환경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학습 및 학위과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만족하고 있음	3.51	.03	1.03	3.37	.05	1.12
교수가 학습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4.06	.02	.88	3.96	.04	.99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음	2.43	.03	1.09	2.52	.05	1.13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음	2.16	.03	1.15	2.18	.05	1.18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음	2.02	.03	1.02	2.19	.05	1.19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음	2.24	.03	1.20	2.45	.06	1.31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음	1.57	.02	.87	1.56	.04	.92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습 및 학위과정 수업환경의 인식과 대학원유형간의 차이

구분	대학원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전공교수의 교육과 지도에 만족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3.50	1.053	5.372	.005
	특수대학원	118	3.18	1.075		
	전문대학원	141	3.40	1.048		
교수가 학습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대학원	1647	4.06	.914	6.245	.002
	특수대학원	118	3.81	.877		
	전문대학원	141	3.88	.922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일반대학원	1647	2.44	1.102	.645	.525
	특수대학원	118	2.53	1.130		
	전문대학원	141	2.52	1.060		
특정 수업을 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 당했다	일반대학원	1647	2.17	1.176	.208	.812
	특수대학원	118	2.20	1.075		
	전문대학원	141	2.11	1.063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	일반대학원	1647	2.09	1.088	3.990	.019
	특수대학원	118	1.81	.809		
	전문대학원	141	2.02	1.065		
교수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연구)를 지시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일반대학원	1647	2.31	1.247	1.354	.259
	특수대학원	118	2.14	1.124		
	전문대학원	141	2.23	1.193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 금품, 노력 제공 등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일반대학원	1647	1.54	.867	7.330	.001
	특수대학원	118	1.75	.995		
	전문대학원	141	1.77	.944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논문지도 및 심사 환경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학위논문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기술통계량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표준편차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음	3.62	.03	1.04	3.57	.05	1.07
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음	2.09	.03	1.00	2.13	.05	1.07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음	1.80	.03	.88	1.86	.04	.96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	1.44	.02	.72	1.41	.03	.73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음	2.29	.04	1.17	2.52	.06	1.24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음	3.90	.03	1.01	3.98	.04	.97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인식과 대학원유형간의 차이

구분	대학원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지도교수로부터 정기적이고 적절한 논문지도를 받았다.	일반대학원	1401	3.63	1.037	5.870	.003
	특수대학원	74	3.31	1.134		
	전문대학원	86	3.36	1.051		
논문의 연구 주제 선정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일반대학원	1403	2.10	1.018	.186	.830
	특수대학원	73	2.05	.956		
	전문대학원	86	2.15	1.057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일반대학원	1401	1.80	.891	1.986	.138
	특수대학원	73	1.99	.993		
	전문대학원	85	1.89	.859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금품 등의 물질적 요구를 받았다.	일반대학원	1396	1.41	.696	4.414	.012
	특수대학원	73	1.59	.895		
	전문대학원	85	1.58	.746		
지도교수의 바쁜 일상 때문에 논문지도를 받기가 힘들었다.	일반대학원	1401	2.34	1.197	2.071	.126
	특수대학원	73	2.63	1.184		
	전문대학원	84	2.37	1.084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 받았다.	일반대학원	1400	3.97	.974	16.475	.000
	특수대학원	72	3.57	1.005		
	전문대학원	85	3.45	1.107		

[보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정말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논문지도교수 변경의도 여부와 변경희망 이유(중복응답)			
		빈도	비율(%)
변경의도 여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	563	29.5
	그런 적이 없었다	432	22.7
	그저 그렇다(보통)	237	12.4
	약간 그런 적이 있었다	231	12.1
	정말 변경하고 싶었다	109	5.7
	무응답	334	17.5
변경희망 이유 (중복응답)	지도교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1895	99.4
	논문주제와 지도교수 전공의 불일치	85	4.5
	지도교수의 안식년/정년퇴임으로	24	1.3
	적절한 논문지도가 안되서	167	8.8
	금품 등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7	.4
	기타 부당한 대우로 인해	65	3.4
	기타	38	2.0
	합계	1906	100.0

실제적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 여부와 변경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빈도	비율(%)
지도교수 변경 여부	변경했다	23	7.3
	변경하지 않았다	293	92.7
변경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학교생활, 학점, 졸업, 진로(취업, 추천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74	62.6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할까 두려워서	58	20.9
	지도교수 변경제도가 없어서	54	19.4
	이전 지도교수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서	57	20.5
	기타	150	54.0
	합계	278	100.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6.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 환경

6.1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학위과정별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 (1)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 강요	석사과정 재학중	427	2.31	1.154	7.899	.000
	석사과정수료	19	2.16	.958		
	박사과정 재학중	202	2.75	1.172		
	박사과정수료	76	2.72	1.382		
원하는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	석사과정 재학중	428	3.27	1.038	1.243	.293
	석사과정수료	19	3.21	.918		
	박사과정 재학중	201	3.10	1.005		
	박사과정수료	76	3.16	1.144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 지장	석사과정 재학중	424	2.96	1.211	2.861	.036
	석사과정수료	19	3.16	.958		
	박사과정 재학중	202	3.24	1.134		
	박사과정수료	77	3.18	1.345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음	석사과정 재학중	426	3.13	1.219	3.249	.021
	석사과정수료	19	3.42	1.071		
	박사과정 재학중	202	2.87	1.249		
	박사과정수료	77	3.25	1.299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426	3.24	1.120	2.050	.106
	석사과정수료	18	3.28	1.018		
	박사과정 재학중	201	3.01	1.175		
	박사과정수료	75	3.05	1.28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위과정별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 (2)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426	1.50	.707	2.408	.066
	석사과정수료	17	1.71	.772		
	박사과정 재학중	201	1.38	.597		
	박사과정수료	77	1.42	.656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427	1.85	1.048	2.078	.102
	석사과정수료	19	1.95	.911		
	박사과정 재학중	201	1.99	1.142		
	박사과정수료	76	2.16	1.297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함	석사과정 재학중	426	1.50	.740	1.839	.139
	석사과정수료	19	1.47	.612		
	박사과정 재학중	202	1.63	.826		
	박사과정수료	76	1.67	.870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425	1.66	.999	5.692	.001
	석사과정수료	19	2.05	1.026		
	박사과정 재학중	201	2.02	1.196		
	박사과정수료	76	1.86	1.116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중	427	2.11	1.199	8.773	.000
	석사과정수료	19	2.26	.872		
	박사과정 재학중	202	2.58	1.272		
	박사과정수료	76	2.66	1.44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학원 유형별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대학원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 강요	일반대학원	679	2.47	1.204	.406	.667
	특수대학원	18	2.39	.916		
	전문대학원	27	2.67	1.209		
원하는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	일반대학원	679	3.21	1.042	.377	.686
	특수대학원	18	3.00	.907		
	전문대학원	27	3.19	1.039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 지장	일반대학원	677	3.06	1.212	.563	.570
	특수대학원	18	2.83	.924		
	전문대학원	27	3.22	1.188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음	일반대학원	679	3.09	1.249	.902	.406
	특수대학원	18	2.78	1.215		
	전문대학원	27	2.89	.934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일반대학원	677	3.16	1.156	.206	.814
	특수대학원	17	3.06	1.249		
	전문대학원	26	3.04	1.038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음	일반대학원	676	1.45	.659	1.474	.230
	특수대학원	18	1.56	.922		
	전문대학원	27	1.67	.877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일반대학원	679	1.92	1.097	.061	.941
	특수대학원	18	2.00	1.237		
	전문대학원	26	1.88	1.177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함	일반대학원	678	1.55	.767	1.589	.205
	특수대학원	18	1.50	.786		
	전문대학원	27	1.81	1.001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음	일반대학원	676	1.77	1.066	1.454	.234
	특수대학원	18	1.94	1.349		
	전문대학원	27	2.11	1.251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일반대학원	679	2.31	1.267	.249	.780
	특수대학원	18	2.11	.583		
	전문대학원	27	2.37	1.44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공 계열별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1)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 강요	인문사회계열	54	2.39	1.089	.448	.847
	교육/사범계열	11	2.45	.934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50	1.168		
	공학계열	392	2.48	1.241		
	자연과학계열	208	2.44	1.182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2.60	1.106		
	예체능계열	5	3.20	1.095		
원하는 연구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손쉽게 참여	인문사회계열	53	2.89	.974	2.543	.019
	교육/사범계열	11	3.09	1.30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83	1.193		
	공학계열	392	3.29	1.018		
	자연과학계열	209	3.22	1.020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2.95	1.168		
	예체능계열	5	2.40	.894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학업 지장	인문사회계열	55	3.25	.985	2.253	.037
	교육/사범계열	11	3.36	1.362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3.33	1.231		
	공학계열	391	3.08	1.202		
	자연과학계열	208	2.89	1.227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0	3.18	1.259		
	예체능계열	5	4.40	.548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전 연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음	인문사회계열	55	3.16	1.032	2.415	.026
	교육/사범계열	11	3.09	1.044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75	1.288		
	공학계열	390	3.21	1.225		
	자연과학계열	209	2.92	1.302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2.74	1.211		
	예체능계열	5	2.20	.837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음	인문사회계열	55	3.11	1.117	1.528	.166
	교육/사범계열	10	3.20	1.619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3.08	1.165		
	공학계열	387	3.24	1.190		
	자연과학계열	209	3.07	1.096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3.00	.988		
	예체능계열	5	2.00	.707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보상을 연구비가 아닌 현물로 받음	인문사회계열	55	1.60	.784	2.767	.011
	교육/사범계열	11	1.73	1.009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1.25	.452		
	공학계열	387	1.46	.671		
	자연과학계열	209	1.38	.577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1.69	.869		
	예체능계열	5	2.00	.70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공 계열별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2)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인문사회계열	55	1.89	1.012	1.583	.149
	교육/사범계열	11	2.00	1.00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25	1.288		
	공학계열	390	1.95	1.156		
	자연과학계열	208	1.78	.997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2.29	1.111		
	예체능계열	5	2.00	1.225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내용을 도용당함	인문사회계열	55	1.44	.660	1.839	.089
	교육/사범계열	11	1.64	.674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1.67	1.231		
	공학계열	390	1.58	.800		
	자연과학계열	209	1.47	.658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1	1.76	.994		
	예체능계열	5	2.20	1.304		
학술지 게재논문에 교수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음	인문사회계열	55	1.58	.786	2.491	.022
	교육/사범계열	11	2.36	1.629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00	1.279		
	공학계열	389	1.86	1.123		
	자연과학계열	209	1.66	.988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0	1.78	1.097		
	예체능계열	5	2.80	1.304		
원치 않는 프로젝트 참여로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인문사회계열	53	2.15	1.150	1.055	.388
	교육/사범계열	11	2.64	1.120		
	경영/경제/경상/국제계열	12	2.25	1.357		
	공학계열	392	2.33	1.296		
	자연과학계열	209	2.23	1.228		
	의학/약학/간호학계열	42	2.38	1.188		
	예체능계열	5	3.40	1.51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6.2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학위과정별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1)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중	523	1.95	1.093	.317	.813
	석사과정수료	25	2.16	1.106		
	박사과정 재학중	232	1.98	1.124		
	박사과정수료	83	2.00	1.220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중	524	2.06	1.139	.895	.443
	석사과정수료	25	2.36	1.254		
	박사과정 재학중	232	1.98	1.065		
	박사과정수료	83	2.05	1.258		
집단 따돌림에 의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중	521	1.58	.860	.109	.955
	석사과정수료	25	1.48	.714		
	박사과정 재학중	232	1.57	.885		
	박사과정수료	83	1.57	.829		
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521	1.58	.871	.935	.423
	석사과정수료	25	1.72	1.173		
	박사과정 재학중	229	1.51	.776		
	박사과정수료	83	1.66	1.003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함	석사과정 재학중	523	1.61	.887	.710	.546
	석사과정수료	25	1.60	.957		
	박사과정 재학중	232	1.61	.871		
	박사과정수료	83	1.76	1.01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위과정별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2)

구분	학위과정	N	평균	표준편차	F	p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학술지 게재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음	석사과정 재학중	524	1.80	1.061	4.050	.007
	석사과정수료	24	1.96	1.042		
	박사과정 재학중	232	2.09	1.286		
	박사과정수료	83	2.07	1.323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여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중	524	1.88	1.085	2.085	.101
	석사과정수료	25	1.96	.978		
	박사과정 재학중	230	2.10	1.193		
	박사과정수료	83	2.05	1.229		

대학원 유형별 선후배 또는 동료와 공동연구 수행환경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대학원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p
공동저자나 제1저자 등으로 등재되지 못함	일반대학원	804	1.95	1.100	3.044	.048
	특수대학원	26	2.50	1.273		
	전문대학원	33	1.97	1.237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함	일반대학원	805	2.04	1.132	.423	.655
	특수대학원	26	2.23	1.142		
	전문대학원	33	1.97	1.212		
집단 따돌림에 의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일반대학원	802	1.57	.864	.269	.764
	특수대학원	26	1.69	.838		
	전문대학원	33	1.55	.754		
부당한 연구비 유용, 명의 도용을 지시받음	일반대학원	799	1.56	.856	.798	.451
	특수대학원	26	1.73	1.002		
	전문대학원	33	1.70	1.104		
아이디어, 논문(리포트)등 도용당함	일반대학원	804	1.60	.873	2.648	.071
	특수대학원	26	1.88	1.107		
	전문대학원	33	1.88	1.219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름을 학술지 게재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음	일반대학원	804	1.90	1.155	.383	.682
	특수대학원	26	2.08	1.093		
	전문대학원	33	2.00	1.299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여 본인의 연구를 하지 못함	일반대학원	804	1.95	1.126	.142	.868
	특수대학원	26	2.04	1.076		
	전문대학원	32	2.03	1.25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록3: 국제 세미나/FGI 결과 요약

1. 대학원생 국제 세미나

○ 일시: 2015년 6월 4일(목) 오후 4:00 ~ 6:00
○ 장소: 한국교육연구소 세미나실
○ 발제자: 이종태박사, 조성란박사, 이우창선생
○ 참석인원: 석박사 과정생 총 24명

□ 발제 1: 미국 대학원생의 연구 및 인권환경과 연구 실태

○ 발제자: 조성란 박사
○ 주요 내용: 코넬대학의 연구 및 인권환경 사례

가. 코넬 대학의 연구환경 사례

코넬 대학을 사례로 든 이유는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미국 대학원생의 인권 환경 연구 실태에 대한 발표로 사용하였다. 크게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 일반적 · 경제적 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으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대학원의 제도적 지원환경과 물리적 지원환경:

뉴욕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우리의 신분을 학교의 직원으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넬대는 일주일에 15~20시간 일을 하되 평균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RA는 본인의 논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GA는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가 대학의 직원으로 간주하게 되면 국가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의 직원 여부는 논의 중이다. 코넬대의 규정은 의과대학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 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대학원장실에 문의하고, 고용 관련은 부행정대학원장에 문의하라는 등 규정 문의에 대한 내용 또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대학원생의 일반적 · 경제적 환경:

한달 임금은 한화로 190~200만원 정도이다. 풀타임은 전액 면제와 보험료 1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프타임은 근무시간과 봉급이 풀타임의 절반이다. 풀타임과 하프타임의 임금으로도 모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교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는다. 학회 참여비(비행기 포함) 또한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드미션을 받으면 학생들은 얼마나 펀딩을 해주겠는지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며 협상한다.

❍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교수와 학생의 개인적인 면담은 문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면 그 학생을 위한 강좌를 따로 개설하거나 개인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처리되는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종종 되어서 잘 되어 있다. 모든 제도가 학생 위주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확실히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

- 대학원 교육은 엘리트를 위한 교육인가 대중을 위한 교육인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육은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대학원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해법을 드러난 문제로 볼 것인가 문제 중심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볼 것인가, 교수집단과 학생집단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학위취득이 학력 상승, 학력 경쟁 팽창이라는 맥락에서 학위를 받으면 가산점을 주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학위에 대한 인식 문제를 인식하면서 한국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대학원생의 일반적,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이 공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는 최근의 경우다.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학비는 다 내고 다녀했고, 대학원은 조교를 도와주는 사람을 TA라 규정하고 약간의 학비지원 정도였다. 대학원생들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하게 된 것은 BK21(Brain Korea 21) 부터였고, 연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공계에서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상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수가 본인 주머니로 챙기는 등의 문제, 각종 논문 대필에 관한 비리, 교수간의 승진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여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청년위원회에서 조사한 등록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45.6%가 부당함을 느꼈다고 나왔다. 그러나 자체 설문에서는 15%가 안 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미는 우리 학교에서 만큼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 대학원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시작:

본격적인 대학원생 인권문제는 2011년 카이스트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서울대 인권 어디 있나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2014년에 들어와서 한국 교수들의 제자들을 성추행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이슈를 2014년 10월 29일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13개 대학원생 2353명을 대상으로 각종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모든 언론에 심층적으로 보도되었고,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함께 호응하게 되었다.

□ 발제2 : 대학원생 인권 실태 조사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 발제자: 이우창 (서울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 교등교육전문위원)
○ 주요 내용: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2012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설립:

학내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내 인권실태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은 1352명이었다. 인권센터는 같은 해 10월 1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41.6%의 대학원생은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논문지도 과정에서 교수가 ‘선물, 접대 제공을 강요’(8.9%)하거나 ‘논문 대필 및 가로채기’(8.7%)를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대학원생의 노동관련 권리 침해:

32.5%의 학생이 과도한 업무량과 지나친 근무시간을 인권 침해 사례의 1순위로 꼽았다.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함’(27.8%)과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18.0%),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 지시’(10.5%)를 받았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대학원생은 연구실 내 폭력과 차별에도 노출돼 있었다. 교수로부터 폭언 및 욕설을 듣거나 성 역할을 강요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18.9%와 18.2%에 달했으며, ‘교수로부터 출신학교 차별’(12.3%)과 ‘동료로부터 출신학교 차별’(11.3%), ‘교수로부터 성 차별’(9.9%)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실태조사팀은 △교수의 막강한 권한과 진로에 대한 영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조직 문화 △폐쇄적 구조와 관행을 원인으로 꼽았다”(인용자 강조)[28]. 심층면접에서 “교수님 집에 가서 개 밥을 주었다”와 같은 충격적인 사례들이 나오자 많은 교수들은 “일부의 사례가 선정적으로 보도 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인권센터는 조사결과를 대외비 처리하고 원래 계획되었던 단과대별 심층조사 및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작성은 진행되지 않았다.

❍ 2014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출범:

연구팀은 대학신문과 함께 2014년 10월 동안 이메일을 통해 전체 대학원생 대상으로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 254문항에 달하는 방대한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학생 중 13.2%에 달하는 1488명이 응답하였다. 인권센터에서 2012년 수행한 조사가 인권침해실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2014년 조사에서는 인권의 측면과 함께 대학원생의 경제적 삶 및 연구환경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

28) “대학원생 인권실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년 10월 14일. [http://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대학원생 문제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들의 인식을 넘어 대학원생이 속해 있는 대학원의 학업연구환경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원생이 정상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물질적/제도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업 및 생계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장학금 및 TA/RA 일자리, 근무에 방해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교수의 적절한 수업 및 논문지도, 교수와의 관계에서 대학원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학원생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갖가지 차별을 예방하는 제도, 학위 취득 이후 직업선택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 기타 대학원생의 의사를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것들이 확보될 때 비로소 대학원이 안정된 학업연구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 당국 및 교육행정당국의 역할은 정상적인 학업연구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삶이 직면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도적 실천을 위한 지식을 축적하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2. 표적집단 심층면접(FGI) 결과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FGI를 수행하였다.

2015년 6, 7월을 기준으로 석사나 박사 과정, 혹은 수료자들을 선정하여, FGI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차 FGI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7명이었고, 제2차 FGI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4명으로 총 11명이었다.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대학원생의 일반적·경제적 환경, 제도적·물리적 지원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1 대학원생의 일반적 및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대학원의 일반적, 경제적 환경의 주요 키워드는 '불안정한 수입',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연구실의 경제력', 연구실에서 별로로 관리하는 '학생공용통장', '생애주기별 지원 부족', '소속된 안정감', '학위 인플레이션'이다.

대학원의 연구실 모델은 전공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수님 한분에 여러 학생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 중심 모델과 교수-학생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도제식 모델이다. 이에 따른 일반적이고 경제적인 연구 환경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에 비해 장학금 및 조교 수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어요. 예를 들어, 등록금,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를 합하면 월평균 150이 필요한데 현재는 프로젝트로 60만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해요. 수입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보장된 장학금이 적어서 연구실 프로젝트 비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지도교수의 연구 역량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편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프로젝트 수주가 적은 연구실의 경우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해 빚을 지거나, 최악의 경우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 1년 차는 매달 10만원, 2년차는 매달 20만원, 박사가 매달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많은 이공계 연구실은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공용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교수 혹은 교수가 신뢰하는 구성원이 학생들 전체의 인건비를 수거하고 나름의 규칙에 따라 재분배하고 있죠.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모두 여기고 있어요. 인건비 분배도 못하는 연구실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입 보장 자체가 힘들다는 인식이 크죠."

몇몇 연구실은 학생통장을 직접 수거해 관리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분배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보상이 관리되어지고 있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수입을 고민하면서 연구 활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으로 시간적 여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과로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생애주기 상 과업들과 양립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구조가 더 큰 문제죠.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여성대학원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아이를 낳고, 임신하는 것입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임신을 하면 지도교수가 실습을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하면 지도교수에게 혼난다는 거예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 많이 다루니까 임산부는 보호받아야 하는데, 안전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어요. 국가적,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것이 생애주기 상 중요한 과업이기도 한데 프로젝트에 지장이 있다고 아무런 보호제도도 없이 바로 임신을 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대학원생으로서의 평가에서도 학자가 될 자질이 없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런 임신,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여성 생애주기의 특정시기, 즉 가임기에만 가능한 과업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후속세대로 학자로 성장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과정은 학문의 유희를 즐긴다기보다는 삶을 지치게 하고 관계에서의 상처를 극복해 가야만 하는 고된 행로다. 주로 20~30대가 많은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야 할 이 시기이자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빚을 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학문을 어렵게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 "20~40대 나이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죠. 그러다보니 사회적 자존감이나 경제적 효능감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힘들게 학문을 유지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분,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학문적 압박감이 심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이란 학문후속세대로 커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연구 활동에 몰입해야 하는 신분이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은 대학원생들은 사회적 자존감을 스스로 끌어 올리면서 고된 학문의 중간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학교 근처는 방값이 너무 비싸요. 월 40만원으로 맞추려면 반(半)지하에서 살아야 해요. 좀 저렴한 곳을 찾으면 교통비가 많이 들고...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즘은 대학원생들이 학비 때문에도 휴학하고 알바를 하기도 해요. 대학원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과외나 학원에서나 일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사실 음식점에서 서비스하는 알바로 안 받아줘요(웃음). 유명 프렌차이즈 알바를 하려고 해도 먼저 대학을 물어봐요. 대학원생이 왜 이런 일을 하나면서, 거절당했어요. 대학원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술계열인 경우 학교에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불투명한 진로의 불안감을 대학원생이라는 소속으로 잠시 안정감을 잠시 누리고 있었다.

"예술계열에서는 사실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술계열 자체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디자인계열이 아니고서야 순수미술계열에서 실질적인 직업을 갖는다든지, 작품판매를 통해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에요. 이런 경우 국가에서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제도적으로 보장된 뭐라도 해야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대학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요. 석사 박사 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업실 공간을 조금 주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불안함에 표류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서, 대학원을 나왔어도 이 분야에서 성공해서 학비를 갚아나갈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대학원을 나온다는 자체가 학부의 연장에 가깝고 뚜렷한 비전이 있어 공부를 계속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술작업을 하는데 학위가 정말 필요한가? 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 수업이 작업에 도움이 되는가? 학위를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죠.
>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치 자체가 매우 떨어졌어요. 석사 같은 경우 그냥 대학 학부 졸업하고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학위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박사 정도 되어야지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석사는 흔하다보니 이력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대학원의 일반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상황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연구 활동을 유지해가기 힘들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 참여권, 노동권 등이 연구 기간 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대학원 연구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들은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세대로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며 진정한 학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고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2.2 대학원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환경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대학원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환경의 키워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부족한 장학금', '휴식 공간의 부족', '미흡한 행정지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도서관 지원'의 혜택, 그리고 '고위층 자녀를 위한 특별대우'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환경을 비교할 때, 사립대의 지원환경이 열악하다. 등록금부터 2~5배 이상의 심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등록금의 차이는 연구인력 규모나 연구비에 따른 프로젝트의 실행력과 그에 따른 과정과 결과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 "솔직히 말하자면 유명한 국공립대학의 지원은 저희 같은 사립대의 지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석사가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의 개념도 단위가 틀리고, 프로젝트에 따라 교수님이 따로 챙겨주는 금액도 있다고 들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립대의 학부생 한 학기 등록금은 450만원, 대학원생 한 학기 등록금은 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전라도 지역의 국립대인 경우, 생명과학과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립대의 경우에 교수님 한분과 한명의 학생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국공립대에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죠. 인력 규모나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큰 프로젝트를 따오고 싶으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도 제안하기 힘들고,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물리적 지원도 없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입학 전에는 장학금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입학 후에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저보고 차라리 빚을 내고 학교에 다니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장학금이 나와도 거의 등록금만 충당되는 정도입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교를 포함해 다른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연구소 근무와 조교 활동을 포함해 매일 공부할 여유가 없이 일만 해도 생활비가 없어서 솔직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연구실과 실험실의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실험 중간에 따로 쉴 곳, 생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독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간에서 식사와 수면을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러다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학의 물리적 지원 환경 중, 공간 배정과 크기는 매우 정치적이고 상업적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취업이 잘되고 인기 있는 과를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다. 학교가 학위장사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회대학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학위장사하려고 특수대학원들을 만들고 건물을 같이 쓰게 하죠. 그런데 다른 사회대 전공들은 취업률도 낮고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못 따오니까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교수들과의 파워게임에도 밀리게 되죠. 단적인 예로 학생 뽑는 숫자도 줄고, 심지어는 교수도 퇴출되어요. 하지만 정부 프로젝트, 예컨대 BK는 사회과학과는 거의 해당이 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되죠. SSK[한국사회과학연구] 도 교수의 능력이 아니라 교수의 인맥 따라 뽑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단과대만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과들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정부에서 받는 펀딩이 없어요. 결국 학생들이 나가서 돈을 스스로 벌어야지 학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학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기획, 운영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과 같은 교통약자나 보행약자가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부가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었는데,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학생대상의 복지가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대학 재단이나 발전기금의 자산으로 이용되어 그 공간이 정작 학생 복지를 위해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는 공간이 텅텅 비어 몇 년 비어있는 곳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휴게실, 생리중이거나 임신, 출산을 한 학생들이 쉬고 모유수유를 할 공간은 없어요."

"공간도 공간인데 예술계열은 작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당연히 작품에 대한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순수 예술계열은 사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할 기회가 없으니까, 학교를 통해 수익을 지원받을 수 밖에 없어요. 학교 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곳은 학교 행정기구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학부에 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은 적은 반면, 신입생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뽑고 있어요. 교수님, 교직원이나 행정직원의 수와 학생 수는 비율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행정 지원인원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들의 순수한 봉사를 더욱 원하는 것 같아요. 조교의 수도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적고. 심지어 전공과마다 조교가 없기도 한 경우도 있어요."

"전공에 따라 다양한 저널에서 자료를 살펴봐야 하지만, 논문을 게재한 저널을 학교에서 구독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비용면에서도 이유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정보 검색 혜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우수한 저널을 찾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학교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논문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공 특성상 교수님이랑 공저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학회지에 논문을 싣지 못해요. 학생은 졸업 요건이 되어버리고 교수님은 연구 실적을 올리세요. 청문회 할 때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학계의 관행이라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연구 지원제도나 학교가 지원해 주는 자원의 수혜를 받는 제도가 공정하지 않게 배분되는 것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위층이나 교수의 자녀가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고위층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켜서 먼저 학벌세탁을 하죠. 그리고 지원 금액이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에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어느 과나 그런 고위층 특별대학원생이 있는데, 우리 과에도 있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별로 똑똑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별로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몇 년 후 외국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유학생을 뽑을 때는 국가 프로젝트 참여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의 연구원이었고, 논문도 그 사촌형제가 심사 위원이었죠."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유학을 못 간 학문의 2군주자라는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학부 때부터 고위층이나 교수님의 자녀, 특별히 교수님의 총애를 받은 학생들은 특별히 능력이 좋지 않아도 학부 때부터 우수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미국 유학을 가죠. 유학생활 중에는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를 못하겠죠. 그러면, 방학 때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원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 아이디어를 수집해가요. 이 말은 꼭 적어주세요."

"이런 현상은 제가 학부에 있던 과나 대학원에 있는 과나 다를 바 없어요. 유학생이 휴학을 하고 와서 연구윤리에 어긋난 타인의 보고서를 다운로드받고, 청강하고 해서 아이디어를 마구 수집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처럼 방어적이고 눈치 보는 학생들에게는 연구 지원도 없어요. 연구실도 부족해서 논문 쓰는 사람 아니면 연구실 신청하기 어려워서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요. 문서 출력/복사 빼고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웃음)."

대학원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 환경 중, 외부에 명시된 장학금 제도에 비해 학생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장학금의 기회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학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에 수반하는 조교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장학금혜택이라고 간주하기 힘들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실험약품을 다루다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을 느끼고 있다.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공별로 충분한 저널을 구독하지 않고 있다고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다. 고위층이나 교수의 자녀가 학문 수료와 졸업하는 과정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학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 환경에 대하여 학생들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족한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이 평등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2.3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 환경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대학원의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으로 제시된 키워드는 '관계의 어려움', '불공정한 연구실적', '과다한 행정업무', '문제를 숨기려는 분위기', '권위적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외국의 전문 교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수의 절대적인 권력 하에 권위적으로 움직이는 권력관계의 구조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학원생들은 학습할 수 있는 자유롭고 학구적인 분위기보다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연구실적 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 "교수님이나 선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학문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연구실에 잔류하기 어렵습니다. 지도교수 변경도 어렵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학생은 솔직히 한국을 떠나지 않고서는 학문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죠.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교수가 논문심사에서 계속 방해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과에서 학생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부당한 대우는 받는 사례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어요.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그 뒤에 감당해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 커서 차라리 조용히 참고 졸업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령, 실습비나 연구비 횡령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자체를 피해버리죠"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과정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낙인이 찍히면, 졸업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니까요. 문제를 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지도교수에게 찍힐 까봐 나서서 이야기를 못해요. 대부분 교수들이 제자들한테 '너 나를 그런 식으로 유명하게 만들지는 말아라' 하시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이죠."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논문 지도과정에서 교수들이 약속시간을 지키는 않는 일은 너무 흔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어요. 논문지도규정이 있어도 거의 무시하시죠. 교수님과 사이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계속 탈락되어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영어로 논문을 써서 SCI에 게재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교수님의 인격에 따라 대학원생의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 환경이 결정된다. 학문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도제제도라는 이유로 교수 개인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이라는 목표지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대학원생은 로마 시대 노예 같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집도 있고 땅도 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정말 불쌍한 노예랑 똑같아요. 주인의 인격에 따라 삶이 뒤바뀐다는 점에서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한 사람의 인격에 의존해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건 시스템도 아니라 도제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자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의 학문적 생산성과 복지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문제를 드러내서 제도화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의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식이잖아요."

외국의 교직원은 대학원생들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졸업 후 취업률이 높다는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전공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대학을 가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교직원들이 그 전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사무직으로 대학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분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 홍보처면 홍보 전문가예요. MIT의 홍보 담당 교직원을 보면, 그 교직원이 사이언스(Science)지의 편집자 출신이에요. 그 교직원은 이공계 세계 최고 저널의 편집자 출신이었어요. MIT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인력의 충원이었죠. MIT에 워크 앤 라이프 오피스 'Work and Life Office'가 있어요. 일-가정, 학업-가정 양립 지원을 포함한 학생 복지를 담당하는데, 그 부서에 일하는 직원만 10명이 넘어요. 비교해 볼 점으로 그 학교 학생 수는 서울대 학생 수보다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우수한 학교에는 모두 워크 앤 라이프 오피스가 있어요. 행정직원이 있고 거기에는 교수 담당, 대학원 담당, 학부생 담당을 맡은 각각의 직원이 대략 10명 정도의 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행정이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고 업무분담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죠. 교직원은 석사 학위 이상이고 현장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선후배 졸업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의 실적을 빼앗거나, 후배들이 선배 논문을 대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 중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흔히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구실의 능력이 출중한 한국학생이 외국학생들의 논문을 거의 대필해주기도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수님이 지도학생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 지도학생이 거부할 수 없고, 특허 지분도 교수의 권한으로 정해져서 집행되고 있어요. 이공계 논문의 경우 교신저자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작품이 지도교수의 명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솔직히 등록금에 비해 수업내용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실험 및 각종 프로젝트에 끌려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업 중간에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휴강이 잦거나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학점만 주는 유령수업이 있는 등 대학원 과정이 전반적으로 알차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배우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학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처리와 행정절차와 관련된 일들은 거의 학생에게 일임되고 있어요. 전문적인 행정인원을 고용하는 연구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연구가 아니라 잡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별도의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나 밤을 새는 경우 많아요. 무리를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습 의욕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선배가 후배를 대하는 절대적인 권력행사의 내부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차라리 권위구조의 문제로 인한 각종 연구비 횡령이나 관계로 인한 피해의식은 묻어버리자는 주의가 강하다. 교수에게 막강한 결정권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의 대학원생 학습 환경은 방치된 도제시스템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나 학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식적인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구조이다. 하루속히 학문 수속세대를 위한 고등지식생산자의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4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개선 방향

대학원의 일반적,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 물리적 지원환경, 그리고 학습 및 공동연구 수행환경의 개선방안으로 나온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재정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 ‘학습시간 보장’, ‘문제 인식의 개방성’, ‘연구윤리’, ‘대학원의 행정개혁’이다.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가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에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우회가 있지만 대학원생의 신원보호가 잘 안 되고 몇몇 교수의 잘못된 권력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처벌제도는 미약한 실정이다.

> “적어도 학문 연구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재정적 분배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상업적 경쟁력이 부족한 비인기전공을 공부할 경우, 그 전공학문의 존속 자체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 “학교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해요.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도 교수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학생은 진로를 포기해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되도록 이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죠.”

> “성 문제와 관련하여 00대학교 사회계열의 교수가 여학생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공론화가 되기 힘들어요. 그 이유로 첫째로 교수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나 갑의 위치라 문제를 드러낼 수 없고, 두 번째로 교수의 접근방법이 매우 사회적 합리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학생에게 술을 먹자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여학생이 교수와 일대일로 술을 먹으면 그 여학생의 태도 문제로 인식해 버리니까 공론화하기 힘든 거죠.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여학생들이 많은데 학교 측에서는 먼저 덮으려 하구요. 아무리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봐야 잘못된 교수 한 명 쓰러트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 서로들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슈화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권위적인 대학원의 문화에서는 창의적인 학문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개방적인 학습 분위기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기회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생들에게 박힌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기가 말을 해서 본인이 속한 연구실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사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죠. 문제 당사자들이 말할 수 없게 하는 권위적인 환경 자체의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의지는 없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현실부적응자로 낙인시켜버리고, 현실파악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취급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위축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야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없어요. 교수-학생 간 갈등이 생길 경우,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필요해요."

"논문지도과정에서 조금 더 교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정을 학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학생에게 제재하는 교수의 권력남용을 필터링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나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의 개인시간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 갑자기 연락해서 호출하거나 급한 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해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생활비 보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수업 및 교육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한 행정적 업무처리가 학생들의 연구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교수나 강사들이 수업시간 과제로 제시한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나 연구물들이 저작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생들은 어느 선까지 자기 아이디어를 다룰 것인지,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게임 이론 속 죄수처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상호협조가 최선의 학문적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있다.

> "대학원 학점을 위한 수업에서 교수나 강사가 연구 논문 수준의 주제를 학기말 리포터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학점 통과를 위해서 과제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수, 강사나 대학원 선배가 우수한 과제들을 슬쩍 슬쩍 연구윤리에 따른 절차나 과정도 생략한 채, 그냥 집어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럼 학생들은 방어적인 자세로 어디까지만 자기 아이디어를 논할 것인가, 어디까지 적당히 학점을 따면서도 자기 핵심 연구를 들키지 않을까, 신경써야만 합니다."

> "이런 현상은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다 공개를 하고 프로젝트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핵심 연구주제와 방식만 하나씩 뽑아가요. 그나마 그 학생의 아이디어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교수나 강사는 나아요. 물어보고 나중에 자기 프로젝트 일이라도 끼워주면 좋은 사람이죠. 학부생 보고서도 그렇게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생들이 열심히 보고서를 적으면 학점만 A+ 주고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학원생 연구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가 정책적 차원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에서의 확실한 구조와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각 대학 차원에서도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대학원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 "학교의 1년 운영비 중에서 학생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과 교직원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교수님과 교직원의 근로환경의 차이는 얼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만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항상 먼지가 쌓여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행정실의 선생님은 교수 연구실처럼 넓은 공간을 혼자 사용하시죠.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 8-10명이 들어가 있어요. 책도 훨씬 많고.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겨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서의 행정개혁, 대학원 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교수들에 대한 대학원생 인권 보호 및 처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가 함께 모여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운영 시스템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소통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행정적 개혁이 요구된다.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인력으로 학습의 기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위해 가장 실천적 개선안은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의 인권보호와 학습 환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시간 확충이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부록4: 유학생 In-Depth Interview 결과 요약

해외유학생에 대한 인터뷰는 온라인과 방학중 귀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에 의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외유학생은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로 이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대학원생은 학회, 연구출장을 비롯해 학술관련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
- ❍ 지도교수 교체의 자유가 행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 조교조합 또는 학생회처럼 대학원 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학생조직 존재. 이를 통해 조교수당 현실화를 학교와 협의할 수 있음
- ❍ 등록금 부담이 낮거나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교직을 확충하여 연구자가 학업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배
- ❍ 대학원생에게 지역이나 국가차원에서 교통비 · 주거비를 보조(독일, 프랑스)
- ❍ 공동프로젝트 참여 시 성과가 대학원생에게도 귀속되는 것 및 프로젝트 참여 여부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 ❍ 단과대 및 학과 차원에서 대학원 문제를 전담하는 관리자가 존재. 학생이 교수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두지 않고 행정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영국), 학생회와 행정조직이 연계하여 문제제기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미국). 교수-학생 관계에서 공정성을 담보한 제3자가 개입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
- ❍ 조교근무 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 과도한 노동으로 학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미국)
- ❍ 졸업생 진로, 장학 및 구직정보, 커리큘럼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 학생들이 대학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하도록 함. 미국의 경우 특히 장학금 관련 정보는 매우 세세한 지점까지 공개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록5: 자유응답 결과 요약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정량적 측정이 아닌 정성적 측정을 위한 자유응답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환경에 관한 자유응답분석 요약 〉

- ❍ 장학금 수령 요건으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개선 희망
- ❍ 생계를 위해 프로젝트에 의존해야 하나, 인문계열은 프로젝트 기회조차도 부족함
- ❍ 프로젝트 수당 및 국가연구장학금 지급일이 불규칙하여 경제적 계획을 설정하기 어려움
- ❍ 조교근무 시 근무시간이 정해진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 ❍ 조교근무 수당의 시급을 현실화하고 조교직이 보다 확충되길 희망
- ❍ 미국처럼 조교근무 시 근무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고용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
- ❍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너무 적음.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대출도 학부생에게만 적용되고 대학원생에게는 일반대출만 허용. 학부 등록금을 동결시킨 대신 대학원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대학도 많아 전반적인 개선 희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도적 및 물리적 지원 자유응답분석 요약〉

- ❍ 학생들을 위한 일인당 최소연구공간의 보장 및 휴식공간 지원이 필요
- ❍ 대학원생들이 소속대학에 따라 국내외 학술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심함. 대학에 무관하게 해외 학술논문에 접근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희망
- ❍ 현재의 대학원은 학업 · 연구와 임신 · 육아를 병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출산휴학, 영아수유가능 공간확보, 학교 근처 어린이집 이용가능권 등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희망
- ❍ 실험실의 경우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 확충 및 임산부를 위한 안전규정 강화 필요
- ❍ 연구실 냉난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혹한/혹서기나 심야 시간에 연구실 사용이 매우 제약, 개선 희망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환경 자유응답분석 요약〉

- ❍ 대학원생이 본인이 참여한 공동연구에서 교수 · 선배 등에게 성과 혹은 연구업적을 빼앗기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의 설립 희망
- ❍ 공동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연구비 배분에 공정성 담보 필요
- ❍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강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희망

〈교수에 의한 개인적/성적 존중감 침해 경험 자유응답분석 요약〉

- ❍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험
- ❍ 언어적 성추행 경험
- ❍ SNS 등 대학원생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교수도 있음

<선후배/동료에 의한 개인적 존중감/성적 존중감 침해 자유응답분석 요약>

- ❍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음주강요
- ❍ 동성애혐오, 여성혐오 등 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경각심 필요
- ❍ 군대식 위계질서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항변하기 힘듦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대응경험 자유응답분석 요약〉

- ❍ 이후의 불이익을 고려해 모르는 척 참고 지나감
- ❍ 신입생의 경우 어디까지가 문제되는 선인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감, 대학원생의 인권 및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명시될 필요
- ❍ 선후배/나이 위계질서로 인해 불합리한 일을 강요당함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사항 분석〉

- ❍ 대학원생 연합이나 고충처리센터 등 대학원생 인권침해에 관한 제보를 수집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의 설립 희망
- ❍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인권교육을 의무화·상시화하길 희망
- ❍ 별도의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 대학원의 제반 행정업무가 학생들에게 비효율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전문적인 행정력의 지원 필요
- ❍ 대학원 입학희망자들이 학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진로, 장학,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의무화 필요
- ❍ 인권침해, 연구비 횡령 등의 경우 현실적인 효력을 갖도록 처벌 규정 강화 희망
- ❍ 프로젝트 인건비에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최저임금)은 없는 현황 개선 희망
- ❍ 대학원생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를 희망
- ❍ 학생의 (지도)교수에 대한 종속적 관계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 실험실 출퇴근 시간 등 학생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침해하지 않는 제도/문화의 정착 희망
- ❍ 현 조사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착하길 희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참고문헌

□ 국내 문헌자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4 연구환경개선투쟁 <대학원생 실태보고서>.

국가청렴위원회(2006. 2). 박사학위과정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2012년 10월).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김병주·최손환·서지영(2005).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교육행정학연구 23(4) : 321-342.

김선주(연도 미상). 하버드 인권 관련 정책과 연구 : 다양하고 열린 접근. 세미나 자료.

김성열 외(2014).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내용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용주(1989), 한국대학원의 학술환경 평가연구, 「연세교육과학」.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2014. 10.).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2015년 7월).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

심귀섭(1993), "교육대학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돈희(1999). 「교육정의론」. 교육과학사.

임창재(2013), 「교육학개론」, 형설출판사.

장덕호(2013). 대학원생들의 연구관련 성과 변인들의 차이 분석 :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와 두뇌한국21 사업을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3 pp.20-27.

정우진·김경연·조보경·이영미(2008). 제2단계 BK21 사업에 대한 학새들의 만족도 조사. 교육행정학연구 25(4) : 435-453.

정원식(1984),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조성란(2016). 미국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인권 실태. 세미나 자료.

황희란(2015). 대학원 양적 팽창과 등록금.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외국 문헌자료

Bognanon, M. F. & Suntrup, E. L.(1976). Graduate assistants' response to unionization : The Minnesota experience. Labor Law Journal, 27(1), 32-37.

Daniel J. Julius와 Patrica J. Gumport(2003). Graduate Student Unionization : Catalysts and Consequenc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2), Winter 2003, pp. 187-216.

Gary Rhoades and Robert A. Rhoades(2003). The Public Discourse of U.S. Graduate Employee Union : Social Movement Identities, Ideologies, and Strtegi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2) Winter 2003, pp. 163-186.

Robert A. Rhoades and Gary Rhoades(2005). Graduate Employee Unionization as Symbol of and Challenge to the Corporatization of U.S. Resear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3), May/June 2005, pp. 243-275.

Singh, Parbudyal, Deborah M. Zinni, and Anne F. Maclennan(2006). Graduate Student Un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abor Research 27(1): 55-73.

□ 기타 언론 관계 자료

국민일보 2012년 10월 12일 사설.

교육부 보도자료, 2012. 10. 19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5년3월28일.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14일, 10월4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인쇄일 | 2015년 11월
| 발행일 | 2015년 11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팀 02)2125-9642
| F A X | 02)2125-0922

ISBN: 978-89-6114-455-1 93370 비매품